정책연구 제2024년-02호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 전 홍 주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 박 신 영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 명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 서 현 선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 제2024년-02호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전 홍 주**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 신 영**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 명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서 현 선**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　　출　　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 주관연구기관명 : 성신여자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

○ 연 구 기 간 : 2024.6.14.~2025.3.13.

○ 주관연구책임자 : 전홍주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박신영

· 연　구　원 : 강은진

· 연　구　원 : 우명숙

· 연구보조원 : 서현선

- 이 연구는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둠

목 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2. 용어의 정의 ····· 16
3. 연구내용 ····· 17
4. 연구방법 ····· 18
5. 연구의 성격과 한계 ····· 21

Ⅱ.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전망

1. 미래사회 교육환경 전망 ····· 22
2.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시사점 ····· 23

Ⅲ.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 사례 분석

1.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 동향 ····· 31
2. 핀란드 ····· 36
3. 프랑스 ····· 42
4. 일본 ····· 50
5. 시사점 ····· 60

Ⅳ.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쟁점

1. 교육제도 ····· 62
2. 교육과정 ····· 71
3. 교원 ····· 78
4. 재정 및 지원체계 ····· 91

Ⅴ.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 분석

1. 전문가 델파이조사 ····· 112
2.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 128

Ⅵ.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과정 ····· 132
2. 미래 영유아교육의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 136
3.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 139

Ⅶ. 결론 및 제언

1. 요약 ····· 146
2. 후속연구 등 제언 ····· 147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전문가 델파이조사지 (1차) ····· 153
부록 2. 전문가 델파이조사지 (2차) ····· 159

표 목차

〈표 Ⅰ-4- 1〉 전문가 1차 자문 명단 ····· 19
〈표 Ⅰ-4- 2〉 전문가 최종자문 명단 ····· 20
〈표 Ⅱ-2- 1〉 OECD의 2030와 UNESCO의 미래교육보고서 비교 ····· 25
〈표 Ⅱ-2- 2〉 국내 선행연구에 담긴 미래교육의 메타 분석 ····· 26
〈표 Ⅲ-1- 1〉 지속가능발전목표 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의 세부목표 ····· 31
〈표 Ⅲ-1- 2〉 지속가능발전목표 4.2 유아교육의 이행지표 ····· 32
〈표 Ⅲ-1- 3〉 OECD의 Staring Strong 보고서를 통해 본 영유아교육 주요 쟁점 ····· 32
〈표 Ⅲ-1- 4〉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의 학제, 교육과정, 교원자격 연계 ····· 33
〈표 Ⅲ-1- 5〉 EU 주요국의 0~6세 교육제도 현황 ····· 34
〈표 Ⅲ-1- 6〉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의 ECCE 변혁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전략 ····· 35
〈표 Ⅲ-2- 1〉 핀란드 ECEC 취원율 (2021) ····· 38
〈표 Ⅲ-2- 2〉 핀란드 취업률 (2022) ····· 39
〈표 Ⅲ-2- 3〉 핀란드 공립 및 사립기관의 영유아교육 재정 (2020) ····· 39
〈표 Ⅲ-2- 4〉 핀란드의 자녀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 42
〈표 Ⅲ-2- 5〉 핀란드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른 임신수당 ····· 42
〈표 Ⅲ-2- 6〉 핀란드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른 육아수당 ····· 42
〈표 Ⅲ-3- 1〉 프랑스의 어린이집(crèches) 유형 및 특징 ····· 44
〈표 Ⅲ-3- 2〉 프랑스 ECEC 취원율 (2021) ····· 44
〈표 Ⅲ-3- 3〉 프랑스 취업률 (2022) ····· 44
〈표 Ⅲ-3- 4〉 프랑스 공립 및 사립기관의 영유아교육 재정 (2020) ····· 45
〈표 Ⅲ-3- 5〉 프랑스 교육주기 ····· 46
〈표 Ⅲ-3- 6〉 프랑스의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 48
〈표 Ⅲ-3 -7〉 프랑스의 가족보충수당 (2024년 4월 기준) ····· 48
〈표 Ⅲ-3- 8〉 프랑스의 출산/입양 지원금 소득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 49
〈표 Ⅲ-3- 9〉 프랑스의 부모소득에 따른 기본수당 ····· 49
〈표 Ⅲ-3-10〉 프랑스의 자녀양육공동급여 ····· 49
〈표 Ⅲ-4- 1〉 일본의 ECEC 체계 ····· 50
〈표 Ⅲ-4- 2〉 일본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유형 ····· 51
〈표 Ⅲ-4- 3〉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유형별 비교 ····· 52
〈표 Ⅲ-4- 4〉 일본의 기타 지역형 보육 사업 유형 ····· 52
〈표 Ⅲ-4- 5〉 일본 ECEC 취원율 (2021) ····· 53
〈표 Ⅲ-4- 6〉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전/후 비교 ····· 53
〈표 Ⅲ-4- 7〉 일본 공립 및 사립기관의 영유아교육 재정 (2020) ····· 54
〈표 Ⅲ-4- 8〉 일본의 유보통합 관련 주요정책의 변화 ····· 55
〈표 Ⅲ-4- 9〉 일본 어린이가정청의 소장사무 ····· 57
〈표 Ⅲ-4-10〉 일본의 아동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 58
〈표 Ⅲ-4-11〉 일본의 아동수당 ····· 58
〈표 Ⅲ-4-12〉 일본의 아동수당 급여액 분담 비율 (2019) ····· 59
〈표 Ⅳ-1- 1〉 유치원 관련 법령 ····· 62

〈표 Ⅳ-1- 2〉 어린이집 관련 법령 ····· 62
〈표 Ⅳ-1- 3〉 연도별 유형별 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최근 5년) ····· 63
〈표 Ⅳ-1- 4〉 연도별 유형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최근 5년) ····· 63
〈표 Ⅳ-1- 5〉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수 및 취원율 (2023) ····· 64
〈표 Ⅳ-1- 6〉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추이 (최근 5년) ····· 64
〈표 Ⅳ-1- 7〉 연도별 유형별 유치원 재원 유아 수 (최근 5년) ····· 64
〈표 Ⅳ-1- 8〉 연도별 유형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수 (최근 5년) ····· 65
〈표 Ⅳ-1- 9〉 누리과정 지원단가 ····· 66
〈표 Ⅳ-1-10〉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내용 ····· 66
〈표 Ⅳ-1-11〉 유아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보육시간 ····· 67
〈표 Ⅳ-1-12〉 가정양육 및 돌봄 지원 관련 정부 정책 ····· 69
〈표 Ⅳ-1-13〉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준 ····· 69
〈표 Ⅳ-2- 1〉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 71
〈표 Ⅳ-2- 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제정 및 고시 ····· 71
〈표 Ⅳ-2- 3〉 개정 누리과정 지원사업별 시행 시도교육청 수 (2019-2022) ····· 74
〈표 Ⅳ-2- 4〉 개정 누리과정 지원사업별 시행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수 (2019-2022) ····· 74
〈표 Ⅳ-3- 1〉 영유아교사 유형 및 자격 관련 법령 ····· 78
〈표 Ⅳ-3- 2〉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수 (최근 5년) ····· 79
〈표 Ⅳ-3- 3〉 유치원 교사 직위별 현황 ····· 79
〈표 Ⅳ-3- 4〉 보육교사 직종별 현황 ····· 79
〈표 Ⅳ-3- 5〉 2020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현황 ····· 80
〈표 Ⅳ-3- 6〉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현황 ····· 80
〈표 Ⅳ-3- 7〉 유치원 학급 편성기준 (2023년 현재) ····· 81
〈표 Ⅳ-3- 8〉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 ····· 82
〈표 Ⅳ-3- 9〉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83
〈표 Ⅳ-3-1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 83
〈표 Ⅳ-3-11〉 유아교육법령의 인력 배치기준 ····· 84
〈표 Ⅳ-3-12〉 유치원 유형별 기관당 교직원 현황 (2024년 10월) ····· 84
〈표 Ⅳ-3-13〉 유치원 유형별 학급당 교사수 현황 (2024년 10월) ····· 84
〈표 Ⅳ-3-14〉 경력연수별 유치원 교원 수 ····· 85
〈표 Ⅳ-3-15〉 기관유형별 경력연수별 유치원 교원 수 (2023년) ····· 85
〈표 Ⅳ-3-16〉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 횟수 ····· 86
〈표 Ⅳ-3-17〉 유치원 교사의 출퇴근 시각과 일일 총 근무시간 ····· 86
〈표 Ⅳ-3-18〉 보육교사의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 ····· 86
〈표 Ⅳ-3-19〉 평일 출·퇴근 시간 및 총 근무 시간 ····· 87
〈표 Ⅳ-3-20〉 영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 인식 ····· 88
〈표 Ⅳ-3-21〉 법 종류에 다른 교권 관련 조항 및 내용 ····· 88
〈표 Ⅳ-3-22〉 교권보호 4법 내용 ····· 89
〈표 Ⅳ-4- 1〉 누리과정 지원단가 ····· 92
〈표 Ⅳ-4- 2〉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지원 소요예산 ····· 92
〈표 Ⅳ-4-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내역 ····· 94

〈표 Ⅳ-4-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산정 내 ····· 95
〈표 Ⅳ-4- 5〉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유아교육역량강화 사업비 ····· 95
〈표 Ⅳ-4- 6〉 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사업비 예산 (최종) ····· 96
〈표 Ⅳ-4- 7〉 유아교육 관련 예산 (누리과정 예산 제외) ····· 96
〈표 Ⅳ-4- 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예산 (2019~24년) ····· 97
〈표 Ⅳ-4- 9〉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국고대응투자 예산 ····· 97
〈표 Ⅳ-4-10〉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자체지원 예산 ····· 98
〈표 Ⅳ-4-11〉 유아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 ····· 98
〈표 Ⅳ-4-12〉 연도별 교육과정 교육비 평균 (2020-2023) ····· 99
〈표 Ⅳ-4-13〉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 2023년 기준 ····· 99
〈표 Ⅳ-4-14〉 시도별 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2022) ····· 100
〈표 Ⅳ-4-15〉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101
〈표 Ⅳ-4-16〉 연도별 장애영유아 현황 (2011-2023) ····· 101
〈표 Ⅳ-4-17〉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현황 (최근 10년) ····· 102
〈표 Ⅳ-4-18〉 시도별 극소규모, 소규모 유치원 (2023년) ····· 103
〈표 Ⅳ-4-19〉 어린이집 유형별/규모별 현황 ····· 104
〈표 Ⅳ-4-20〉 지역별 연령별 유차원/어린이집 이용률 현황 (2023) ····· 106
〈표 Ⅳ-4-21〉 서울 행정구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유아수 ····· 109
〈표 Ⅴ-1- 1〉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일반적 배경 ····· 112
〈표 Ⅴ-1- 2〉 1차 델파이조사지 내용 구성 ····· 113
〈표 Ⅴ-1- 3〉 2차 델파이조시자 내용 구성 ····· 113
〈표 Ⅴ-1- 4〉 CV값의 해석방법 ····· 117
〈표 Ⅴ-1- 5〉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의 영유아 중심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117
〈표 Ⅴ-1- 6〉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 정책별 중요도 ····· 118
〈표 Ⅴ-1- 7〉 가정에서의 영유아중심 교육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도 ····· 119
〈표 Ⅴ-1- 8〉 영유아-초등 연계를 위한 교육제도 측면에서의 정책 중요도 ····· 120
〈표 Ⅴ-1- 9〉 의무교육 관련 타당성 ····· 120
〈표 Ⅴ-1-10〉 미래 영유아교육 방향 설정시 고려할 사회적 변화 중요도 ····· 121
〈표 Ⅴ-1-11〉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 ····· 122
〈표 Ⅴ-1-12〉 미래 영유아교육의 주요 내용 ····· 123
〈표 Ⅴ-1-13〉 영유아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 ····· 123
〈표 Ⅴ-1-14〉 다양한 배경과 요구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 ····· 124
〈표 Ⅴ-1-15〉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요구 분석 종합 ····· 125
〈표 Ⅴ-1-16〉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 ····· 130
〈표 Ⅵ-1- 1〉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교육제도 ····· 132
〈표 Ⅵ-1- 2〉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교육과정 ····· 133
〈표 Ⅵ-1- 3〉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교원 ····· 134
〈표 Ⅵ-1- 4〉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재정 및 지원체계 ····· 135
〈표 Ⅵ-3- 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주요과제 ····· 139

그림 목차

[그림 Ⅰ-4-1] 델파이조사의 절차 ····· 19
[그림 Ⅰ-4-2] 연구 추진체계 ····· 20
[그림 Ⅱ-2-1]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 ····· 23
[그림 Ⅱ-2-2] OECD 학습나침반 ····· 24
[그림 Ⅱ-2-3] 국내외 유아 미래교육 연구주제 비교 ····· 29
[그림 Ⅲ-2-1] 핀란드의 영유아교육제도 ····· 37
[그림 Ⅲ-2-2] 핀란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 보육 핵심 교육과정의 프레임 ····· 40
[그림 Ⅲ-3-1] 프랑스의 영유아교육제도 ····· 43
[그림 Ⅳ-1-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 67
[그림 Ⅳ-1-2] OECD국가의 0~2세 영아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 ····· 68
[그림 Ⅳ-1-3]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운영시간 개선(안) ····· 68
[그림 Ⅴ-2-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비전체계도 초안 ····· 128
[그림 Ⅵ-2-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비전체계도 ····· 136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최저 출생률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영유아교육의 방향성 제안이 필요함

□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통한 공정한 출발을 국가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교육 비전의 제안이 필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모든 영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의 비전과 방향성 수립이 필요함

□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의 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미래사회 전망에 대한 분석과 영유아교육 관련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교육의 동향을 진단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영유아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

□ 국제교육표준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와 우리나라 영유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출생에서 초등 취학 이전의 아동으로 정의함. 이를 세분화 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0-2세는 영아, 3-5세는 유아로 지칭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접근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의 미래는 2030년 전후로 정의하고자 함

다. 연구 내용

□ 미래교육 전망 분석

□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동향 분석

□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주요 현황과 변화추이 분석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제시

라. 연구방법

□ 관련 통계자료 및 국내외 문헌분석

-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주요 현황과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 재정 및 지원체계, 교육환경 측면에서의 쟁점 도출

- 핀란드, 프랑스, 일본 영유아교육 정책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전문가 델파이조사

- 총 43명 참여(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정책실무자/유아교육, 보육)

- 지난 영유아교육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을 위한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조사 실시

- 2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의 비전 및 방향성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마. 연구의 성격과 한계

□ 연구의 성격: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영유아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전략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둠

□ 연구의 한계

-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 현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유보통합의 실행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정 추계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전망

가. 미래사회 교육환경 전망

□ 미래사회는 1) 디지털 대전환, 2) 저출생 및 고령화 지속 및 고착화로 축소사회 진입, 3)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 4) 다문화·다양한 가치의 보편화된 사회라는 특징을 가짐

□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어 직면하게 될 미래는 우리가 가늠하기에 어려운 세계이며, 기존에 추구했던 교육의 방향과 목적에는 한계가 있음

□ 미래사회에는 정보를 선별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함께 새로운 학습과 익숙한 것을 종합해 직면하는 문제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나.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시사점

□ 영유아기 미래교육은 대부분은 기술변화와 역량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 미래변화와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영유아교육·보육체제의 개편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3. 국외 정책 사례 분석

가. 해외 유아교육 정책동향

□ OECD는 2017년 Starting Storing V 보고서의 부제를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전이'로 삼고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기관 전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에 최대한 연결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제, 교육과정, 교원 자격 등을 연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중 56.1%의 국가에서 초등교육 이전의 1년을 연계 학년(transition class, year, or group)으로 제공하며, 이 중 47.8%의 국가에서는 연계 학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 이수 보장,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영유아기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나. 핀란드

□ 예비초등학교(pre-primary education; esiopetus)는 초등학교 교육 준비를 위한 1년 교육을 의미하는데 2015년 8월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취학 전 6세 모든 아동이 이수해야함

□ 예비초등학교 교육은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종합학교 또는 빠이바꼬티(유아교육센터, Early Childhood Centres)에서 실시함. 국가수준 예비초등학교 중핵 교육과정(Core Curriculum)을 따로 두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되어 2010년, 2014년 개정됨

□ 핀란드에서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수준의 자격이 필요함. 현재 유아교사의 절반 정도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아교사 자격요건이 석사학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다.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만 3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만 16세까지 공교육

이 제공됨

□ 학제 연계를 위하여 공교육 교육과정은 4개의 주기로 구분하여 운영됨

- 유아교육 3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로 이루어져 있음

- 교육과정연계를 위하여 유·초·중등과정을 6개의 주기(cycle)로 구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기학습주기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기본학습주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강화주기로 구성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유치원부터 보장됨

□ 프랑스는 돌봄 정책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높은 편이며, 방과 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라. 일본

□ 2006년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관인 인정어린이원을 발족하였으나 현재까지 3원화되어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운영하고 있음

-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유아교육·보육통합 시설 모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존 유아교육·보육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추가된 형태로 지속됨

-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발표한 이후 인정어린이원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시설에서의 전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마. 시사점

□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최소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유아교육에 대해서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조함에 따라 취학 전 1년 이상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음

□ 유아중심의 초등교육으로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상당수의 나라에서 전이학년에 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두고 유아교육에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뿐만 아니라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임

4.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가. 교육제도

□ 2023년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을 살펴보면 0~2세 영아의 83.65%, 3~5세의 98.07%가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OECD 국가의 0~2세 영아 평균 36%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3~5세의 83%(2024년 기준)가 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것

과 큰 차이가 있는 수치임

□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15분,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27분으로 OECD 평균 시간인 주당 31.5시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부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를 보장하겠다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옴. 그에 따라 영아 취원율이 매우 높고, 영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OECD 국가 중 거의 가장 긴 특징이 있음. 미래의 영유아교육이 영유아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관에서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린 연령부터 모든 영아가 기관에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영유아가 바람직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돕는 기관에서의 최적의 교육시간과 돌봄시간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가정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여 영유아기에 받아야 하는 기본 교육에 대한 국가의 보장과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간에 적절한 규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 균형의 기준이 영유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교육과정

□ 2012년, 이용 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를 위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한 이래로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주체성과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연령별로 세부 내용을 제시하던 기존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내용을 대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현장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중심·놀이중심 철학에는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사 간 교육과정 실행력의 차이로 인한 영유아의 교육 경험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영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즉, 인간다운 품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가치와 역량을 함께 기르는 장이 되어야 함

□ 영유아교육과정은 영아-유아-초등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교육까지 연계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함. 즉, 국가 차원에서의 인재상에 기반하여 영아, 유아, 초등, 중등의 시기별 주요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교원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이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직원의 구분, 자격기준, 양성과정, 교직원 연수 시스템 등도 상이함

□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최소 최대 유아 수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차이가 있음. 원장과 원감, 보직교사, 보조교사, 보건교사(간호사), 영양교사(영양사), 조리원, 사무직원 등 지원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르고 특히 유치원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마다, 그리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마다 상이한 실정임

□ 경력 연수별 유치원 교원의 수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5년 미만 경력자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2.5회의 이직을 경험하였으며 4회 이상 이직 경험이 있는 교사도 2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짐

□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의 경우 평균 9시간 43분 일하고 있음. 그 중 영유아 보육에 사용하는 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나타나 영유아교사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권리를 위해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크게 부족함

□ 영유아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근무시간, 수업시간) 보장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교사와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각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정비와 초중등 교사에 준하는 처우를 통해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위한 노력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수적임. 교사의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학습공동체나 기관 내 자율연수 활성화를 위한 문화 조성이 필요함

라. 재정 및 지원체계

□ 누리과정비와 영아보육료 지원으로 교육비와 보육료의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취원율이 3-5세의 경우 98%에 달하기 때문에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가가 영유아교육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만큼 학부모 및 기관의 무상교육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음

- 이에 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한 완전 무상화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이 전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기관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도 강화하여 모든 영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0~5세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이나 특수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는 5.10%인 반면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장애영유아는 56.83%로 나타났으나 이를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간에는 자격 취득에 큰 차이가 있음

□ 전국 다문화 출생아 비율은 2020년에 약 6%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 현재 약 5%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영유아 중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차원적이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 접근성과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2023년 기준 전국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98.1%에 달하는 것에 반하여 서울의 3~5세 유아의 취원율은 86.33%이고 특히 만 5세 유아의 취원율을 서울 행정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경우 약 49%, 강남구 약 51%, 성동구 약 59%, 용산구 약 6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별로 큰 차이가 있음. 이는 사교육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근거하여 많은 OECD 국가들이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이상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제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영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 논의가 필요함

5.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영유아교육과 돌봄 체제

□ 전문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주도의 놀이중심 교육을 하되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영유아 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적 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2) 미래 영유아교육제도

□ 전문가들은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간의 추구하는 방향성 측면에서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초등교사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전문가들은 모든 영유아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반 마련을 검토할

때 담당 교사의 자격과 질에 대한 정비가 중요하고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전문가들은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저출생 고령화 관련 내용을 교육 방향 설정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3) 미래 교육과정

□ 전문가들은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으로 놀이중심, 영유아중심이라는 전제하에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미래 영유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영아의 경우 '사회정서능력'과 '신체발달'이, 유아의 경우 '공동체 역량', '기본생활습관', '신체발달'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영유아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교원양성기관 차원에서는 '예비교사의 자기성찰 강화'와 '교수진의 현장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유아교육기관 차원에서는 '과도한 특성화활동 지양 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 이행'과 '교사의 교육연구시간 확보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정부차원에서는 '초중등교사에 준하는 처우'와 '교사업무경감'이 높게 나타남

4) 영유아기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

□ 다양한 배경과 요구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 및 전담인력 배치'와 '교사 1인당 유아수 감축'이 높게 나타남

나.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주요 결과

1) 토론회 주요 내용

□ 문헌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절방향의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비전 설정이 적절하고 타당함

- 인간상을 영유아로 설정할 경우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

- 핵심가치에서 '미래지향'의 의미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위계상으로 영유아중심, 존중과 협력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여 '미래역량'이 더 적절함

-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간 유기적 연계 필요함

-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 방향은 매우 타당하나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질의 영유아기 경험'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 가정에서의 영아기 양육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이 지원되고 배려되는 기업문화 조성이 필요함. 영아를 위한 돌봄과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

-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함. 영유아기만의 고유한 역량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미래역량의 개념을 정의하는 후속연구 필요

-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사의 학력을 석사수준으로 하고 파격적 처우개선이 요구됨. 영유아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기에 적합한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만 5세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나 적용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발달적 관점에서 근거에 기반한 검토가 필요함

2) 전문가 자문 주요 내용

□ 서론: UN과 UNESCO에서 영아를 교육의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추가 반영

□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전망: 미래사회 교육환경 전망, 미래교육의 방향과 시사점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

□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사례 분석: 국외사례 국가 선정 근거 제시 필요

□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용어 구체성 확인 및 수정 필요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요구 분석: 요구분석의 결과가 충분히 구체적인지 검토 필요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방향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방향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도출됨
- 핵심가치에서 '미래지향'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선 필요함
- 주체별 인간상 제시 필요
- 정책 방향 기술 문구를 '방향'을 제시하는 표현으로 수정 필요

6.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

가.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과정

□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쟁점, 해외 동향 및 주요 국가사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과정을 제시함

나.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 미래 영유아교육의 비전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을 제안함

- 이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을 지향한다는 의

미를 담고 있으며 영유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철학을 담고 있음

□ 미래 영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자주적이고 건강한 사람
-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사람
- 상호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미래 영유아교육의 핵심가치

- 영유아중심: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 제도, 환경 전반에서 영유아의 권리와 주체성을 중심으로 접근함. 이는 영유아를 단순히 학습 활동의 중심에 놓는 것을 넘어, 영유아를 정책, 제도, 환경 전반에 있어 중심에 놓고자 하는 확장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포괄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존중과 협력: 영유아교육의 주체인 영유아, 교사, 학부모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영유아 간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발달 속도를 존중받는 것을 의미함. 교사 차원에서는 영유아의 권리를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부모 차원에서는 교사와 영유아의 관점을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적 실행을 존중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개방성과 유연성: 개방성과 유연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급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며,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다. 발전 방향 및 주요과제

□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 설계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접근방식임. 단계별 과제로 다음의 핵심과제를 제안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권리 지원: 모든 영유아가 가능한 최선의 환경에서 꼭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발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서 개입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기관문화 정비: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적정 교육시간과 돌봄 시간에 대한 정의 및 연구 필요함

- 영유아중심 양육지원 강화: 영아기 가정양육을 확대하기 위한 부모의 자녀양육시간 확보 지원.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기업문화 전환이 필요함

□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 교육과정 개편

-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 영유아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철학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도록 체계화하여 놀이가 모든 유아에게 의미 있는 배움으로 연결되도록 함

- 미래역량과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의 미래역량과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생태적, 문화감수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함

- 영유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과정 연계: 영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간 방향성과 인간상의 일관성, 내용과 방법에서 자연스러운 연계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개발

□ 영유아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

- 교사가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교육문화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영유아교사 교육권 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교육연구시간 확보 및 지원인력 배치, 실효성 있는 교사보호 체계 마련

-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장기적으로 초등교원에 준하는 처우 및 근무여건 마련

- 영유아교사의 미래지향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향상 동기 부여 및 경력, 승진, 임금이 연계된 경력관리시스템 마련

□ 모든 영유아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한 책무성 강화: 기본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한 무상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통합맞춤형 지원: 특수교육, 다문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영유아 등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 지원서비스 확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된 영유아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유아가 이 시기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필요

7.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 연구 목적

-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영유아교육 방향성 설정

-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교육 비전의 제안

-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 통합에 따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미래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영유아교육 발전 방안 제시

□ 미래 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전망

- 디지털 전환, 저출생 및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사회 확산
- 정보 선별력 및 지식 창출 능력 중요하며, 이에 맞는 교육 방식 필요

□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 사례 분석

- 핀란드: 만 6세 예비초등학교 교육 의무화, 교사 자격 요건 강화, 유아교육의 질 제고 노력
- 프랑스: 만 3세부터 의무교육,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 일본: 유보통합 위한 인정어린이원 도입, 여전히 제도적 분리 존재, 점진적 통합 진행 중

□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 높은 취원율, 기관 중심 환경
-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아중심·놀이중심 강조, 교육 경험 불평등 우려
-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 공공성 강화 및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체계 필요

□ 전문가 의견 분석

- 놀이중심 교육 고도화 필요
-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연계 중요
- 특수·다문화 배경 영유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교사 교육권 보장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비전 및 핵심가치

- 비전: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
- 핵심가치: 영유아 중심, 존중과 협력, 개방성과 유연성

□ 주요 발전방향

-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 설계
-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 영유아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
- 모든 영유아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나. 후속연구 제언

□ 기존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

□ 교원 정책 관련 데이터 기반 연구

□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 법과 재정에 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시대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 영역이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교육의 방향성을 더 신중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저출생,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같은 변화는 단순한 사회적 흐름이 아니라 미래 사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교육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미래의 인구 구조가 변하면 학급 구성, 교육 환경, 교사와 교육기관의 역할이 모두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교육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학습 지원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의 교육은 이후 사회성과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교육은 기초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발달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자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개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교육의 형태와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영유아교육의 경우, 디지털 매체와 기술을 활용한 학습은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디지털 의존을 방지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지나친 디지털 사용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학습 방법과 전통적 학습 방법의 조화가 중요하다. 즉, 영유아교육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건강한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유보통합 정책은 최근 영유아 교육의 큰 변화 중 하나로, 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이해하고, 두 체제 간의 연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 그리고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유보통합과 같은 현대적 이슈를 고려한 영유아교육의 방향 재정립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영유아교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미래 세대의 기초 역량을 키우는 교육적 책임을 지닌 영역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다각적인 접근과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큰 흐름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영유아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최저 출생률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영유아교육의 방향성 제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생 국가가 되었다(김다혜, 차지연, 2023). 또한, 2023년 기준 0~5세 인구는 1,668,296명으로 2015년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했다(행정안전부, 2024. 2.20 인출). 이는 영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의 역할 변화와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는 나라로 선정되어(Koreatimes, 2023.5.3) 향후 획기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 없이는 출생률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순한 육아 부담 경감을 넘어 교육과 보육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질 높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변화하는 양육 환경, 고용 및 노동시장의 변화, 맞벌이가정 증가 등의 사회 변화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영유아교육기관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급감하는 출생률과 취원대상 영유아 수 감소를 고려할 때 영유아교육기관의 소규모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질 확보를 위한 요건, 공동교육과정 운영 양질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 등(이성희, 박신영, 2023)의 실효성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통한 공정한 출발을 국가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교육 비전의 제안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는 유엔(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인류 공동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 네 번째 목표로 제시된 것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 영유아 발달과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UN, 2015). 특히 SDG 목표 4.2는 모든 국가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영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으로 국가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교육이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유아교육의 발전을 상당 부분 민간부문에 의존해 왔으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의무교육의 시행이다(김교령, 한산섬, 박은혜, 2023). 여러 나라에서 영유아기 의무교육 시행을 시작하고, 또한 고려하고 있는 국외 동향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영유아교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는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통합되면서 유보통합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 후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3.12.07.)이 가결됨에 따라 2024년 6월 27일부터 영유아교육·보육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에 이어 주무 부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모든 영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의 비전과 방향성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영유아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교육의 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미래 세대의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영유아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나 가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영유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내용을, 인공지능의 활용 등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변화를 이끌어가는 미래형 유아교육정책의 수립과 개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영유아의 교육적 경험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다(권정선, 2021).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교육정책 수립은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핵심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담길 필요가 있다. 즉,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반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숙의와 판단을 통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고,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시대의 도래, 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목표와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영유아교육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첫째, 미래사회 전망에 대한 분석과 영유아교육 관련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교육의 동향을 진단한다.

둘째,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영유아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다.

셋째, 영유아교육의 비전과 가치 실현을 위한 발전방향과 주요과제 제시를 통해 중장기 영유아교육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영유아

영유아기에 대한 정의는 학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제교육표준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각급학교 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유네스코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0단계 유아교육에서부터 8단계 박사학위 수준까지로 단계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단계에 따른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초등교육 이전 단계인 ISCED 0단계 유아교육은 연령과 교육내용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01수준의 영유아교육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과 02수준의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ISCED 01수준은 일반적으로 3세 미만을 위한 영유아 교육발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ISCED 02수준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 시기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3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ISCED에서는 3세 미만과 3-5세로 영유아교육의 대상 연령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법령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는 출생부터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된다. 유아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으로 정의된다. 즉, 법령에 근거하여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연령을 유아로, 3세 미만의 연령을 영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ISCED와 우리나라 영유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출생에서 초등 취학 이전의 아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세분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0-2세는 영아, 3-5세는 유아로 지칭하고자 한다.

나. 영아교육과 돌봄

그동안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유아교육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로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영아기 또한 언어, 사회성, 정서, 인지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적 요구에 맞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SCED 1997에서는 0단계가 만 3세부터 초등교육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만 3세 미만 영아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ISCED 2011에서는 영아기의 교육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만 3세 미만 영아를 포함하는 ISCED 01 수준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ISCED 01 수준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이 교육적 특성을 가져야 하며, 단순한 돌봄만을 제공하는 경우 ISCED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기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셋째, 특정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넷째, 최소 하루 2시간, 연간 100일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UNESCO, 2012).

ISCED 2011의 이러한 개정은 영아가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존재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영아기부터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보호 중심의 돌봄에서 나아가,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접근하고자 한다.

다. 미래

미래란 현재를 지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찾고자 미래사회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미래는 2030년 전후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의 영유아교육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진행 중인 전환기로 볼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과 제4차 보육기본계획(2023-2027)이 시행되고 있다. 즉, 이미 2027년까지 도달할 유아교육과 보육의 세부 정책과제가 확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기본계획의 실행이 완료되고, 유보통합의 전환기를 지난 시점 이후인 2030년경을 미래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가. 미래교육 전망 분석

최근 발간된 다양한 미래교육 관련 보고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성 확립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나.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동향 분석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의 방향성 도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영유아교육 주요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주요 현황 분석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관련 현황과 변화 추이를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영유아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 재정 및 지원체계,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였다.

라.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정책 실무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마.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제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유아교육의 비전에 근거하여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안하였다.

4.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 문헌고찰을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현황 및 정책 변화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 도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국외 영유아교육 동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교육 정책 관련 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델파이조사

델파이조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을 돕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 델파이조사의 목적은 지난 영유아교육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을 위한 방향성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정책실무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각 15인, 총 45인을 선정하였다. 그중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는 43인이었다.

델파이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조사를 위한 조사지는 영유아교육과 돌봄체제, 미래의 영유아교육제도,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 영유아의 다양성을 반영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24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해 조사지를 발송하고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지를 수합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를 도출하고 도출된 범주와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2차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 위주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델파이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2차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개발하였으며 2024년 10월 28일에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링크를 발송한 후 2024년 11월 1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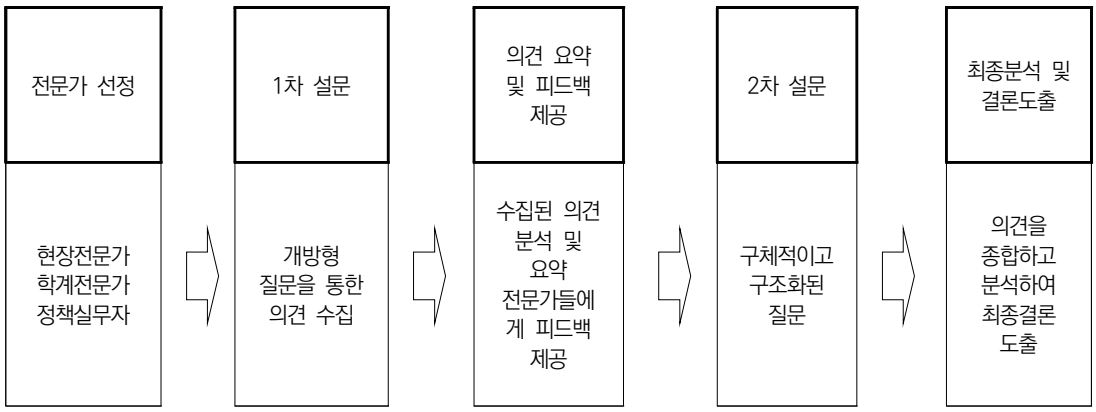

[그림Ⅰ-4-1] 델파이조사의 절차

다.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첫째, 문헌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의 목적은 각 분야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도출한 영유아교육의 비전, 목표, 방향성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차 자문에는 총 9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Ⅰ-4-1〉 전문가 1차 자문 명단

	소속기관 유형	직위	자문방식	자문분야
1	교육대학교	교수	서면	유-초연계 관련 내용 검토
2	4년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3	4년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4	4년제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5	4년제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6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7	국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8	4년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비대면 온라인	델파이조사 분석방법 검토
9	4년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비대면 온라인	행·재정 관련 내용 검토

또한, 최종보고서 초안이 완성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의 전체적인 논리성과 비전 및 주요과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5명이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Ⅰ-4-2〉와 같다.

〈표 Ⅰ-4-2〉 전문가 최종자문 명단

	소속기관 유형	직위	자문방식	자문분야
1	사립법인유치원	원장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2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3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4	4년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5	4년제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서면	비전체계도, 주요과제 검토

둘째,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방향성과 정책과제 제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회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의 비전, 목표, 방향성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2024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유아교육분야 전문가 2인과 보육분야 전문가 2인이 참여하여 도출된 비전과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연구 추진체계를 종합해서 제시하면 다음 [그림Ⅰ-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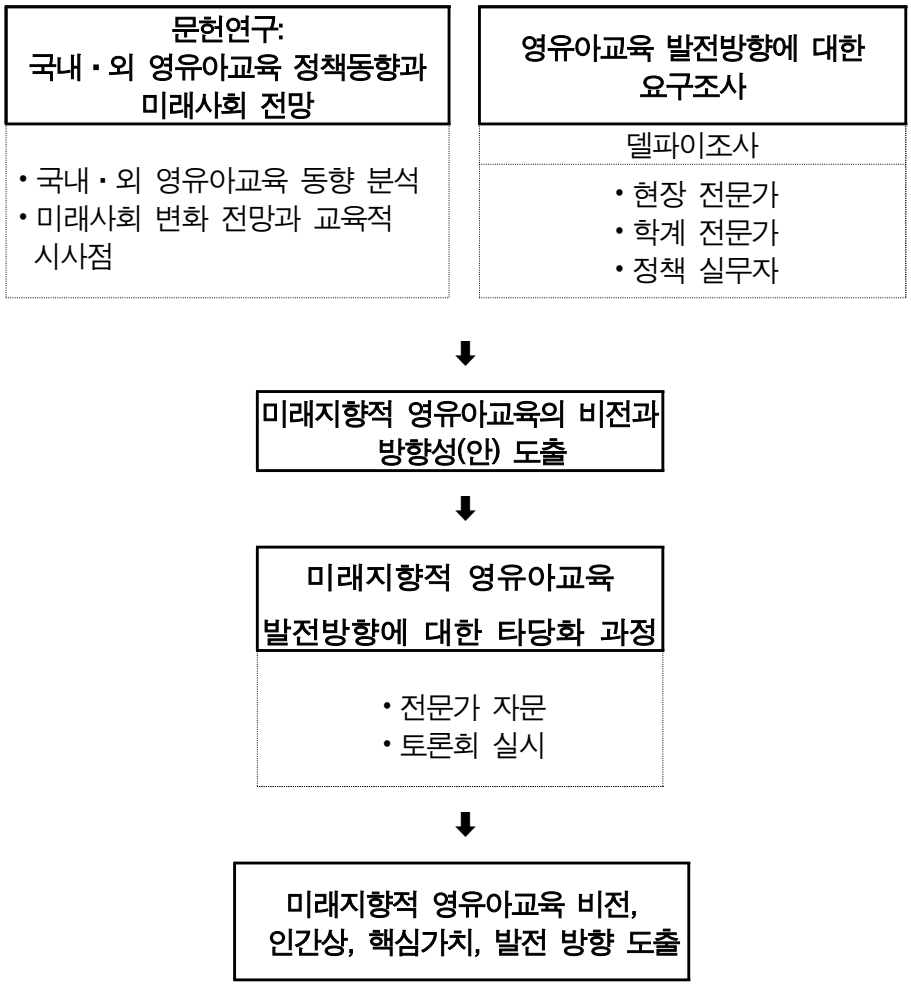

[그림Ⅰ-4-2] 연구 추진체계

5. 연구의 성격과 한계

가. 연구의 성격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와는 그 범위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본 연구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근본적인 발전 전략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육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향후 영유아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영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영유아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유보통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영유아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유보통합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들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수행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전망

1. 미래사회 교육환경 전망

‘미래사회’는 ‘급변’, ‘예측불가’, ‘AI’, ‘기후위기’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며, 인구감소로 인한 수축사회(Shrinking society)(홍성국, 2018), 기술발달로 인한 필연적인(inevitable) 미래 전망(Kelly, 2017)과 같이 인간과 삶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김재춘, 2024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대해 유토피아적인 핑크빛 전망을 내놓기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 대한 가능성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맞물리며 생산성은 극대화되어 공급 과잉은 되겠지만 빈부 격차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며 전 세계를 수축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홍성국, 2018).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자본의 부족, 부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 도덕적 해이의 특성을 보이며 수축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진단되었다.

둘째, 미래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로 학습자들의 학습양식, 사고와 행동 방식, 삶의 방식에서 다양성이 보편적인 사회라 예측된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증가하고 전 세계의 빈곤이 감소했다고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1/4의 사람들이 극단적 빈곤에 처해있다(UNESCO, 2022).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은 교육에서의 배제와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셋째, AI의 발전은 우리 인간에게 그동안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기술의 발전으로 대다수 영역에 접근(access)하게 하고, 공유하며, 심지어 모든 인간과 기계가 매트릭스로 연결되는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예측된다(Kelly, 2017).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어 만나게 될 미래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우며, 불확실성의 상호연계를 통한 ‘초(超) 불확실성’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超) 연결’ 중심의 문명 대전환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을 통한 ‘초(超) 연계’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현재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로 인해 오히려 인간의 고유성이 더욱 강조되며,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 비판적인 윤리성이 요구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어 직면하게 될 미래는 우리가 가늠하기에 어려운 세계이며, 기존에 추구했던 교육의 방향과 목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선별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함께 새로운 학습과 익숙한 것을 종합해 직면하는 문제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는 더욱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미래 사회에는 초인공지능을 통해 인간과 같은 자아정체성을 지닌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인간의 정신이 컴퓨터에 업로드되어 육체 없이도 인간의 정신이 복제될 수 있으며, 유전자 조작, 생명 연장 등을 통해 인간의 신체가 변형된 신인류의 탄생이 가능해진다. 포스트 인간(신상규, 이상욱,

이영의, 김애령, 구본권, 김재희, 하대청, 송은주, 2020) 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해 기존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나 교육적 패러다임을 넘어선 새로운 관점과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윤옥한, 2022).

유발 하라리(2018)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저서에서 교육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현재 아기들이 30대가 될 2050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1세기는 이전과 달리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있으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보라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AI와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욕망과 심층 감정이 쉽게 해킹당할 수 있고 알고리즘 등으로 조작되기 쉽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운영체계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의 고유성과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생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며, 인공지능 사회에 인간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2.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시사점

가. OECD의 교육 2030과 UNESCO의 2050

OECD의 교육 2030과 UNESCO의 2050에서는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2030(OECD, 2018:3)에서는 미래를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급변하는 전환의 시기로 조망하고 있다.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1997) 프로젝트 추진의 결과로 OECD는 '핵심역량'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작용 역량',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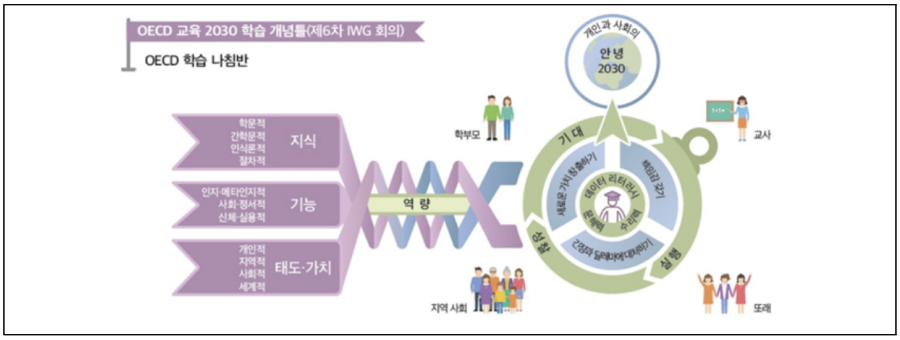

자료: 최상덕(2018). OECD 교육 2030에 대하여. 행복한 교육. 교육부.

[그림 Ⅱ-2-1] OECD 교육 2030 학습개념틀

OECD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역량 탐색을 통해 '학습 개념틀'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OECD 교육 2030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래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는 교육 2030 학습 개념틀과 학습 나침반 2030을 제시하며, 학습자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변혁적 역량'을 정의하였다. 변혁적 역량은 학교 안의 교육과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길러나가는 것으로, 윤리적 사고, 책임감을 지닌 전지구적 사고,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따라오지 못하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으로 정의하였다(OECD, 2019, 김아미, 201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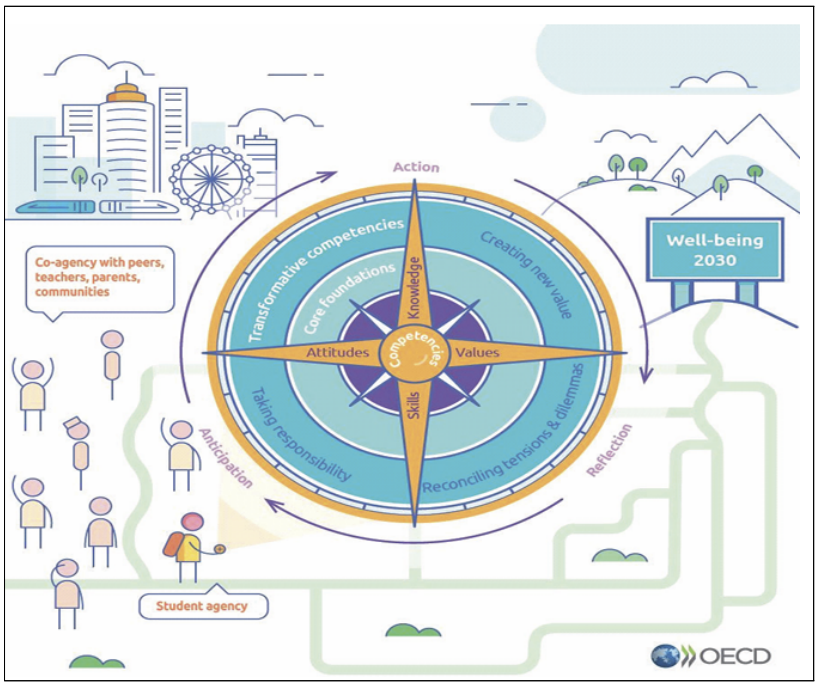

자료: OECD(2019)

[그림 Ⅱ-2-2] OECD 학습나침반

UNESCO(2021)는 '국제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를 발족하고, 2050년과 그 이후 교육을 조망하기 위해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을 발표하였다. UNESCO 2050(2022:1)에서는 '위험에 처한 지구, 민주주의 후퇴와 양극화 심화, 연결하고 격차를 만드는 디지털 기술, 불확실한 직업의 미래' 등 전환점에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교육의 변혁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UNESCO(2021)는 교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구성원의 암묵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사회계약임을 제시하고, 크게 세 가지의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미래의 교육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그만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셋째,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다. 이를 위한 두 가지 기본 원칙으로는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공공의 노력이자 공동재로서의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UNESCO, 2021: 2).

김미경 외(2022)는 UNESCO의 미래교육보고서와 OECD의 2030을 교육목적과 비전, 교육과정, 교사, 학교 측면으로 비교해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Ⅱ-2-1〉과 같다.

〈표 Ⅱ-2-1〉 OECD의 2030와 UNESCO의 미래교육보고서 비교

기준	OECD 교육 2030		UNESCO의 미래교육보고서	
1. 교육목적과 비전	목적	- 개인과 집단의 웰빙	목적	-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 학생의 행위주체성	비전	- 공동재(common goods)로서의 교육
2. 교육과정	변혁적 역량	-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 딜레마 해소하기 - 책임감 갖기	역량	- 협동(Cooperation) - 협력(Collaboration) - 연대(Solidarity) - 상호의존(Interdependence) - 포용(Inclusion
	지식	- 학문적 지식 - 간학문적 지식 - 인식론적 지식 - 절차적 지식	지식	-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지식을 생성하도록 돕는 한편, 지식을 비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생태적(ecological),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학습을 강조
	문해력	• 3가지 핵심 기초(core foundations) - 인지적 기초: 문해력, 수리력 포함 - 건강적 기초: 육체적, 정신적 건강, 웰빙 포함 - 사회·정서적 기초: 도덕과 윤리 포함	-	• 언어적 문해력(literacy) • 수리력(numeracy) •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3 교사	- 지식을 가르치는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자 - 학생의 행위 주도성을 기르는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력적 행위 주도성(co-agancy) - 학생과 함께 교수학습 과정의 협력적 창조자(co-creator)가 되어야 함(OECD, 2019: 38). - 교사의 협력적 행위 주도성은 교사전문성 계발을 위해 의도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학생과 동료 교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필요(OECD, 2019: 38).	-	- 교사는 협력적 직업: 학교라는 공간에서 동료교사와 함께하는 활동임. 팀으로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교육과정으로 설계(UNESCO, 2021: 80) - 교실뿐 아니라 학교의 활동으로 확장하고 공공영역의 교육적 의사결정에 참여(UNESCO, 2021: 90). - 성찰적 실천가이며 지식의 생산자로서 교사의 전문성 계발(UNESCO, 2021: 83) - 교과, 교육학, 교수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며, 동료들과 공유하며 지식 생산을 추구(UNESCO, 2021: 84) - 자율성 보장,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UNESCO, 2021: 88) - 포용적 교육, 개별화 학습 등을 위한 전문성 계발 및 교사 교육 필요(UNESCO, 2021: 86)
4. 학교	미래학교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학교교육의 확대 시나리오 2: 교육 아웃소싱 시나리오 3: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시니리오 4: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		- 협동,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 주요 교육 장소의 변화: 교실보다 학습자 커뮤니티 - 학교 환경 및 조직의 혁신과 재정비 - 학교 대체가 아닌 학교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 기술 - 학교의 협력 문화 구축	

주: 김미경 외(2022). Ⅳ.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의 비교 내용, 정윤경(2023). 전환시대, 미래교육의 방향 탐색: OECD2030과 보고서 분석을 중심(p. 7)으로의 내용을 표로 정리 요약함.

OECD 교육 2030의 교육목적이 개인과 집단의 웰빙이라면, UNESCO의 미래교육보고서는 지속가

능한 미래를 목적으로 두었다. OECD 교육 2030이 교육과정에서 변혁적 역량과 지식, 문해력을 포함하고 있다면, UNESCO의 미래교육보고서 역시 역량과 지식, 문해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지닌다. 두 보고서 모두 교사의 역할을 협력자로 바라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학생과의 협력, 동료교사와의 지식 공유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미래 학교에 대해서도 학습의 허브, 삶의 일부로 보는 OECD와 유사하게, UNESCO에서는 학교를 협동,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어 미래 교육과 학교, 교사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윤경(2023)은 최근 미래교육의 담론이 명확한 비전 제시 없이 단순히 기술지향적 담론으로 흐르고 있음을 비판하며, OECD 2030이 기존에 성공을 강조하던 것에서 탈피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OECD 2030과 UNESCO 2050의 보고서는 근대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호관계성과 탈인간중심주의적 관계 위해 함께되기의 교육(남미자, 2022, 정윤경, 2023에서 재인용)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공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목적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정윤경(2023:14)은 OECD 2030의 행위주체성 개념이 학생이라는 개인이 자신의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학습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실천하며, 그 적절성을 반성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대적 교육 주체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UNESCO 2050의 공동재의 개념은 인간이 공동체로서 존재하면 얻게 되는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은 상호관계 안에서,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안녕을 추구함으로써 창출된다고 본다.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에 있어 OECD는 변혁적 역량을, UNESCO는 세대를 거쳐 축적된 인류의 공유지식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 교육은 역량과 지식 사이의 통합과 균형잡기(정윤경, 2023:16)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래교육에 대해 단순히 기술지향적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과 개인 및 사회의 웰빙에 중점을 둘 것인가, 공동재로서 공유된 지식으로서 바라보고 축적된 지식에 대한 공유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 국내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미래교육 관련 정책연구의 메타분석(이영희, 윤지현, 홍섭근, 임재일, 백병부, 2018)을 통해 5가지 영역, 즉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 인재상,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주요 교육정책 및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2013~2018년까지의 정책보고서 11편을 분석해 결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를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표 Ⅱ-2-2〉와 같다.

〈표 Ⅱ-2-2〉 국내 선행연구에 담긴 미래교육의 메타 분석

메타 분석	분류	내 용
1. 미래교육의 비전 및 목표	비전	-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 - 공공성을 보장하는 질 높은 교육실현을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 견인 - 다양성, 수월성, 공정성을 통해 잠재력 발휘 -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

	교육목표	- 학습자 맞춤형 교육내용 및 방법 -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체제 - 교원 역할의 재정립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 교육복지의 확대 및 원활한 작동
2. 미래교육의 인재상	인재상	- 창의·융합형 인재 - 자주적인 인간 - 교양 있는 인간 - 창의적인 인간 - 더불어 사는 인간 - 인간성과 창의성을 겸비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 - 창조적 기업가 정신,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 -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 협업에 필요한 감성 및 인성적 역량을 갖춘 인재
3. 미래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역량중심 교육과정	-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감성 능력과 같은 21세기 역량 함양
	다문화 교육 강조	- 외국인 이민자 등 다문화 학생 증가로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 및 인종차별 지양교육 강화
	진로 직업교육	- 미래 대응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마이스터고, 전문계 학교 등 학교밖 기관과 연계한 진로직업 필요성 제시
	인성·감정 교육 강조	- 지능정보사회에 인간성 상실의 우려를 지양하기 위해, 지식 중심이 아닌 인문적 소양과 인성·감성 중심 교육 필요
	글로벌 시민교육 강조	- 경제 및 사회 양극화, 문화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필요
	소프트웨어 교육 강조	-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역량 강조,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디지털 윤리의식 교육 포함
4. 미래교육의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	- 개인 맞춤형 교수학습 - 디퍼러닝 및 크로스오버러닝 교수학습 - 협력학습 강조 -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평가	- ICT 기반 개인별 학습 과정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학습자의 진단 및 평가 가능) - 과정 중심의 평가(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평가) - 개인별 학습 과정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스텔스평가(Stealth Assessment)
5.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 및 전략	교육복지정책	- 학교 환경 변화, 지역사회 교육문화, 교원역할의 재정립, 교육의 공공성 등을 강조
	교육자치와 자율성 강조	- 학습자의 자율권 및 지역자치권, 학제운영의 유연성,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지원 정책 등

주: 이영희, 윤지현, 홍섭근, 임재일, 백병부 (2018).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제24-5호(2018년), pp. 133~150의 연구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임.

해당 연구의 저자(이영희 외, 2018: 150)는 전반적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이 주로 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교육적 대응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며, 보다 철학적 성찰에 기반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미래교육의 비전과 철학, 미래 교육에 요구되는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이영희, 윤지현(2020: 148-156)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교육개혁은 입시 위주의 개혁이며, 사회개혁과 유리된 분절적 개혁, 교육 현장을 배제한 관 주도의 개혁이라는 제한점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미래 교육의 비전과 철학으로서는 '인간존중 교육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미래 교육에 요구되는 역량으로서는 '창의성 및 문제해결 역량, 공감 및 의사소통 역량, 평생학습 역량'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의 정책 추진 전략으로서 '미래

비전의 공유 및 합의, 교원 양성 방안 개편'을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미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학생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과 소명 의식을 갖춘 교사 양성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Chat GPT-4와 협업하여 미래 교육 시나리오를 도출한 연구(임상훈, 이은택, 오희정, 2023)에서는 생물학적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포스트휴먼적 학습자 역량이 등장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포스트휴먼적 학습자는 기술적으로 향상된 학습자, AI와 결합한 학습자, 평생학습자, 협업과 네트워크적 학습자, 학제 간 융합 능력을 지닌 학습자, 윤리적 문제를 인지하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교수학습의 변화로 이어진다. 인공지능이란 학습의 중요한 도구로서 개인화된 학습 경로, 학습 촉진자, 실시간 평가 및 피드백,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협업, 성찰 및 메타인지 촉진, 윤리와 가치를 요구하며 무엇보다 과정적 학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적 교육은 무엇보다 불확실한 상황에 학습자가 대응하도록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지향하며, 학교와 교실에 대한 재개념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리적 학교는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사회적 상호작용, 실습, 커뮤니티 허브와 같은 학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보았다.

한편,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 학교 교육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한 연구(이강주, 권순형, 양채원, 고동완, 김기범, 최명수, 2021)에서도 미래 학교 교육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다원화된 학습경험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학교는 '학습허브센터'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 예견하였다. 또한, 미래 교육운영체제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역량 이력'이 더욱 중요해져 상담과 지도에 활용될 것이라 보았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미래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미래 유아교육 관련 국내 논문 53편(2002-2022)과 국외 논문 34편(1971-2022)의 동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박건령, 2024)에서는 국내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소개된 2017년 이후 급격히 미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p.128). 아래 [그림 Ⅱ-2-3]에서 미래 유아교육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보면 국내 연구들이 미래 역량이나 교육 실천에 관심을 기울인 데 반해, 국외 연구는 대부분이 미래를 위한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와 달리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역량'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주로 유아 교사의 역량과 유아의 역량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주제는 국외 연구 '유아교육의 변혁: Transforming ECE'에서 다루어졌지만(박건령, 2024: 141), 국내연구가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국외 연구는 유아교육의 시스템 변혁과 그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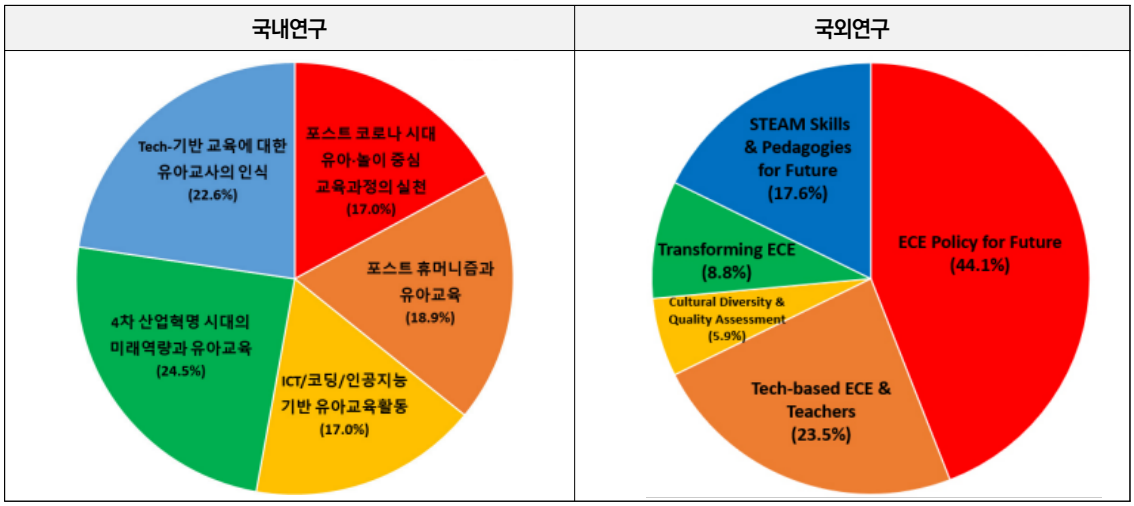

주: 박건령 (2024). '미래교육' 담론 관련 국내·외 유아교육분야 학술연구 주제 동향 비교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9(1), pp.137-138의 그림을 정리한 것임.

[그림 Ⅱ-2-3] 국내외 유아 미래교육 연구주제 비교

국내연구들이 'ICT/코딩/인공지능 기반 활동의 유아교육활동'에 대한 주제로 분류된 반면, 국외연구들은 'STEM 기술과 미래를 위한 교수법: STEM Skills & Pedagogies for Future'로 분류되었다.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디지털을 기술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평가지원 도구나 온라인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유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서부터 마련해 주어야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국내 유아 미래교육 연구가 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하며,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과 유아의 역량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라 해석된다. 진정한 미래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유아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며, 디지털 기술의 활용 관점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교사와 유아의 삶과 배움에 대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외(2022)의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보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영유아 개인의 맞춤형 성장지원과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둘째,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인간 고유의 인간다움을 발현시키는 문제인식 역량, 대안 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이 필요하며, 협업 및 소통하는 인간의 능력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 수용 기반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복지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유아의 핵심역량과 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김안나, 임선아, 김혜정, 2023)에서는 교사들이 '창의력'을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력을 중심으로 자기주도력, 문제해결 능력, 놀이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교육 단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사고방식을 통해 새롭고 독창적인 창의력을 강조하며, 창의력은 여러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유아기 미래 교육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술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주로 AI 교육, 로봇이나 디지털 교육, STEAM 교육,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연동해, 미래 교원 역량,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방향과 영유아의 역량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건령(2024)이 해외 학술논문의 검토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 변화와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영유아교육·보육체제의 개편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영유아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중심의 교육을 통한 '존재의 가치'의 회복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주도하지만, 영유아교육에서는 인간 고유의 감정, 공감, 윤리성, 창의성 등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인간다움(humanness)을 기르고, 도덕적 판단과 자율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둘째,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가 중요하다. UNESCO 2050의 비전처럼, 영유아 교육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포용, 협력, 연대, 상호의존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과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 기후위기, 사회적 갈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형성을 돕는다.

셋째, 미래역량을 기르는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 협업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 영유아 시기에는 이를 놀이와 탐색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놀이 중심·탐구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AI 기반 교수법이 도입되더라도, 그 활용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와 교육환경의 재구조화를 통한 삶 기반 교육의 실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유아교육은 교사를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삶을 이해하고 설계해 주는 조력자이자 협력자로 재정의해야 하며, 교사 양성과 전문성 개발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영유아교육기관은 학습허브, 돌봄과 관계의 공동체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삶 기반 배움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개인 성공이 아닌 공동체적 성장, 지식 주입이 아닌 역량 함양, 단절된 배움이 아닌 삶과 연결된 교육이라는 미래 영유아교육의 핵심 방향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Ⅲ.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국제적 교육 아젠다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OECD의 'Starting Strong' 시리즈를 중심으로, 최근 강조되는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영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각국의 영유아교육 제도, 교육과정, 교원자격 및 복지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을 위해 핀란드, 프랑스, 일본 세 나라를 선정하였다.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로서 보육과 교육의 통합체계, 강력한 공공성, 질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프랑스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로, 높은 여성 고용률과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여준다.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 중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정책을 일찍이 도입한 사례로, 다양한 제도 개편과 함께 유보통합의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의미가 깊다. 이러한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영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제도 통합, 학제 연계, 교사 전문성, 돌봄과 교육의 통합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1.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 동향

UN 지속가능발전목표(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2030년까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4번째 목표가 교육에 해당되며 그 안에 7개의 세부목표를 가진다. 초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에 대해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1-1〉 지속가능발전목표 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의 세부목표

구분	내용	영역
목표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진흥	평생학습
세부목표 4.1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	초중등교육
세부목표 4.2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교육
세부목표 4.3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고등교육
세부목표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최대한 증대	직업교육
세부목표 4.5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	성평등 및 취약계층

세부목표 4.6	모든 청소년과 최대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성취하도록 보장	문해력과 수리력
세부목표 4.7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출처: 박은혜(2017).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UN 통계위원회에서 이행지표를 개발하였다. 영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이행지표는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지속가능발전목표 4.2 유아교육의 이행지표

세부목표 4.2	지표	내용	Tier	Data 제공 기관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2.1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의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만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비율/성별에 따라	III (합의된 개념이나 자료수집방법이 없는 경우)	UNICEF UNESCO-UIS OECD
	4.2.2	성별에 따라 조직화 된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초등학교 전 1년)	I (해당지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국제기구가 있는 경우)	UNESCO-UIS

출처: 박은혜(2017).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과제.

이행지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는 4.2.1 지표에 대하여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의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의된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도구가 없었으나, 2024년 현재 OECD에서 만 5세를 대상으로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Study를 위한 도구 개발이 완료되어 2025년 검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24.11.03.).

OECD 교육위원회는 OECD 회원국가의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검토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제별로 각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정부와 영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지향해야 할 정책 영역 및 방향 등을 제시해 왔다. 2002년부터 발간된 OECD의 Starting Strong 시리즈를 통해 OECD 국가의 영유아교육 정책 환경과 영유아교육 지원 동향에서 나타나는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OECD의 Staring Strong 보고서를 통해 본 영유아교육 주요 쟁점

시리즈	부제	주요쟁점
Starting Strong Ⅰ (200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ducation and skills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위한 교육제도 구축을 권고함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보장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달과 학습에서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Starting Strong Ⅱ (2006)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은 영유아보육과 방과후과정에 있어서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의 격차와 불충분한 질 부분으로 관심을 옮겨감

		조기에 유아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저소득층 영아와 제2언어 그룹의 영아에게 생애 초기 좋은 출발선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높아짐
Starting Strong Ⅲ (2012)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OECD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아교육·보육의 목표는 형평성 측정, 공적 책임 및 공공 투자, 일과 삶의 균형, 여성 노동 참여, 인구문제 개선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질 높은' 유아교육이 주는 혜택을 밝히며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강조함 특히 지역의 요구에 대한 일관성과 융통성, 다양한 기대의 균형, 지침과 목적의 연속성 제공, 교육의 질 향상과 영향력 강화, 부모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함
Starting Strong Ⅳ (2015)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보육의 질 모니터링에 주안점을 두고, Starting strong Ⅲ에서 제안한 질 관리를 위한 5가지 정책 포인트에 따라 전반적인 유아교육·보육의 질 현황을 분석함
Starting Strong Ⅴ (2017)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re to primary education	유아교육·보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전이에 대하여 집중함 유아교육·보육에서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하여 전이를 위한 조직과 관리, 전문적인 연속성, 교육학적 연속성, 발달적 연속성을 강조함 유아가 학교에 다닐 준비를 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학교를 유아가 다니기에 적합하게 준비하는 것에 집중 필요
Starting Strong Ⅵ (2018)	Engaging Young Children: Lessons from research about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의 질을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로 나누어 제시하며 유아교육의 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작함 구조적 질을 결정하는 요소: 낮은 교사-아동 비율, 작은 집단 크기. 높은 교사자격, 현직교사교육/전문성 발달 참여, 교육경력, 책무성/질 모니터링 및 개선 평가 시스템 과정적 질을 결정하는 요소: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발달 및 학습 교사 변인이 양질의 교사-아동 상호작용에 중요하며, 구조적 질의 특성 중 아동발달 및 학습, 교사-아동 상호작용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직교사교육/전문성 발달 참여 요소로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출처: 박은혜, 전홍주, 차기주, 박신영 (201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해외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p. 24-32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조화함.

OECD는 2017년 Starting Storing V 보고서의 부제를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전이'로 삼고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하여 각국의 정책을 모니터링 할 만큼 성공적인 기관 전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에 최대한 연결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제, 교육과정, 교원 자격 등을 연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ECD, 2017).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중 56.1%의 국가에서 초등교육 이전의 1년을 연계 학년(transition class, year, or group)으로 제공하며, 이 중 47.8%의 국가에서는 연계 학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중 78.9%의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설계 및 운영 등에서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의 영아-유아, 유아-초등 연계를 학제, 교육과정, 교원자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Ⅲ-1-4〉과 같다.

〈표 Ⅲ-1-4〉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의 학제, 교육과정, 교원자격 연계

국가명	학제				교육과정		교원자격		
	ISCED	형태	영아유아 연계	유아초등 연계	영아유아 연계	유아초등 연계	내용	유·보 연계	유·초 연계

미국	0	0-2세 어린이집 3-4세 유아학교	분리	연계	분리	연계	3-8세 P-3 교사	연계	연계
	1	5세 유치원(K-grade) 6세 초등학교							
영국	0	0-4세 유아학교	통합	분리	통합	연계	0-4세 생애초기교사 5-11세 초등교사	통합	분리
	1	5세 초등학교							
스웨덴	0	0-6세 유아학교 (6세 준비학년)	통합	연계	통합	연계	0-5세 유아교사/ 6세 유아학급 - 유아교사 자격 또는 초등교사 자격/ 7-9세 초등교사	통합	분리
	1	7세 초등학교							
프랑스	0	0-2세 어린이집 3-5세 유아학교	연계	분리	분리	연계	0-2세 영유아보육교사 3-7세 유아/초등교사	분리	통합
	1	6세 초등학교							
한국	0	0-5세 어린이집 3-5세 유치원	분리	분리	분리	분리	0-5세 보육교사 3-5세 유치원교사 6세 초등교사	분리	분리
	1	6세 초등학교							

출처: 김교령 외(2023)의 p. 225, 227, 228 표 재구성
*표본문 내의 기관명칭 및 교원자격명칭은 출처 논문에서의 명칭을 그래도 따름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 이수 보장,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영유아기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EU 국가의 45%가 초등학교 이전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취학 전 1년 이상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2). 특히 프랑스는 유아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실행하고 있고, 핀란드와 스웨덴 등은 만 6세를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한 준비 학년으로 두고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Ⅲ-1-5〉 EU 주요국의 0-6세 교육제도 현황

단위: 세, 년

	공적책임 영유아교육 연령	초등교육 시작연령	의무교육 시작연령	영유아기 의무교육연한	비고
벨기에	3-5	6세	5세	1년	
불가리아	3-6	7세	5세	2년	
체코	2-5	6세	5세	1년	
아일랜드	2.5-5.5	6세	4세*	2년	*초등단계의 4-5세 유아학급
덴마크	1-2, 3-5	6	6	0년	
그리스	4-5	6세	4세	2년	
프랑스	2-5	6세	3세	3년	cycle 1: 2-6 cycle 2: 6-9
크로아티아	1-6	7세	6세	1년	
사이프러스	3-5	6세	5세	1년	
라트비아	2-6	7세	5세	2년	
룩셈부룩	0-3, 3-5	6세	4세	2년	cycle 1: 3-6 cycle 2: 6-8
리투아니아	0-6	7세	6세	1년	6세 준비학년
헝가리	3-5	6세	3세	3년	
네덜란드	4-5	6세	5세	1년	
오스트리아	0-2, 0-5	6세	5세	1년	
폴란드	3-6	7세	6세	1년	
루마니아	0-1, 2, 3-5	6세	5세	1년	
슬로바키아	3-5	6세	5세	1년	

핀란드	1-6	7세	6세	1년	6세 준비학년
스웨덴	1-6	7세	6세	1년	6세 준비학년
노르웨이	1-5	6세	6세	0년	
스위스	4-5	6세	4세	2년	

자료: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2).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education systems 2022/2023: schematic diagrams. Eurydice Facts and Figur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내용 재조직.

2022년 11월 16일 UNESCO는 세계 영유아보육 및 교육 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CECCE)에서 영유아보육 및 교육 변혁을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타슈켄트 선언문(UNESCO Tashkent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UNESCO, 2022). 세계 영유아보육 및 교육 회의(WCECCE)는 출생부터 8세까지 모든 어린이의 양질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정치적 약속과 행동을 새롭게 다지고, 권리에 기반한 포괄적 영유아보육·교육(ECCE)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ECCE 시스템 및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 구축, 평등하고 효과적인 ECCE 투자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그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영유아교육에 해당하는 목표 4.2에 대한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CCE의 변혁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전략을 채택하였다.

〈표 Ⅲ-1-6〉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의 ECCE 변혁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전략

구분	기본 원칙과 전략
모든 이들을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ECCE 서비스	• ECCE 커리큘럼과 교수법의 적합성 및 품질 향상 - 영유아 중심, 놀이기반, 포괄적, 환경 및 성별에 민감한 학습 접근법 개발 강조 • 모든 아동을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ECCE 서비스 보장 • 기초적인 읽기, 쓰기, 수리 및 사회정서적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 • 비상사태 및 장기적 위기 상황에서 ECCE 권리 보호 및 보장 • 모든 아동이 양육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ECCE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모든 아동의 도전과 필요를 인식하고 이들이 번창하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 강화(위험에 처한 학습자) • ECCE에서 초등 교육으로의 전환 개선 - 최소 1년간의 양질의, 무료 및 의무적인 ECCE 제공 • 영유아기부터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강화 -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건강 팬데믹,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 침식과 같은 도전에의 대 응 지원
ECCE 인력	• ECCE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강화 • 초등학교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인증 • ECCE 직업의 매력을 높이고 경력 발전 기회 제공 • ECCE 직업의 위상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유치 및 이직률 제고 • ECCE 인력의 임금과 근로 조건은 최소한 초등 교사와 동등한 수준 • ECCE 분야의 여성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영유아의 돌봄, 교육 및 양육 책임과 관련된 성별 편견 문제를 해결 • 민간(사립) 부문의 ECCE 인력을 위한 규제 마련 및 강화 • 특히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분야의 서비스의 질, 인력 자격, 고용 조건 및 근로 환경에 대한 규제 미흡 개선 • 부모, 가족 및 기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근거 기반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조치, 재정 지원 및 교육 기회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원 환경 구축 지원 • 부모와 가족에게 양질의 ECCE가 이후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아버지와 남성이 반응적 돌봄에 참여하도록 지원
변혁을 위한 혁신	•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ECCE 정책과 실천 혁신 및 변혁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평등하고 포괄적으로, 비침해적이고 안전하며 윤리적으로 보장 • 아동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 ECCE 학습 공간, 실천 및 제공의 다양화 •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놀이터, 박물관, 도서관 및 주변 환경의 다른 장소에서도 학습
정책, 거버넌스 및 재정	• ECCE 정책 개발, 제공 및 조정에 대한 정부 전체적, 다부문적, 통합적 접근 보장 • ECCE는 여러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재정, 정책 개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필요 • ECCE는 국가 및 지방 수준의 교육, 건강 및 사회 개발 정책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추산과 재정 필요 • ECCE를 위한 재정 자원 보호 및 동원 - ECCE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공공 지출 확대(교육 예산의 최소 10%를 취학 전 교육에 할당하는 방향으로 노력) - 비영리, 민간 및 사회 부문과의 규제된 파트너십 - ECCE 공공 서비스 강화 - 소외된 인구를 대상으로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 • ECCE 정책, 실천 및 프로그램의 데이터,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4.2의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 ECCE 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 교육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 •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하여 교육권에 ECCE 포함 - ECCE는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달성하고 기타 사회적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핵심적임 - ECCE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적응가능성 및 수용가능성이 정책과 법적 프레임워크에 반영 - 모든 아동에게 취학 전 최소 1년간의 무료 및 의무적인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

출처: UNECSO (2022.11.16.).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은 모든 유아를 위한 초등학교 취학 전 최소 1년에 대한 양질의 의무 무상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기초적인 읽기, 쓰기, 수리 및 사회정서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자격을 초등학교 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걸맞는 영유아교사의 임금과 근로조건,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영유아의 총체적 지원을 위하여 통합적인 차원에서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 예산의 최소 10%를 영유아교육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은 지속가능개발목표 4.2의 이행을 강조하며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 핀란드

핀란드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선진국으로 선진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권정윤, 한유미, 김희영, 2022; 장민영, 박은혜, 이진화, 2017). 핀란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는 0~5세 대상 보육과 교육과학부가 관장하는 만 6세 대상 취학 전 교육(예비초등학교)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2013년에 담당 행정부처를 교육문화부로 이전하여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이루었다. 통합 이후에도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연중 종일제로 운영되며, 일일 평균 11시간 운영하지만, 교사는 교대 근무를 하며, 종일제라 하더라도 영유아들이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권정윤 외, 2022). 또한 세계적으로 취학 전 1년에 대한 양질의 의무교육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중심성을 바탕으로 만 6세를 대상으로 취학 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 핀란드 영유아교육제도 및 현황

핀란드의 교육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6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이후 초등학교 교육 준비를 위한 1년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9년의 기본교육기간이 있다. 초등학교 교육 준비를 위한 1년 의무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다. 기본교육기간 이후 직업교육훈련과 중등교육기간, 응용과학대학과 대학교 교육이 있는데, 이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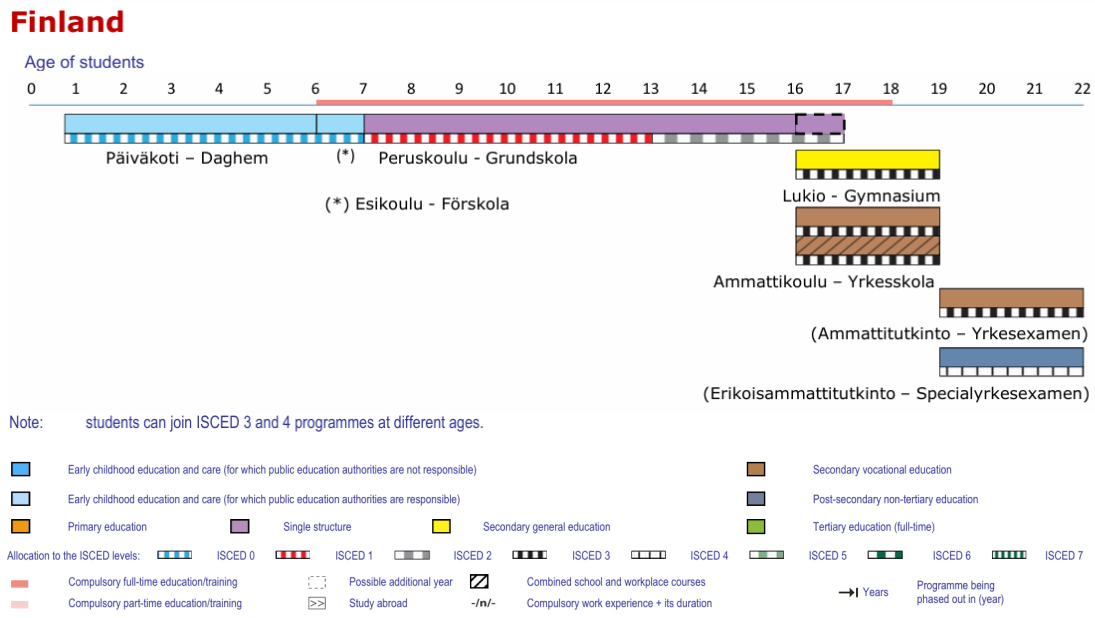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2022).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education systems 2022/2023. p. 28 diagram

[그림 Ⅲ-2-1] 핀란드의 영유아교육제도

예비초등학교(pre-primary education; esiopetus)는 초등학교 교육 준비를 위한 취학 전 1년 교육을 의미하는데 2015년 8월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취학 전 모든 6세 아동이 이수해야 한다. 예비초등학교 교육은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종합학교 또는 유아교육센터(바이바꼬티, Early

chilldhood centres)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이윤진, 정도상, 2015), 대부분의 유아는 유아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예비초등학교에 다닌다(Eurydice, 2024, 09. 30). 예비초등학교는 보통 하루 4시간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초등학교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ECEC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6세 유아의 대부분은 온종일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해 다른 유아교육센터에 동시에 등록한다(Eurydice, 2024, 09. 30). 예비초등교육은 교재비, 식비 및 교통비(5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통학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Eurydice, 2024, 09. 30).

2013년 이전에는 핀란드 영유아교육·보육은 이원화되어 있었다. 0-5세 대상의 영유아보육은 사회보건부에서, 6세의 예비초등교육은 교육과학부에서 담당하였다. 2013년 교육과 보육의 연속성, 통합성 강화라는 세계적인 동향을 바탕으로 0-6세의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주관부처를 교육문화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다(이윤진, 정도상, 2015).

2021년 기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을 살펴보면 〈표 Ⅲ-2-1〉과 같다. 만 2세 72%, 만 3세 84%, 만 4세 89%, 만 5세 92%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의무교육인 만 6세 예비초등학교의 취원율은 96%인 것을 볼 수 있다(OECD, 2023).

〈표 Ⅲ-2-1〉 핀란드 ECEC 취원율 (2021)

연령	2세 미만	2세	3세	4세	5세	6세
핀란드	19%	72%	84%	89%	92%	96%(의무)
OECD 평균	17%	41%	73%	88%	84% (기관외 11%)	26%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만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유아교육센터(Early childhood centres)와 가정보육기관(Family daycare)이 있다.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 중 94%가 유아교육센터에 재원하고 있고 6%의 영유아가 가정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립기관과 사립기관으로 나뉘는데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의 81%가 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19%의 영유아만이 사립기관을 이용하고 있다(Eurydice, 2024, 09. 30). 기관이용 비용은 매달 0 – 311 EURO 로 가족의 규모, 소득, 자녀의 기관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최대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가정은 소수이고, 약 50% 정도의 영유아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Eurydice, 2024, 09. 30).

핀란드 0~2세 영아의 기관이용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소득 3분위 가족의 0~2세 영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35%임에 반하여 상위소득 3분위 영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44%로 9%의 차이를 보였다(OECD, 2024). 0~2세의 기관 취원율과 25~34세 성인 여성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표 Ⅲ-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5~34세 성인 여성의 취업률은 72%이고 2세 미만 영아 취원율은 19%로 취원율이 크게 밑도는 것을 볼 수 있고 2세 영아의 취원율은 72%로 25~34세 여성의 취업률과 유사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핀란드

에는 유급 육아휴직/가정양육 시점부터 무료 의무취학 전 교육시작 시점까지 3년의 보육 공백이 있다고 보고(OECD, 2024)되는 것을 고려할 때, 2세 미만 영아의 기관이용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그 기간 동안 유급 육아휴직/가정양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Ⅲ-2-2〉 핀란드 취업률 (2022)

국가	핀란드		OECD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5-34세 취업율	72%	80%	70%	88%
25-64세 취업율	80%		78%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핀란드의 사립 영유아기관의 영유아교육 분담율을 살펴보면 〈표 Ⅲ-2-3〉과 같다. 기관이용 영아의 24%, 유아의 15% 만이 사립기관에 재원하고 있어 사립기관의 분담율이 OECD 평균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3-5세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재정을 GDP 대비로 살펴보면 0.6%를 국가가 투자하고 있어 OECD평균와 유사하며, 유아 1인당 연간 정부지출은 13,511USD로 10,025USD인 OECD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3).

〈표 Ⅲ-2-3〉 핀란드 공립 및 사립기관의 영유아교육 재정 (2020)

연령	사립기관 재원영유아 비율			3-5세 유아당 연간 지출	
	ISCED 01(영아)	ISCED 02(유아)	ISCED 0(전체)	GDP대비 %	유아당(USD)
핀란드	24	15	16	0.6	13,511
OECD 평균	51	33	32	0.6	10,025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나. 핀란드 영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예비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 총괄하고 있다. 2018년 유아교육 및 보육법(Ac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개정하였고 2022년 국가수준 핵심 유아교육과 보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개정하였다. 유아교육 및 보육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교육학에 중점을 두고 교육, 양육, 돌봄을 제공하는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Eurydice, 2024, 09. 30). 국가수준 핵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교육제공자들은 지역기반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Eurydice, 2024, 09. 30).

예비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핵심 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으로 따로 두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되어 2010년, 2014년 개정을 거쳐왔다(Sylvia Hakari, 2020). 2014년에 개정된 국가수준 예비초등 핵심 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은 교과영역을 아우르는 '횡단 역량(transversal competence)'을 1) 사고와 학습, 2)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 자기표현, 3) 자신을 돌보고 일상생활 관리, 4) 멀티리터러시, 5) ICT 역량, 6) 직업생활과 창업을

위한 필수 역량, 7) 참여와 관여(participation and involvement)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의 기쁨과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정서경험, 협력학습과 상호작용, 창조적 활동이 학습을 증진시킨다는 학습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교과내용을 줄이고 교과의 비율을 조정하고 7가지 횡단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과목 간의 경계를 허물과 교과와 역량 간에 보다 협력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윤은주, 2015).

국가수준 유아교육과 보육 핵심 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The Fi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은 예비초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횡단 역량 중에서 6번째인 직업생활과 창업을 위한 필수 역량을 제외하고, 4) 멀티리터러시 역량과 5) ICT 역량을 하나로 묶어 5개 횡단 역량을 강조하며 유아교육을 통해 5개 횡단 역량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키우기 위한 학습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습 영역으로는 1) 풍부한 언어 세계, 2) 다양한 표현 양식, 3) 나와 지역사회, 4) 나의 환경과 탐색 및 상호작용, 5) 나는 자라고, 움직이고, 발달해요 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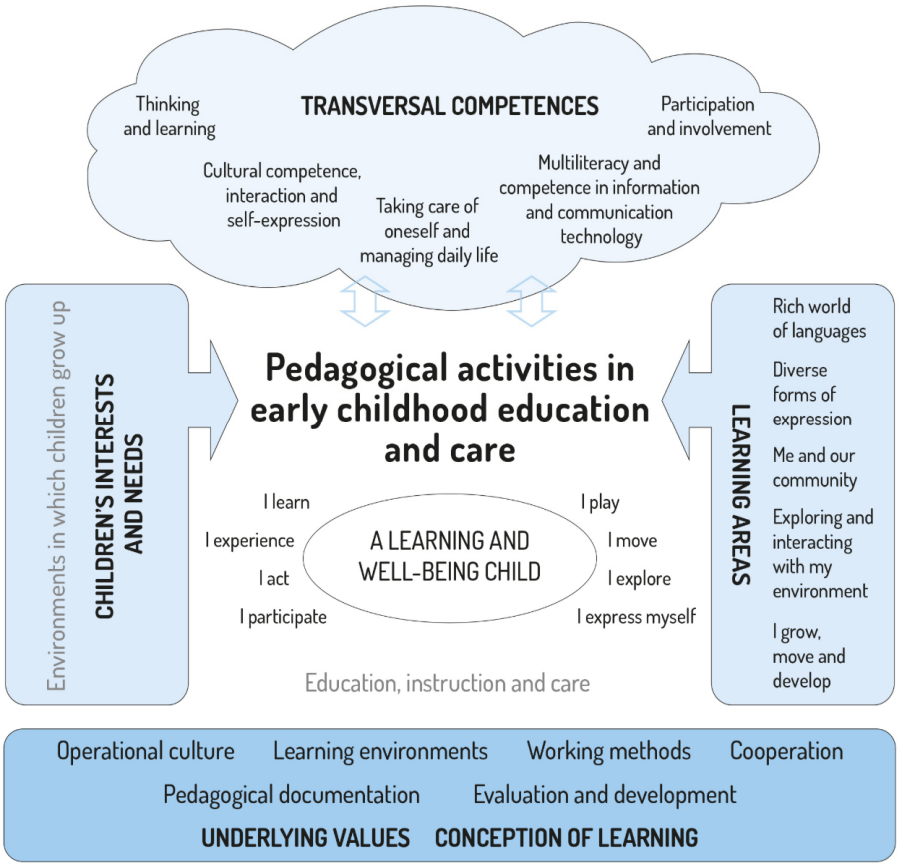

출처: EURYDICE(2024. 9.30). Finland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그림 Ⅲ-2-2] 핀란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 보육 핵심 교육과정의 프레임

다. 핀란드 영유아교원

유아교육센터(Early Childhood Centres)의 영유아교사는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그 외 유아교육센터 인력에는 사회교육사(social pedagogues)와 보육사(childcarers)도 있다. 사회교육사는 응용과학(applied sciences)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이고 보육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ISCED 3 단계를 취득해야 한다. 유아교육센터 교직원 3명 중 한 명은 학사학위를 소지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2030년부터 교직원 최소 2/3은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이중 최소 50%는 영유아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예비초등학교(pre-primary)를 담당하는 교사는 최소 학사학위를 소지한 영유아교사이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종합학교 교사이다(Eurydice, 2024, 09. 30).

현재 유아교사의 절반 정도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아교사 자격요건이 석사학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Sylvia Hakari, 2020). 핀란드의 초등교육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핀란드 유아교육센터 교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38시간 15분이고, 이 중 평균 5시간(전체 근무시간의 약 13%)은 영유아를 교육하는 것 이외의 업무에 할당되어야만 한다. 또한 교육계획, 평가, 교육업무 등에 할당되는 시간 외에도 학부모 회의, 유아교육센터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력, 전문가 회의를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만 한다(Eurydice, 2024, 09. 30).

만 6세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초등학교의 교사는 주당 최소 23시수 이상의 수업(1시수는 45분)을 진행한다. 이들 교사들은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주당 114시간의 비수업시간을 갖는다(Eurydice, 2024, 09. 30).

예비초등학교 교사는 평균적으로 연간 33,000유로의 급여를 받는데(2018년 현재), 이는 중등학교 교사의 급여인 56,000유로와는 대비되는 금액이다. 영유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급여는 교육분야를 위한 주 및 지방공무원 단체 협약의 일부로 전국적으로 합의되며, 급여 합의는 1~3년마다 갱신되어 이루어진다(Eurydice, 2024, 09. 30).

라. 가정지원제도

핀란드의 자녀양육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은 아동수당, 출산휴가와 수당, 부모양육휴가 및 수당, 자녀양육수당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핀란드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시스템인 Kela 웹사이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s://www.kela.fi/henkiloasiakkaat). 아동수당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만 17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금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자녀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은 〈표 Ⅲ-2-4〉와 같으며, 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26유로씩 추가 지원된다. 한부모, 이혼한 부모에 대해서는 한부모 자녀수당을 월 73.30유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표 Ⅲ-2-4〉 핀란드의 자녀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자녀순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후 각 자녀에 대하여
아동수당	월 94.88유로	월 104.84유로	월 133.79유로	월 173.24유로	월 192.69유로

자료: https://www.kela.fi/lapsilisa

출산휴가 및 수당은 출산수당과 임신 휴가 및 수당으로 구분된다. 출산수당으로 출산 패키지 또는 170유로를 받을 수 있다. 임신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30일 전에 사용할 수 있고, 자녀의 실제 출생일과 관계없이 영업일 기준 40일 동안 임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신수당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주가 임신 휴가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신수당은 고용주에게 지급된다. 임신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한다.

〈표 Ⅲ-2-5〉 핀란드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른 임신수당

연소득	10,664유로 미만	20,000유로	30,000유로	40,000유로	50,000유로
임신수당	31.99유로/일	54.63유로/평일	81.95유로/평일	109.26유로/평일	136.58유로/평일

자료: https://www.kela.fi/lapsilisa

임신휴가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자녀를 돌보는 다른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및 수당은 자녀 1명 기준으로 총 320일의 평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부모가 둘인 경우 각 부모는 평일 기준 160일 동안 육아휴직을 받으며, 최대 63일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2년 이내에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수당 또한 연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표 Ⅲ-2-6〉 핀란드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른 육아수당

연소득	13,712유로 미만	20,000유로	30,000유로	40,000유로	50,000유로
육아수당	31.99유로/일	42.49유로/평일	63.74유로/평일	184.98유로/평일	104.44유로/평일

자료: https://www.kela.fi/lapsilisa

자녀양육수당은 부모육아휴직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양육수당을 자녀 연령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거나 공립 또는 사립기관의 교육 및 보육료를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유아교육 제도가 잘 정립된 나라이며 유아교사의 양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연령을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GDP의 0.7%를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0.6%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영유아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여성 취업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2021년 현재 1.80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OECD data, 2024.05.19.)는 점에서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 프랑스 영유아교육제도 및 현황

프랑스 영유아교육의 경우 0~2세는 어린이집(crèches), 3~5세는 유아학교(Ecole Maternelle)로 구분되어 있다. 유·보 연계를 위하여 만 2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이학급(classe passerelle)을 유아학교에서 운영하여 연계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ce Agenc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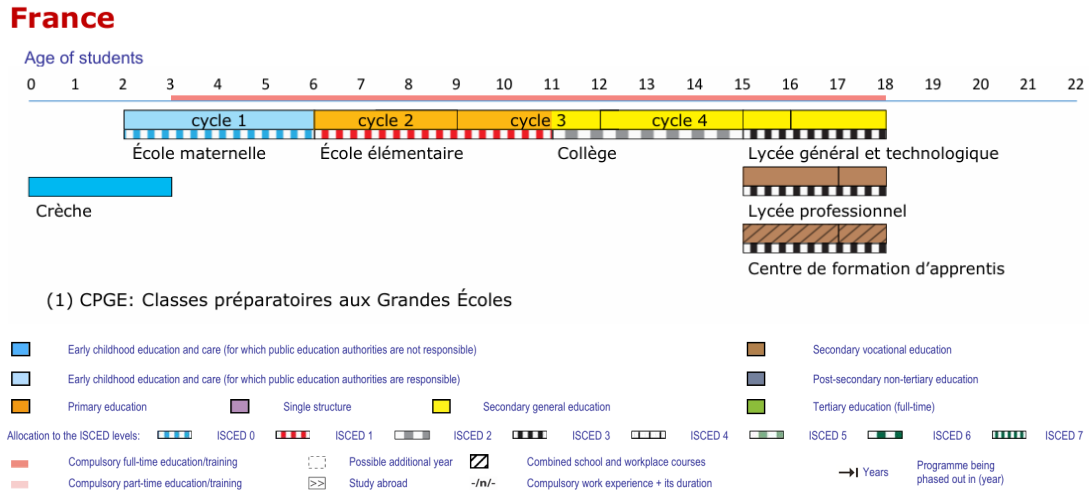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2022).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education systems 2022/2023. p. 20 diagram

[그림 Ⅲ-3-1] 프랑스의 영유아교육제도

프랑스의 경우 만 3세 유아교육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만 16세까지 공교육이 제공된다. 만 3세부터의 의무교육은 2017년 마크롱 정부의 교육개혁 이후 실시하고 있다. 유아교육은 유아학교(écoles maternelles)에서 이루어지고 국가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가 이를 관할한다. 유아학교는 ISCED 02단계에 해당하며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른다(Eurydice, 2024. 03. 05).

만 3세 미만의 보육은 연대보건부(Ministry of Solidarity and Health)가 관할한다. 영아보육이 제공되는 형태는 다양한데, 대부분 가정보육사(childminders)들이 영아보육을 제공하고, crèches라고 하는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다. 집단보육구조(집단 또는 부모협동어린이집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지방당국이나 비영리 협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된다. 시설당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영아 수는 시설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Eurydice, 2024. 03. 05). 0~2세를 위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없으며(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2), 프랑스의 영아 보육서비스는 ISCED의 교육체계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Eurydice, 2024. 03. 05). 즉, 프랑스의

3세 미만 보육은 '가정이 아닌 안전한 기관에서 조직화되고 교육적 의도를 가진 교육 활동이 제공되는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어린이집(crèches)의 유형은 〈표 Ⅲ-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나뉜다(Service public, 2022a, 김현경, 2023, 06.14에서 재인용).

〈표 Ⅲ-3-1〉 프랑스의 어린이집(crèches) 유형 및 특징

유형	특징	수용 영아 수
단체어린이집 (Crèche collective)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60명까지
가정어린이집 (Crèche familiale)	영아들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보육을 담당	1~4명
부모어린이집 (Crèche parentale)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영아의 보육 담당 영아의 부모가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부모가 직접 보육에 참여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보육은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	24명까지
직장어린이집 (Crèche d'entreprise)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행정기관, 병원 등) 종사자 영아를 대상 일반적으로 직장 근처나 직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모의 근무시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60명까지

출처: 김현경(2023.06.14.). 프랑스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nTbBoardArticleSeq=839032

프랑스의 영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을 살펴보면 〈표 Ⅲ-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만 3세부터 취원율이 100%인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취원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즉, 만 3세 미만의 보육은 어린이집(crèches) 보다는 집단보육이나 가정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영유아를 자녀로 뒀을 가능성이 높은 25세~34세 성인의 취업률이 여성 72%, 남성 83%로 특히 여성의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을 참고하면(표 Ⅲ-3-3) 이러한 집단보육구조나 가정보육의 형태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중심이 아닌 양육문화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2〉 프랑스 ECEC 취원율 (2021)

연령	2세 미만	2세	3세	4세	5세	6세
프랑스	a	10%	100%	100%	100%	2%
OECD 평균	17%	41%	73%	88%	84% (기관외 11%)	26%

'a' 는 해당 카테고리가 적용되지 않아 데이터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함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표 Ⅲ-3-3〉 프랑스 취업률 (2022)

국가	프랑스		OECD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5-34세 취업율	72%	83%	70%	88%
25-64세 취업율	76%		78%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공립 유아학교에서의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표 Ⅲ-3-4〉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사립 유아학교에서 담당하는 유아비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의 공립 및 사립기관을 포함하는 영유아교육 공적재정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GDP 대비 0.7%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OECD 평균 0.6%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다만, 유아 1명을 대상으로 연간 지출액을 산정하면 9,985 USD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다.

〈표 Ⅲ-3-4〉 프랑스 공립 및 사립기관의 영유아교육 재정 (2020)

연령	사립기관 재원영유아 비율			3-5세 유아당 연간 지출	
	ISCED 01(영아)	ISCED 02(유아)	ISCED 0(전체)	GDP대비 %	유아당(USD)
프랑스	a	14	14	0.7	9,985
OECD 평균	51	33	32	0.6	10,025

'a' 는 해당 카테고리가 적용되지 않아 데이터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함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나. 프랑스 방과후 교육활동

프랑스는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는 하교 시간이 오후 4시로 교육과 돌봄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타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국가이다. 프랑스는 돌봄 정책에 국가적 개입이 높은 편이며, 방과 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손승민, 2016; 하정임, 2022).

프랑스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활동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까지 교육시스템에 포함하여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방과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의 수업이 없는 수요일과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협회에서 제공하는 여가와 적성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황성원, 2022). 교육부는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의 진로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관리하고, 스포츠, 청소년, 대중교육과 여가생활부는 방과후 레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문화지도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시설의 설치와 인가, 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와 함께 방과후활동을 조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적 및 물적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 유아와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김미애, 김성천, 박신영, 박건령, 2023).

다. 교육과정

프랑스의 학교교육은 3-5-4-3 학제로 유아교육 3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하지만 학제 연계를 위하여 공교육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과정에 주기(cycle)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학교 교육과정은 초기 학습주기로, 초등학교 저학년

은 기본 학습주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강화 주기로 구성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유치원부터 보장되고 있다.

〈표 Ⅲ-3-5〉 프랑스 교육주기

주기	학년	학제
Cycle Ⅰ 초기학습주기 (apprentissages premiers)	Petite Section(소형 세션) (3세)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
	Moyenne Section(중형 세션)	
	Grande Section(대형 세션)	
Cycle Ⅱ 기본학습주기 (apprentissages fondamentaux)	Cours Préparatoire(준비과정)	초등학교
	Cours Elémentaire1(초등과정1)	
	Cours Elémentaire2(초등과정2)	
Cycle Ⅲ 강화주기 (consolidation)	Cours Moyen1	
	Cours Moyen2	
	Sixième	중학교
Cycle Ⅳ 심화주기 (approfondissements)	Cinquième	
	Quatrième	
	Troisième	
Cycle de determination 결정주기	Seconde	고등학교
Cycle terminal 최종주기	Première	
	Terminale	

자료: 프랑스한국교육원(2022.01.15.). 프랑스의 교육정보. 초중등교육과정. https://educoree.fr/france-edu/cursus/

유아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cycle 1 교육과정은 유아들의 발달에 필수적인 1) 다차원적 언어 사용, 2) 신체활동을 통한 행동, 표현, 이해, 3) 예술활동을 통한 행동, 표현, 이해, 4) 생각의 구체화를 위한 최초의 매개체(숫자, 형태, 크기, 연속성), 5) 세계 탐험(시간, 공간, 생물과 미생물의 세계)의 5가지 학습 영역으로 구성된다(주프랑스한국교육원, 2022.01.05.). 초등 단계에 해당하는 cycle 2- 3 교육과정은 5개의 공통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생각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 2) 학습 방법론 및 도구, 3) 개인 및 시민의 훈련, 4) 자연 및 기술 시스템, 5) 세계 표현과 인간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Eurydice, 2024. 03. 29). 즉, 유아학교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을 관통하는 영역이 유사한 형태로 연계되고 있다.

프랑스 유아교육과정에서는 놀이, 사고 및 문제해결, 경험, 기억과 암기를 통한 학습을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습의 교두보로서 모든 영역에서 생생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2). 프랑스에는 0~2세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없다(Eurydice, 2024. 03. 05)

라. 프랑스 영유아교직원

프랑스 영유아교직원의 자격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European Commission이 Eurydice(2024. 03. 05)에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보육에서 3세 미만을 보육하는 교직원의 최소 40%는 국가자격을 갖춘 유아전담간호사(Puériculteurs, nursery nurses), 국가자격을 갖춘 유아교사(Educateurs des jeunes enfants), 국가자격을 갖춘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childcare assistants), 국가자격을 갖춘 간호사 또는 국가자격을 갖춘 심리운동사(psychomotricians)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 수준은 ISCED 3단계부

터 6단계까지에 다양하게 해당된다. 나머지 60% 이하의 교직원은 가족 관련 부서가 발급 및 관리하는 자격보유자로 구성될 수 있다.

개인의 가정에서 타인에 대한 보육을 제공하는 가정보육사(childminders)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은 5년간 유효하다. 보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집단보육 교직원의 근무시간과 연차는 전국단체협약(National Collective Agreement)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공립 및 사립 기관 교직원들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이다. 가정보육 보조원의 경우 하루 9시간 보육을 제공할 수 있고 매일 적어도 11시간 이상의 연속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6일 이상 연속으로 고용될 수 없다.

유아학교부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공립교사는 국가공무원에 속하며, 유아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유아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은 국립고등교수 및 교육연구소(Institut National Supérieur du Professorat et de l'éducation, INSPE)에서 이루어진다. 유아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쟁시험을 치러야 한다. 경쟁시험에 통과한 모든 교사는 일 년간 유급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교사는 일반교사로 모든 과목을 담당한다. 대학입학시험(바칼로레아)을 치른 뒤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과 국립고등학교(lycée)에서 균등하게 제공하는 3년의 교직준비과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옵션을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교수, 교육, 훈련에 특화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다. 이 과정에는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경쟁시험 준비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경쟁시험은 석사과정 2년차 마지막에 치러진다.

자격을 갖춘 유아학교 교사의 급여는 26,839유로부터 47,629유로까지 매트릭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책정되며, 평균급여는 37,328유로이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 급여수준과 동일하다. 급여책정 매트릭스 시스템에는 교사평가, 교사의 담당학년,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훈련, 참여 정도가 반영된다.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교사는 주당 24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간 36시간은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을 돕거나 학교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개인 작업을 돕기 위해서 할애해야 하고, 연간 48시간은 교육협동업무, 학부모와의 관계 업무,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 프로젝트 개발 및 모니터링에 할애해야 하며, 연간 18시간은 현직교사교육에, 연간 6시간은 의무적인 학교협의회에 할애해야 한다.

마. 가정지원제도

프랑스는 프랑스 가족수당기금(DAF)이 전반적인 가족 지원을 담당하며 가족수당, 가족 보충 수당, 출산지원금, 기본 유아 수당, 양육 지원금, 보육보조금, 개학수당, 가족 부양 수당, 휴가 보조금(가족), 휴가 보조금(자녀), 장애 자녀 교육수당 등 다양한 수당 및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주 오이시디 대표부, 2024. 11. 25). 이 중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관 CLEISS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사

회보장제도 중 가족 혜택(Family bebefits)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 유지 혜택(Basic maintenance benefits)에는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정액수당(Allocation forfaitaire), 가족부양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이 있다.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가진 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금은 부양하는 자녀의 수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자녀 순위에 따른 가족수당은 〈표 Ⅲ-3-6〉과 같으며, 14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부터 최대 74.26유로의 추가 지원급이 지급된다.

〈표 Ⅲ-3-6〉 프랑스의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자녀 수	두 자녀	세 자녀	세 자녀 + 한 명 추가마다	14세 이상 자녀
가족 수당	월 148.52유로	월 338.80유로	자녀당 월 190.29유로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월 74.26유로 추가지원

자료: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프랑스의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은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녀 수에 따라 가족보충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가족이 받는 수당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이면 동일하다.

〈표 Ⅲ-3-7〉 프랑스의 가족보충수당 (2024년 4월 기준)

자녀수	소득수준(2022년 기준)		수당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세 자녀	25,653유로 이하	20,971유로 이하	289.98유로
	25,653~51,296유로	20,971~41,933유로	193.30유로
네 자녀	29,148유로 이하	24,466유로 이하	289.98유로
	29,148~58,285유로	24,466 ~48,922유로	193.30유로

자료: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에 자녀 중 한 명이 20세(가족수당 적용 제한 연령)가 되어 가족수당이 감소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그 자녀가 여전히 집에 거주하여 부모가 부양해야 하고 월 1,104.25유로 이상을 벌지 못할 경우, 이를 증명하면 가계 소득에 따라 1/2 또는 1/4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자녀가 20세가 지난 첫 달부터 1년간 지급된다. 이를 정액수당(Allocation forfaitaire)이라 부른다.

가족부양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자녀당 매월 195.86유로(부모 한 명의 지원을 못 받는 자녀 양육 시) 또는 261.06.유로(부모 모두의 지원을 못 받는 자녀 양육 시)의 지원을 받는다.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수당은 출산/입양 지원금 (prime à la naissance), 기본 수당(allocation de base), 자녀양육공동급여(PreParE), 자율보육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CMG) 등이 있다. 먼저 출산/입양 지원금 (prime à la naissance)은 임신 7개월 이후 또는 입양아가 집에 도착할 때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 번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출산할 때마다 1,066.30유로, 20세 미만 아동을 입양할 때마다 2,132.58유로를 지급 받는데, 이는 〈표 Ⅲ-3-9〉에 제시된 부모소득한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표 Ⅲ-3-8〉 프랑스의 출산/입양 지원금 소득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 1명 예정인 외벌이 가정	맞벌이/한부모 가정
2022년 연소득	34,791유로 미만	45,979유로 미만

자료: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기본 수당(allocation de base)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이후에 자녀의 부양 및 교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수당이다.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3세 생일 전월 말일까지, 입양의 경우 아동이 20세 미만인 경우 입양아가 집에 도착한 후 3년 동안 지급되며, 출산/입양지원금과 동일하게 부모소득한도가 적용된다.

〈표 Ⅲ-3-9〉 프랑스의 부모소득에 따른 기본수당

부모소득	2022년 연소득 29,120유로 미만	2022년 연소득 34,971유로 미만
기본수당	월 193.30유로	월 96.66유로

자료: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자녀양육공동급여(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는 부모가 3세 미만 자녀, 입양한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줄여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첫째 아이부터 지급되는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나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일한 기간이 첫째 아이의 경우 2년,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4년, 셋째 아이부터 지난 5년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노령 보험(old-age insurance) 가입기간 기준).

〈표 Ⅲ-3-10〉 프랑스의 자녀양육공동급여

근무시간	전체 직업 중단 시		법정 근무시간 최대 50% 미만 줄인 경우	법정 근무시간 50-80% 줄인 경우
	두 자녀 이하	세 자녀 이상		
자녀양육공동급여 금액	448.42유로	732.97유로	289.89유로	167.22유로

자료: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자율보육선택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CMG)은 6세 미만 자녀의 보육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모가 1) 등록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를 고용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총급여가 자녀당 일일 58.25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2) 인가된 보육기관을 이용하며, 해당 자녀가 월 16시간 이상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3) 소규모 보육센터(micro-crèche)를 해당 자녀가 월 최대 10유로의 비용으로 한 달에 최소 16시간 이용할 경우 지급된다. 자율보육선택보조금은 Family Benefit Fund를 통해 보육 비용을 최대 85%까지 부분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비율은 자녀의 수와 연령,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1]))를 고용하면 그 임금의 100%를 보조하고, 재택보호자(garde à domicile)를

고용할 때 0~3세 미만일 경우 월 496유로, 3~6세의 경우 249유로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4. 일본

일본은 영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영유아교육과 보육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2006년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정어린이원'이라는 유보통합형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였다(박은혜, 우명숙, 이진화, 2016). 그 이후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유보통합 모델 및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2015년 아동육아지원신제도 시행(박은혜, 우명숙, 이진화, 2016), 2019년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무상화 정책 시행(박은혜 외, 2019), 2023년 어린이가정청 설치(김희정, 2023) 등 영유아교육 제도 안정화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보통합 추진 결과 및 관련 영유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일본 유아교육 체계 및 현황

일본의 영유아교육・보육은 0세부터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6세부터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기관인 보육소, 유보통합기관인 인정어린이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행・재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표 Ⅲ-4-1〉 일본의 ECEC 체계

<table>
<tr><th>연령</th><th>0세</th><th>1세</th><th>2세</th><th>3세</th><th>4세</th><th>5세</th><th>6세</th><th>7세</th></tr>
<tr><td rowspan="3">기관
(담당부서)
관련법 및 시설성격</td><td colspan="3"></td><td colspan="3">유치원(문부과학성): 학교교육법을 따르는 교육시설</td><td rowspan="3">초등교육</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6">보육소(후생노동성):
아동복지법을 따르는 아동복지시설</td></tr>
<tr><td colspan="6">인정어린이원(내각부):
인정어린이원법을 따르는 아동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병행하는 시설</td></tr>
</table>

* ▨ : 의무교육

자료: 김희정(2023). 일본 어린이가정청 설치와 어린이기본법에 관한 탐색

일본의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법, 설립 기준 등은 〈표 Ⅲ-4-2〉와 같다.

자료: 김명중(2018).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7, 141-151. ; H. Li et al. (ed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in Asia Pacific,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ssues, concerns, and prospects 35, pp

1) 6세 미만의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사의 집이나 영유아의 집에서 보육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 Ⅲ-4-2〉 일본의 영유아교육 · 보육기관 유형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관할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업무담당			광역자치단체
근거법령	학교교육법	아동복지법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 종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
목적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지원(학교교육법 제22조)	매일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보육(아동복지법 제39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 보호자에 대한 육아 지원 종합적으로 실시 (위 법률 제 2조)
설립자	정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등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의 허가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사의 허가가 필요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설립 시에는 지사의 허가가 필요 최근에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기업, 학교법인 등의 설립도 허용됨	유보연계형(인가 어린이집과 인가 유치원이 연계해서 운영) 유치원형(인가 유치원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장시간 보육을 하거나 0세 이상 아동을 보육하는 등 보육소 기능 겸비) 보육소형(인가 보육소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이외의 아동도 수용,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보호자도 이용 가능) 지방재량형(상기 이외)
설립 및 운영기준	유치원 설립 기준	아동복지시설 최저 기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인가 기준
대상연령	3세-초등 입학 전 유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및 아동(아동은 18세 미만까지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0세-초등 입학 전 유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보육소 이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보호자의 자녀가 대상 모든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상담 등 실시
교육 및 보육내용 기준	유치원 교육 요령	보육소 보육 지침	보육 - 보육소 보육 지침 근거 교육 - 유치원 교육 요령 근거
1일 보육 및 교육시간	4시간(원칙)	8시간(원칙)	4시간 이용 가능 8시간, 11시간 이용도 가능
교사명칭	유치원 교사	보육사	보육교사
교사자격	유치원 교사 보통면허장(2종, 1종, 전수면허장), 특별면허장		담당 연령에 상관없이 유치원 교사 면허장과 보육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2012년부터) (둘 중 하나만 있더라도 2020년 3월까지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특례제도 한시 운영으로 근무 가능
교사자격 근거	문무과학성의 「교원면허제도」		
교사-아동비율 (Ｎｉｅｒ, 2011)	35(최대):1	0세 3:1 1-2세 6:1 3세 20:1 4-5세 30:1	0세 3:1 1-2세 6:1 (3-5세는 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 3세 20:1 4세 이상 30:1

73-86.; 신동주, 염지숙, 장혜진(2017). 각 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방안(일본, 싱가포르, 대만, 영국, 뉴질랜드). 국무조정실. https://www.nier.go.jp/English/educationjapan/pdf/201109ECEC.pdf

출처: 박은혜, 전홍주, 차기주, 박신영(201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해외사례 연구, pp 109-111.

일본의 유보통합기관인 인정어린이집은 크게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법적 성격, 설립 주체, 직원의 자격, 운영 일수 및 시간, 급식 제공 여부에 대한 기준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관할, 법, 설립 기준 등은 〈표 Ⅲ-4-2〉와 같다. 인정어린이원법 개정에 따라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인정어린이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의 법적조치를 가진 단일시설로 인정되며 개정인정어린이원법에 기초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과 재정조치를 일체화하였다(김희정, 2023).

〈표 Ⅲ-4-2〉 일본 인정어린이원의 유형별 비교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법적 성격	학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보육소 기능)	아동복지시설 (보육소+유치원 기능)	유치원+보육소 기능
설립 주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제한없음	
직원 자격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보육사 자격)	- 만 3세 이상: 유치원 교사, 보육사 자격 둘 다 있어야 함 - 만 3세 이하: 보육사 자격 필요		
급식 제공	- 2, 3호 아동**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급식을 직접 조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리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개 원 일· 시간	11시간 개원, 토요일 개원이 원칙 (탄력적 운영 가능)	지역 실정에 따라 설정	11시간 개원, 토요일 개원이 원칙 (탄력적 운영 가능)	지역 실정에 따라 설정

* 유치원과 보육소에 대한 인가 없이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이 인정어린이집 기능을 하는 형태
** 1호 인정(교육 표준시간 인정): 만 3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유치원 교육만을 받는 아동
2호 인정(보육 인정): 만 3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3호 인정(보육 인정): 만 3세 미만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자료: 김명중(2018).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7, 141-151.; H. Li et al. (eds.)(2016), pp 73-86.
출처: 박은혜, 전홍주, 차기주, 박신영(201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해외사례 연구, p 112 표 재인용.

일본은 보육소 개설을 영유아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소 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지역형 보육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기타 지역형 보육사업은 소규모 보육사업, 가정적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 재택방문형 보육사업이 있고 각 유형별 사업 주체, 보육 장소, 인가 정원은 〈표 Ⅲ-4-4〉과 같다.

〈표 Ⅲ-4-4〉 일본의 기타 지역형 보육사업 유형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	재택방문형 보육 사업
사업 주체	기초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기초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사업주 등	기초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보육 장소	보육자의 자택 및 기타 장소 및 시설	보육자의 자택 및 기타 장소 및 시설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택
인가 정원	6-19명	1-5명	사업소에 다니는 종업원 자녀+지역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자료: 김명중(2018).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7, 141-151.; H. Li et al. (eds.)(2016),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in Asia Pacific,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ssues, concerns, and prospects 35, pp 73-86.

일본의 영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을 살펴보면〈표 Ⅲ-4-5〉와 같다. 만 2세까지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보다는 기관 외 보육에 참여하는 영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만 2세 영아의 53%가 기관 외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기관 보육은 9%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은 어린이집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형 보육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3세부터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이 급증하여 만 3세 89%, 만 4세 98%에 이르며 만 5세에는 97%로 다소 하락한 비율을 보인다.

〈표 Ⅲ-4-5〉 일본 ECEC 취원율 (2021)

연령	2세 미만	2세	3세	4세	5세	6세
일본	ISCED 0단계 0% 기관 외 ECEC 26%	ISCED 0단계 9% 기관 외 ECEC 53%	89%	98%	97%	0%
OECD 평균	17%	41%	73%	88%	84% (기관외 11%)	26%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2019년 10월부터 내각부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 따라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어린이집의 이용료를 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김명중, 2018).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추가로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1,300엔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인가 외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전국 인가 보육소의 월 보육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만 3~5세 유아는 월 37,000엔, 만 0~2세 영아는 월 42,000엔을 상한으로 하고 실제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통원차량비, 급식비, 행사비 등은 보호자 부담을 유지하였다. 교육·보육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부과하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Ⅲ-4-6〉과 같다.

〈표 Ⅲ-4-6〉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전/후 비교

무상화 전				무상화 후		
시설유형	인정구분	영유아 구분	보육료(월액)	인정구분	보육료(월액)	방과후보육 이용료(월액)
자녀양육지원 신제도 대상원	교육·보육교부* 1호	3-5세 (신제도유치원, 인정어린이원)	소득에 따라 징수 (최대 25,700엔)	교육·보육교부 1호	소득 관계없이 0엔	소득 관계없이 11,300엔 상한에 한해 교부 (맞벌이가정일 경우에만)
	2호	맞벌이가정 등의 3-5세 (보육소 등, 인정어린이원)	소득에 따라 징수 (평균 37,000원)	2호	소득 관계없이 0엔	방과후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나 충분한 실시수준이 아닐 경우 방과후보육 잔액의 범위에서 인가 외보육시설 등 이용 가능
	3호	맞벌이가정 등의 0-2세 (보육소등, 인정어린이원)	소득에 따라징수 (평균 42,000원)	3호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는 0원	
사학		3-5세 (신제도미이행유치	소득에 따라 징수	시설 1호	소득 관계없이 25,700엔 상한에 한해 교부(이	소득 관계없이 11,300엔 상한에 한

조성비	원)	(최대 25,700 엔)	등이용교부(신설)	상일 때 보호자 부담)	해 교부(맞벌이가정 일 경우에만)
인가외보육시설등	맞벌이가정 등의 3-5세 (보육소 등, 인정어린이원)	소득에 따라 징수	2호	소득 관계없이 37,000 엔 상한에 한해 교부(이상일 때 보호자 부담)	
	맞벌이가정 등의 0-2세 (보육소등, 인정어린이원)	소득에 따라 징수	3호	소득 관계없이 42,000 엔 상한에 한해 교부(이상일 때 보호자 부담)	

* 1호 인정(교육 표준시간 인정): 만 3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교육을 받는 아동
2호 인정(보육 인정): 만 3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보호자의 취업과 질병 때문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3호 인정(보육 인정): 만 3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취업과질병 때문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자료: 제6회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 관한 협의의 장 간사회(2021년 3월 2일).
출처: 김희정(2023). 일본 어린이가정청 설치와 어린이기본법에 관한 탐색, p. 274 표 재인용

일본 영유아교육을 사립기관에서 담당하는 비율을 살펴보면(표 Ⅲ-4-7), 2020년 OECD에 보고된 기준으로 3~5세 유아 중 78%를 사립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33%를 크게 웃도는 비율로,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공사립 구분 없이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에의 공적 자원 투입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 일본의 GDP 대비 3-5세 대상 유아교육에의 공적 자원 투입 비율이나 유아 당 연간 지출 산출액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표 Ⅲ-4-7〉 일본 공립 및 사립기관의 영유아교육 재정 (2020)

연령	사립기관 재원영유아 비율			3-5세 유아당 연간 지출	
	ISCED 01(영아)	ISCED 02(유아)	ISCED 0(전체)	GDP대비 %	유아당(USD)
일본	a	78	78	m	a
OECD 평균	51	33	32	0.6	10,025

'a' 는 해당 카테고리가 적용되지 않아 데이터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함
'm'은 누락되었거나 응답자 수가 적어 지표를 계산할 수 없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함
자료: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일본은 2023년 3월 31일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 확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운영비의 기준가격을 개선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1세 영아는 1:6 → 1:5, 4~5세 유아는 1:30 → 1:25) 및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취업요건과 관계없이 보육원과 인정어린이원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할 계획이다(이형근, 2023).

나. 일본의 유보통합

일본은 2000년부터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2001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 연대를 시작하였다. 2002년 유·보 연대를 위하여 자격 상호 취득, 일체 운영, 설치기준 완화, 설립 주체의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였고, 2006년부터 인정어린이원을 시작하면서 관

련 정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박은혜 외, 2019).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유아교육·보육통합시설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존 유아교육·보육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추가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발표한 이후 인정어린이원의 신규 설립이나 기존 시설에서의 전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희정, 2023). 구체적인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는 〈표 Ⅲ-4-8〉과 같다.

〈표 Ⅲ-4-8〉 일본의 유보통합 관련 주요정책의 변화

연도	내용	세부내용
2000	후생성「보육소 설치인가에 대해서」	설치 주체의 제한 철폐, 개인이나 기업 참여 허용
	문부성 「보육소 설치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유치원 설치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법인으로 보육소 설치 가능
	중앙교육심의회 「소자와와 교육에 대해(보고)」	유아교육전체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전개
2001	문부성「유아교육 진흥프로그램」	종일제 보육, 자녀양육지원, 유보연대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인가 기준의 재검토, 정보공개, 제 3자 평가, 인가외의 신고제, 보육사의 국가자격
	기본방침	대기아동 제로 작전
2002	총합규제개혁회의「제 2차 답신」	유보의 연대추진, 유보자격의 상호취득, 유보의 일체적 운영, 상호설치 기준의 완화, 유치원 설립 주체의 규제 완화
	지방분권개혁회의 「사무, 사업의 방향에 관한 의견」	유보의 제도적 일원화, 면허자격의 일원화, 보육소 조리실의 설치기준 검토, 보육소 운영비의 일반 재원화
2003	총합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보육소의 조리실 설치 의무기준 폐지, 유치원의 주식회사 등에 의한 설립 금지, 입학연령(3세부터) 제한의 완화
	제 1회 구조개혁특구 인정개시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적 운영 등을 촉진하는 특구, 제1-20회로 32지구(2009년 7월 기준)
	삼위일체의 개혁	유치원과 보육소 두 기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시설을 창설, 2006년까지 검토
	총합규제개혁회의(제 3차 답신)	새로운 총합시설을 2004년도 중에 검토, 2005년에 시행 실시와 법 정비,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
2004	지방 6단체 「국고보조부담금 등에 관한 개혁안」	재원의 일반 재원화, 「보육이 필요함」 항목의 재검토, 보육소 조리실 기준 철폐
	보육사 시험에 있어 과목면제 실시	유치원 면허 보육사의 과목 면제 실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유치원, 보육소 총합시설 검토회의」	「인정 어린이원」을 향한 정책조정
2005	문부과학성「유치원 설치기준」 개정	시설면적기준의 완화, 유치원 교사의 보육소 아동의 보육 기능
	유치원 교원자격 인정시험 실시	보육사의 면허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2006	「교육기본법」 개정	유아기 교육의 진흥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총합적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	「인정 어린이원」 시행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유보연대 추진실」 설치	「인정 어린이원」의 사무 대응의 공동화
2008	후생성「보육소 보육지침」 개정	0-2세 영아교육 명확화, 초등학교와 연대
	내각부 지방분권개혁추진 위원회 「제 1차 권고」	「인정 어린이원」의 문제점 지적 보육제도 서비스의 지방 재량권 확대
	자민당 문교제도 조사회 「국가전략으로서의 유아교육 무상화」	유아교육 무상화
2009	「인정 어린이원 제도의 방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인정 어린이원의 보급 확대, 운영 개선에 의한 중복 행정 개선
	민주당「보고서 2009」	아동 수당, 「어린이 가정성(가칭)」의 설치 검토
2003	총합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보육소의 조리실 설치 의무기준 폐지, 유치원의 주식회사 등에 의한 설립 금지, 입학연령(3세부터) 제한의 완화
	제 1회 구조개혁특구 인정개시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적 운영 등을 촉진하는 특구, 제

		1-20회로 32지구(2009년 7월 기준)
	삼위일체의 개혁	유치원과 보육소 두 기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시설을 창설, 2006년까지 검토
	총합규제개혁회의(제 3차 답신)	새로운 총합시설을 2004년도 중에 검토, 2005년에 시행 실시와 법 정비,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
2004	지방 6단체 「국고보조부담금 등에 관한 개혁안」	재원의 일반 재원화, 「보육이 필요함」 항목의 재검토, 보육소 조리실 기준 철폐
	보육사 시험에 있어 과목면제 실시	유치원 면허 보육사의 과목 면제 실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유치원, 보육소 총합시설 검토회의」	「인정 어린이원」을 향한 정책조정
2005	문부과학성「유치원 설치기준」개정	시설면적기준의 완화, 유치원 교사의 보육소 아동의 보육 기능
	유치원 교원자격 인정시험 실시	보육사의 면허 공유를 촉진
2006	「교육기본법」 개정	유아기 교육의 진흥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총합적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	「인정 어린이원」 시행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유보연대 추진실」 설치	「인정 어린이원」의 사무 대응의 공동화
2008	후생성「보육소 보육지침」개정	0-2세 영아교육 명확화, 초등학교와 연대
	내각부 지방분권개혁추진 위원회 「제 1차 권고」	「인정 어린이원」의 문제점 지적 보육제도 서비스의 지방 재량권 확대
	자민당 문교제도 조사회 「국가전략으로서의 유아교육 무상화」	유아교육 무상화
2009	「인정 어린이원 제도의 방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인정 어린이원의 보급 확대, 운영 개선에 의한 중복 행정 개선
	민주당「보고서 2009」	아동 수당, 「어린이 가정성(가칭)」의 설치 검토
2010	내각부 「어린이, 육아 신시스템 검토회의」 설치	유보 일체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일원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토회
	어린이, 자녀양육 신시스템 검토회의 「어린이, 자녀 양육 신시스템 기본제도안 요강」	교부금, 급부금의 일체화, 어린이원(가칭), 어린이 지침(가칭)을 위한 일체화, 유보 자격의 공통화, 어린이 가정성(가칭)의 설치가 명시됨. 2011년 국회에 법안제출, 2013년도에 실시 예정
2012	아동육아 신시스템, 종합어린이원 구상 발표(3월)	아동육아 신시스템 관련 법안 논의 및 발의 아동·육아관련 3법 발의
	종합어린이원 구상취하 및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전환 발표	대기아동해소 문제 해결과 유보일원화 확대를 위해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제도 발의
2013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제도 논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집 인가기준, 개정 인정어린이원법, 가칭 책정 등에 대한 논의
2014	'아동육아지원신제도' 제정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집 관련 총괄 제도 제정
2015	'아동육아지원신제도' 시행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집 제도 시행
2019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무상화 정책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어린이집의 이용료를 정부가 지급
2023	어린이가정청 신설	어린이 관련 정책을 부처보다 높은 입장에서 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처리

자료: 박은혜, 우명숙, 이진화(2016). 유아교육분야 행정의 전달체제 국제 비교 연구. p105-107; 김명중(2018).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7, 141-151; 일본 면담을 토대로 표 구성.
출처: 박은혜, 전홍주, 차기주, 박신영(201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해외사례 연구, pp 232-237 표 일부 재인용 및 보완

2023년 여러 부처에서 처리하던 어린이 관련 정책을 부처보다 높은 입장에서 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가정청을 내각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어린이가정청은 장관관방, 어린이성장국, 어린이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당업무는 〈표 Ⅲ-4-9〉과 같다. 후생노동성의 보육 관련 업무와 내각부의 인정어린이원 관련 부분은 어린이가정청 소관으로 이관된 반면, 문부과학성의 유치원 담당 부분은 이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는 않았

다.

〈표 Ⅲ-4-9〉 일본 어린이가정청의 소장사무

구분	소장사무
분담관리사무	•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건강과 성장을 위한 환경확보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양육가정의 육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기획 및 입안 추진 • 자녀양육지원 혜택과 기타 어린이 및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 • 어린이 보육 및 양호 • 양육가정 육아지원체제 정비 • 지역 어린이의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 확보 • 어린이, 양육가정 및 임산부 기타 모성 복지증진 • 어린이의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환경정비에 관한 기본정책 기획 및 입안 추진 • 어린이 보건 향상 • 어린이 학대 방지 • 따돌림 방지 등에 관한 상담체제 등 지역 체제 정비 • 어린이 권리이익의 옹호 • 어린이 대상의 책정 및 추진
내각 보조사무	• 어린이가 자립적 개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사회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관란 사무 등의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 • 결혼, 출산 또는 육아를 희망하는 사회환경 정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종합 조정 • 어린이,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

출처: 김희정(2023). 일본 어린이가정청 설치와 어린이기본법에 관한 탐색. 광신논단, 33, 267-287. pp. 279-277 표 일부 재인용.

다. 교육과정

2017년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아기가 끝날 때까지 길러야 할 자질과 능력' 지침을 도입하였다(박건령, 김언경, 2024). 이 지침은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길러야 한 3가지 핵심 자질과 10가지 유아상을 제시하고 있다. 3가지 핵심 자질은 1) 생활하는 힘, 2) 발견-사고-표현하는 힘, 3) 참여하는 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기관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길러야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핵심 자질을 충실하게 함양한다면 '유아기가 끝날 무렵에는 성장했으면 하는 10가지 유아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유아상은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과 유아기 동안의 발달이 초등학교 이후의 학습과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일본의 영유아교사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교육과정 이수와 무시험 검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교사의 학위 종류에 따라 유치원 교사 면허장을 차등적으로 수여한다는 것이다.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는 2종 면허를, 학사학위 취득자는 1종 면허를, 석사학위취득자는 전수면허를 받을 수 있다(서현선, 전홍주, 2019). 면허의 상향 갱신은 교육경력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2종 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받으려면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하고 45단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1종 면허 소지자가 전수면허장을 받으려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5단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수업은 대학에서 담당한다.

유치원 교사 면허증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10년마다 유치원 교사들은 면허장 갱신을 위한 면허 갱신 강습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보육사 양성기관에서 최소 2년의 교육을 마치거나 보육사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보육사 중 약 80%는 유치원 교사면허 1종 또는 2종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다(장민영 외, 2017).

마. 가정지원제도

일본은 아동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초기 아동수당은 빈곤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대책이었으나 현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1972년에 처음 시행되어 그 대상(아동 순위, 연령, 부모소득수준 등)과 수당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초기에는 셋째 자녀 이후 의무교육 취학 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9년 중학생까지 확대 적용하였다(장경희, 유해미, 2019).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표 Ⅲ-4-10〉와 같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 부모 중 소득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모 2인의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는다. 단, 소득제한 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000엔의 특례가 적용된다(장경희, 유해미, 2019).

〈표 Ⅲ-4-10〉 일본의 아동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부양친족 등의 수	소득액	수입액
0인	6,220,000엔	8,333,000엔
1인	6,600,000엔	8,756,000엔
2인	6,980,000엔	9,178,000엔
3인	7,360,000엔	9,600,000엔
4인	7,740,000엔	10,021,000엔
5인	8,120,000엔	10,421,000엔

주: 2012년 6월 1일부터 적용
출처: 장경희, 유해미(2019). p. 66 표 재인용

〈표 Ⅲ-4-11〉 일본의 아동수당

	3세 미만 자녀	3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		중학생 자녀
		첫째,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후	
아동수당	월 15,000엔	월 10,000엔	월 15,000엔	월 10,000엔

출처: 장경희, 유해미(2019).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은 국가, 지자체, 사업주가 분담하고 있다(표 Ⅲ-4-12).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주의 분담 비율이 큰데, 소득 기준의 적용과 재원 분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혼선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장경희, 유해미, 2019).

〈표 Ⅲ-4-12〉 일본의 아동수당 급여액 분담 비율 (2019)

구분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사업주 각출
피용자(샐러리맨)	16/45	4/45	4/45	21/45
비피용자(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등)	4/6	1/6	1/6	해당없음
공무원	각 소속기관이 전액 부담			

출처: 장경희, 유해미(2019). p. 68 표를 수정하여 재인용

2023년 3월 31일 일본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지급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임신·출산기부터 2세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이형근, 2023).

출산 전 휴가의 경우 '6주 이내에 출산이 예정된 직원이 휴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소는 그 신청을 허가하고 해당 직원을 취업시키지 못한다(장경희, 유해미, 2019, p.70)'. 출산 후 휴가의 경우 본인의 희망과 의사의 허용에 따라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산후 8주일을 경과하지 않은 직원을 취업시키지 못한다(장경희, 유해미, 2019, p.70)'.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사업소가 지급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고, 사업소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수당은 출산일 이전 42일째부터 출산일 다음 날 이후 56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직장을 쉰 일수만큼 지급된다. 출산수당액은 지급 시작일 이전 12개월 간의 표준보수월액의 평균 금액의 2/3로 산출되고, 휴업 기간에 사업소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더라도 급여가 출산수당보다 적은 경우 출산수당과 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받는다. 또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임신 4개월 이상이 출산했을 때 출산 육아 일시금이 지급된다(장경희, 유해미, 2019).

일본의 육아휴직제도는 1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8주의 산후휴업 이후에 육아휴업을 취득하게 되며, 남성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육아휴업을 취득한다. 사업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중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면 2002년 기준 임금의 40%이다(장경희, 유해미, 2019).

일본은 2009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반면,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단축제 적용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시간제, 출퇴근 시간 조정, 사업소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장경희, 유해미, 2019).

최근 일본 정부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및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가정센터를 2022년 도입하고 육아 세대 방문사업 확충, 지역의 장애아 지원체제 강화, 의료 등 전문적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각장애아 등을 위한 지역연계체제 강화, 학부모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학부모 가정에 대한 고등직업훈련 촉진제도 등을 확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형근, 2023).

5. 시사점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최소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유아교육에 대해서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 유아중심의 초등교육으로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유아교육 분야 어젠다의 국가별 달성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측면에서 취학 전 1년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는 유아 수,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유아 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유아 발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취학 전 1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차 많은 OECD 국가들이 초등학교 취학 전 최소 1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이 학년에 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두고 있으며 유아교육에서 연장하여 이 학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유아교육 역량강화 국가시책사업으로 '유·보, 유·초 이음교육'을 시행하고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고 2023년 6월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도 이음학기 또는 이음학년의 지정 및 시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는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가정이나 민간 분야에 의존해 온 0~2세 대상 교육과 돌봄에 대하여 양질의 영아교육을 제공함으로서 생애 초기 좋은 출발선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2011년 영아교육을 ISCED 01단계로 포함하고, 각국에서 무상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영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OECD 국가 중 ISCED 01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 영아교육 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부모의 가정보육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가정 및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OECD, 2024).

핀란드의 경우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었으며, 2013년부터는 이를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취학 전의 모든 유아가 이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초등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또는 영유아교육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만 6세가 영유아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비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동일 과정을 시행 초기에는 초등학교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전환하여 의무교육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여러 OECD 국가와 같이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취학 전 준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자 하는 정책을 여러 차례 추진하고자 한 전력이 있어서인지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만 3세부터 시작하는 유아교육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만 3세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사이클화 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이 연계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유아에게 적합하면서 학교급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 하겠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전/후로 이루어지는 돌봄과 점심식사, 쉬는

시간, 방과후 활동을 교육 시스템에 포함하여 진로교육과 문화 예술교육의 하나로 방과후 과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측면이 크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레져센터와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문화지도사의 자격을 국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보통합 과정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의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유보통합을 시행하였으나, 관리부처 및 기관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제3의 유보통합기관을 제도화하여 자발적 전환을 도모하였으나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이 산재하고 이를 지원하는 부처 및 재정 출처도 다양한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어린이가정청 설치 등 관리부처 및 재정 출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문무과학성 담당으로 남아있어 통합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부처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후 구체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확보 측면에서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고, 서로 다른 조건으로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을 점진적으로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교사양성과정 및 현직교사 전환에 있어서 몸살이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영유아 통합기관이라는 제3의 기관을 제시하고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본 사례와는 다르게 행정부서 단일화를 이루고 교사자격도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양성체제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행정부처 통합, 기관 통합, 교사 통합이 함께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가정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와 가정양육을 위한 시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여겨 볼 점은 다양한 양육지원 중 기본이라 볼 수 있는 핀란드 아동수당, 프랑스 기본수당, 일본 아동수당이 모두 부모의 연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많아지고, 지원받는 자녀의 연령이 높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우리나라 부모수당(2024년 수준 만 0세 100만 원 지원)과 비교하였을 때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 및 휴직기간의 인건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핀란드의 2021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46명, 프랑스는 1.80명, 일본은 1.30 명으로 우리나라 0.81명에 비해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여준다(OECD, 2024). 즉,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잘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분위기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적 동향 등을 바탕으로 영유아교육 발전의 기반이 될 유보통합 방안이 구체적이면서 영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국내 영유아교육의 현황과 쟁점

1. 교육제도

가. 현황

1)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다. 이 두 기관은 각기 다른 법에 기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 있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법(유아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표 Ⅳ-1-1〉 유치원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1.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2024년 10월 22일 인출

유아를 위한 학교로서 유치원은 다른 학교 체제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가지고, 유아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로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마련하였고, 국가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다음 〈표 Ⅳ-1-2〉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표 Ⅳ-1-2〉 어린이집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2024년 11월 7일 인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은 출생부터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ISCED단계에 의하면 유치원은 ISCED 02수준, 어린이집은 ISCED 01, ISCED 02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대상 유아의 연령이 중복되는 문제로 인해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

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20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된 후 단계별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 Ⅳ-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3년 4월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 5,133개, 사립유치원 3,308개로 2019년에 비하여 국공립유치원은 274개 증가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67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24.02.20.).

〈표 Ⅳ-1-3〉 연도별 유형별 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최근 5년)

단위: 개소

	계	국립	공립	사립
2023	8,441	3	5,130	3,308
2022	8,562	3	5,113	3,446
2021	8,660	3	5,058	3,599
2020	8,705	3	4,973	3,729
2019	8,837	3	4,856	3,978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 설립별 개황.

어린이집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총 28,954개로 이는 2019년 37,371개에 비해 8,417개가 감소한 수치이다(표 Ⅳ-1-4). 특히 0~2세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2019년 4,324개에서 2023년 6,187개로 1,863개 증가한 반면, 2019년에 17,117개였던 가정어린이집은 2023년 10,692개로 6,425개 감소하여 약 38% 감소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표 Ⅳ-1-4〉 연도별 유형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최근 5년)

단위: 개소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23	28,954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2022	30,923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2021	33,246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2020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2019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2)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2023년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대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을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Ⅳ-1-5), 0~2세 주민등록 인구의 83.65%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고, 3~5세 주민등록 인구의 98.07%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다. 2023년 현재 3~5세 주민등록 인구의 56.56%는 유치원에, 41.51%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1-5〉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 수 및 취원율 (2023)

단위: 명, %

연령	주민등록인구	유치원 재원아수	어린이집 재원아수	총 취원율
0세(22년생)	225,958	0	123,453	54.64
1세(21년생)	253,595	0	237,848	93.79
2세(20년생)	266,619	48	263,162	98.72
0~2세 총	746,172	48	624,162	83.65
3세(19년생)	279,134	131,643	147,933	100.16
4세(18년생)	309,282	180,701	118,192	96.32
5세(17년생)	333,705	209,202	116,687	97.66
3~5세 총	922,121	521,546	382,812	98.07
6세 이상	364,740	198	4,538	1.30

자료: 1) KOSIS(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1세별)(2023년 기준).
2)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연보. 2023 연령별 학생수(4월 1일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
3) 보건복지부(2023).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최근 5년간 0~5세 영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Ⅳ-1-6〉과 같다. 0~2세의 경우 2019년 어린이집 취원율 80.54%를 보였다가 2020년 77.77%로 소폭 감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80.76%, 2022년 82.73%, 2023년 83.65%를 기록하였다. 3~5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92.28%의 취원율을 보였던 것이 2022년에 98.55%로 가장 높았다가 2023년 98.07%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Ⅳ-1-6〉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추이 (최근 5년)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0-2세	주민등록인구	989,002	901,344	834,699	786,567	746,172
	어린이집	796,499	700,890	674,077	651,700	624,162
	유치원	55	52	62	51	48
	취원율	80.54	77.77	80.76	82.73	83.65
3-5세	주민등록인구	1,296,603	1,220,046	1,108,509	1,005,221	922,121
	어린이집	562,976	538,448	505,776	439,070	382,812
	유치원	633,470	612,204	582,213	552,568	521,546
	취원율	92.28	94.31	98.15	98.55	98.07

자료: 1) KOSIS(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2)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연보. 2023 연령별 학생수(10월 1일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
3) 보건복지부(2023).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유형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수를 살펴보면 〈표 Ⅳ-1-7〉, 〈표 Ⅳ-1-8〉과 같다.

〈표 Ⅳ-1-7〉 연도별 유형별 유치원 재원 유아 수 (최근 5년)

단위: 명(%)

	유치원			
	계	국립	공립	사립
2023	521,794(100)	232(0.04)	152,429(29.21)	369,133(70.74)
2022	552,812(100)	255(0.05)	167,230(30.25)	385,327(69.70)
2021	582,572(100)	264(0.04)	177,097(30.40)	405,211(69.56)

2020	612,538(100)	273(0.04)	178,628(29.17)	433,637(70.79)
2019	633,913(100)	275(0.04)	177,055(27.93)	456,583(72.03)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 설립별 연령별 학생수(2023년 4월 1일 기준).

2023년 현재 전체 유치원 재원 유아 중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비율은 약 29.25%이고,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비율은 70.74%이다. 최근 5년간 유치원 재원 유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국립유치원 재원 유아 비율은 약 0.04%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공립유치원 재원 유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30.40%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소폭씩 감소하여 2023년 29.21%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비율이 약 17.0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2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재원 비율은 2019년 48.6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3년 41.53%가 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1-8〉 연도별 유형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수 (최근 5년)

단위: 명(%)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23	1,011,813 (100)	286,487 (28.31)	56,812 (5.61)	24,010 (2.37)	420,219 (41.53)	159,864 (15.80)	2,851 (0.28)	61,570 (6.08)
2022	1,095,450 (100)	276,670 (25.26)	64,503 (5.89)	27,743 (2.53)	477,628 (43.60)	184,053 (16.80)	3,203 (0.29)	61,650 (5.63)
2021	1,184,716 (100)	268,967 (22.70)	72,085 (6.08)	30,998 (2.62)	525,428 (44.35)	208,842 (17.63)	3,465 (0.29)	64,931 (5.48)
2020	1,244,396 (100)	253,251 (20.35)	78,322 (6.29)	34,066 (2.74)	578,196 (46.46)	230,444 (18.52)	3,716 (0.30)	66,401 (5.34)
2019	1,365,085 (100)	232,123 (17.00)	86,775 (6.36)	38,538 (2.82)	664,106 (48.65)	273,399 (20.03)	4,121 (0.30)	66,023 (4.84)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한편, OECD 국가의 경우에도 영유아 취원율이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OECD 국가의 3~5세 평균 취원율 평균은 2013년 79%에서 2024년 현재 83%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0~2세 영아의 경우 평균 36%만이 기관(ISCED 01수준)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0~2세가 기관에 다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data, 2024).

3) 유치원 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Ⅳ-1-9〉 누리과정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2012 (5세)	2013~2019	2020	2021	2022~2024
유치원	공립	유아학비	6	6	6	8	10
		방과후	5	5	5	5	5
		소계	11	11	11	13	15
	사립	유아학비	20	22	24	26	28
		방과후	7	7	7	7	7
		소계	27	29	31	33	35
어린이집	보육료		20	22	24	26	28
	방과후과정비		7	7	7	7	7
	소계		27	29	31	33	35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202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표 Ⅳ-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이 발표되고 2012년 만 5세, 2013년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으로 유아 한 사람당 2012년 20만 원에서 2022년 이후 28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Ⅳ-1-10〉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내용

단위: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 반('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 반('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 반('24.1.1~)	394,000	394,000	591,000
			3~5세 반('24.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 반('24.3.1~)	280,000	280,000	420,000

출처: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표 Ⅳ-1-10〉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가 기본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4년 현재 기본보육료 지원은 0세 반은 54만원, 만 1세 반은 47.5만원, 만 2세 반은 39.4만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0세를 기준으로 보면, 기관을 보낼 때 지원받는 보육료 단가가 540,000원인데 비해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원받는 수당은 200,000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었고, 이는 0-2세 영아의 취원율이 높은 현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급여가 2023년 신설되어 0세 기준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만 1세 기준으로는 2023년 월 35만 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기관의 기본보육 지원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관계부처협동, 2024). 이에 0~1세 영아의 기관 취원율에 변화가 있을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만 2세의 가정 보육에 대한 지원은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에 그치고 있어 만 2세 영아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 온 것과 더불어 만 2세 영아의 취원율이

98.72%에 달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만 2세 영아에게 적합한 기관환경 및 보육시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만 2세의 가정 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검토가 필요하다.

4)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현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어린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1일 4~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온종일 돌봄을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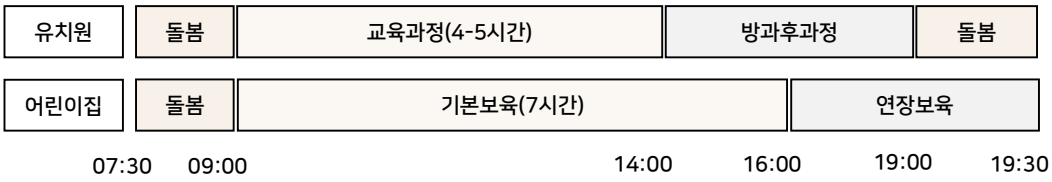

자료: 유아교육법 제13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도식화함

[그림 Ⅳ-1-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보육은 하루 7시간, 기본보육이 종료된 후에는 연장보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Ⅳ-1-11〉와 같다.

〈표 Ⅳ-1-11〉 유아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보육시간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밖의 교육활동과 돌봄을 말한다.	주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보육/교육시간	교육과정: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방과후과정: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 온종일 돌봄: 7:00~22:00	기본보육: 하루 7시간 연장보육: 기본보육 종료 후

한편, 2022년 유아교육실태 조사에서 유아들의 하루 평균 유치원 이용 시간은 7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 영유아들이 하루 평균 7시간 27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

[그림 Ⅳ-1-2]은 0-2세 영유아가 기관에서 보내는 주당 시간에 대한 OECD 자료이다. 아래 OECD 국제 통계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일 7시간을 웃도는 이용 시간을 고려한다면 OECD 평균인 주당 31.5시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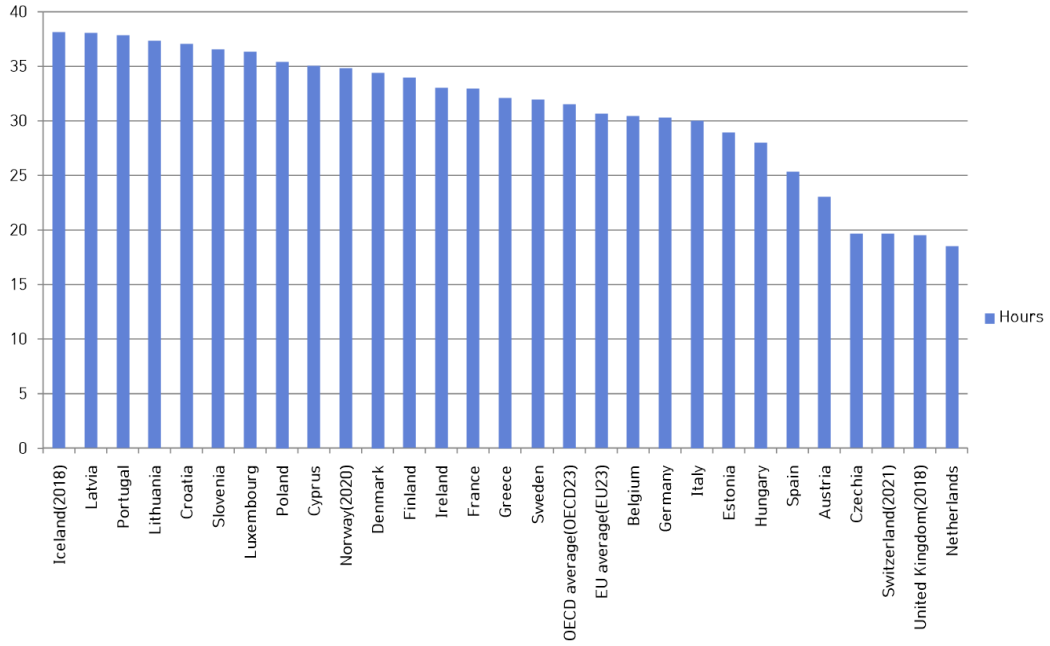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에 기반하여 그래프로 재구성

[그림 Ⅳ-1-2] OECD국가의 0-2세 영아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5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이다. 이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맞춤형 돌봄 4시간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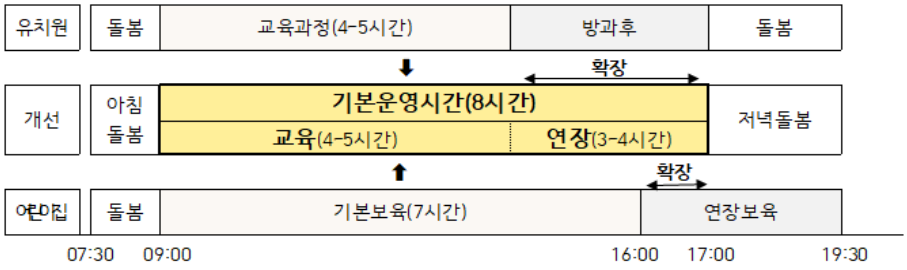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24.06).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그림 Ⅳ-1-3]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운영시간 개선(안)

5) 가정양육 및 돌봄 지원 관련 정책

정부는 2023년부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4년 1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대폭 확대를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4.1.5.). 5대 핵심분야는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로 이중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및 돌봄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지원 중 양육비용 지원(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일·가정 양립지원에서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Ⅳ-1-12〉와 같다.

〈표 Ⅳ-1-12〉 가정양육 및 돌봄 지원 관련 정부 정책

분야	과제	내용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지원	양육비용 지원(부모급여)	-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 - 2023년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과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2024년에는 정부지원가구를 확대하고 2자녀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 하는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신설
일·가정 양립지원	육아휴직	-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하는 것 - 육아휴직의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1년 →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초등 6학년(12세)까지 상향 ○(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1배→2배로 가산 ○(급여 확대)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자료: 관계부처협동(2024). 보도참고자료.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에서 내용 발췌하여 구성

이 외에도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이 있는데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자녀 중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표 Ⅳ-1-13〉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준

구분	내용
가정양육수당	취학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별 차등 지원으로 월 10~15.6만원 지급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별 차등 지원으로 월 10~20만원 지급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 (2024. 11. 25. 인출)

나. 쟁점

영유아교육 제도와 관련된 핵심 질문은 그동안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영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을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 강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유아 지원은 0~2세 영아의 83.65%와 3~5세 유아의 98.07%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보육을 국가 책임하에 대부분이 영유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반면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 영유아

교육 제도와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에서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의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와 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충분히 발달시키도록 하는 발달권, 즉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취원율은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기관이 부모의 양육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부모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영아 취원율이 매우 높고, 영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또한, 놀이가 아닌 특별활동, 특성화교육, 특기교육 등을 중심으로 일과가 구성되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 기관도 많은 실정이다. 미래의 영유아교육이 영유아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관에서의 장시간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권리를 보장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중심의 지원 정책이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까지도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이용 일수를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도 학부모 수요에 따라 교육 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관 이용 시간에 있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영유아의 권리를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학부모가 우선 고려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아기부터 교육제도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 연령부터 모든 영아가 기관에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영유아가 바람직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는 기관에서의 최적의 교육시간과 돌봄시간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가 자녀 양육을 가정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중심의 지원 정책은 부모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쟁점을 가진다.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액과 가정보육 시 지원받는 양육비 지원액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를 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경우,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면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지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금이나, 다른 방과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이는 부모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른 나라 부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낮고 불안감은 높으며 양육효능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영희 외, 2018). 이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대신하거나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과도하게 가정 밖에서의 양육이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관에서의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의 교육환경이며 이는 적절한 상호작용, 애착, 배움의 기쁨과 가족의 가치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Sammons, et al., 2015, Sylva, 2014, 이영희 외, 2018 p. 480 재인용).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 지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영유아시기에 받아야 하는 기본 교육에 대한 국가의 보장과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 균형의 기준이 영유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2. 교육과정

가. 현황

1)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제에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도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왔다. 3~5세의 경우 공통된 교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나 각각의 법적 근거가 달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표 Ⅳ-2-1〉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구분	내용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야한다.

출처: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4년 11월 1일 인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은 고시문 형태의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동시에 교육과정은 국가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임하여 배부하는 문서이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교사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자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에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지속적 개정을 거쳐 2007년 7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그 후 2011년 5세 누리과정,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되었고 현재는 2019 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2010년 제1차가 고시된 후 누리과정의 개정에 맞춰 개정되다가 2020년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되었다.

〈표 Ⅳ-2-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제정 및 고시

국가교육과정	교육목적과 기본방침 및 구성방향	교육과정 영역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 1969. 2. 19. 문교부령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능한 한국 국민이 될 기초를 닦는다.	• 건강 • 사회

제207호		• 자연 • 언어 • 예능
제2차 유치원교육과정 1979. 3. 1. 문교부 고시 제424호	국민교육 헌장 이념 아래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 사회·정서 발달 영역 • 인지발달 영역 • 언어발달 영역 •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
제3차 유치원교육과정 1981. 12. 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 속에서 즐겁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 신체발달 영역 • 정서발달 영역 • 언어발달 영역 • 인지발달 영역 • 사회성발달 영역
제4차 유치원교육과정 1987. 6. 30. 문교부 고시 제87-9호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신체발달 영역 • 언어발달 영역 • 인지발달 영역 • 정서발달 영역 • 사회성발달 영역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 1992. 9. 30.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교육 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추구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건강생활 • 사회생활 • 표현생활 • 언어생활 • 탐구생활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1998. 6. 30. 교육부 고시 제1998-10호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추구하는 인간상-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건강생활 • 사회생활 • 표현생활 • 언어생활 • 탐구생활
제1차 표준보육과정 2007. 1. 3.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 2010. 9.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1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영유아가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기본생활 • 신체운동 • 사회관계 • 의사소통 • 자연탐구 • 예술경험
2007 개정유치원교육과정 2007. 12. 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53호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 추구하는 인간상-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건강생활 • 사회생활 • 표현생활 • 언어생활 • 탐구생활
5세 누리과정 2011. 9.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0호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제2차 표준보육과정 2012. 2.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8호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며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	• 기본생활 • 신체운동 • 사회관계 • 의사소통 • 자연탐구

	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 예술경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2012. 7. 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 2015. 2. 24. 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제3차 표준보육과정 2013. 1.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 2. 24. 개정 고시-운영시간이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변경됨	•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2019 개정누리과정 2019. 7. 24.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2호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20. 4.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호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자료: 김영옥(2020).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변천과 개정 누리과정의 과제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5(2), 75-103.을 참고하여 재구성

2) 2019 개정 누리과정

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도입

2012년, 이용하는 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를 위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으며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 적용되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공통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생애 초기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고,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성과가 있었다(김은영 외, 2018). 또한,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윤진 외, 2016).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령별 누리과정은 과다한 연령별 교육 내용으로 현장에 실행되기에 부담이 되었고,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보다는 교사용지도서의 활동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은영, 2019).

교육부는 2018년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기반하여 2019년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주체성과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며 연령별로 세부 내용을 제시하던 기존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3~5세 동일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내용과 형식을 대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비록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과 목표는 핵심역량이 반영된 초등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현재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되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나)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김은영 외(2022)에 의하면 17개 시도교육청별 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편차가 있었지만, 개정 누리과정을 안착시키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등의 사업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멘토링'과 '시범기관 선정 및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 사업의 경우 점차 시행하는 교육청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Ⅳ-2-3). 이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시행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Ⅳ-2-3〉 개정 누리과정 지원사업별 시행 시도교육청 수 (2019-2022)

구분		수업 장학	누리과정운영 컨설팅	전문적 학습공동체	멘토링	연수	시범기관 선정 및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	지원자료개발 및 보급	물리적 환경개선지원	놀이매체 및 재료지원
실적	2019	16	17	14	13	17	14	12	15	14	13
실적	2020	11	17	16	11	16	8	10	16	16	10
실적	2021	11	17	16	11	16	10	6	15	17	12
계획	2022	12	17	16	9	16	7	7	14	17	12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한편, 어린이집 전달체계인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과 '연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22). 반면, 교사의 역량강화에 핵심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멘토링'등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으며 '시범기관 선정 및 운영',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은 202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4).

〈표 Ⅳ-2-4〉 개정 누리과정 지원사업별 시행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수 (2019-2022)

구분		수업 장학	누리과정운영 컨설팅	전문적 학습공동체	멘토링	연수	시범기관 선정 및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	지원자료개발 및 보급	물리적 환경개선지원	놀이매체 및 재료지원
실적	2019	13	14	1	3	8	12	3	3	4	0
실적	2020	4	12	6	2	16	0	5	4	0	0
실	2021	5	10	4	1	12	0	5	5	0	1

적											
계획	2022	8	13	4	2	12	0	6	6	0	0

출처: 김은영 외(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이를 통해 동일한 연령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사업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한계

김은영 외(2022)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미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태도가 증진되고,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놀이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자발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이 증진되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인해 교사의 자발적인 전문성 제고 노력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즉, 교육과정 문해력과 교육과정 실행력이 필요한바, 교사들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김은영 외, 2022).

셋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직문화의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교사와 유아, 교사와 교사 간 관계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혼란도 있었다.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관찰에 기반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나 교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다수 유아의 놀이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정아, 양현숙, 2022)이 있었으며, 교육과정이 간소화되기는 했으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주, 2020). 또한 부모의 경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인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된다는 놀이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는 어려움도 있었다(신수진, 박지희, 2021). 초등학교 연계와 관련해서 교사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느끼고 있었으며(조운주, 2020), 부모 또한 학습이 줄어들었다 인식하여 초등학교 적응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하였다(신수진, 박지희, 2021). 이상의 연구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 초기에 주로 이루어진 연구들로 그 시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교사교육이 부족했고, 이마저도 기관 유형 간에도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연구결과는 개정 누리과정의 초기 성과와 어려움을 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한계에 대한 보완 노력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에는 하루 일과, 물리적 환경, 교수 방법, 교사와의 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아 경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상급학교 진학 이상의 간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0~2세 보육과정 및 2015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음을 명시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면서도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등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형식을 통일하였고, 초등학교 교육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는 유아들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순조롭게 전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위하여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를 연계하여 초등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 등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21).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84번)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추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2부터 유-초연계 강화를 위한 이음교육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음교육이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유아가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연속성을 가진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음교육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아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와 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호, 2024).

2022년 시범사업 시행 첫해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참여하였으며, 유치원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초연계 사업은 유·초, 유·보, 유·보·초 3개의 유형이 있다. 문무경, 강규돈(2022)의 연구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음교육 시범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활동은 교육과정 연계수업과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공동행사, 교사 연수 및 협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음교육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사 간 협의 및 소통 시간 확보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협력 기관의 협조 미흡, 협력 기관과의 활동 시간 조정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유아교사와 초등교사 간 소통 시간과 채널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문무경, 강규돈, 2022), 서로의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사교육도 필요하다.

나. 쟁점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은 놀이중심의 기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계성, 실행력, 목표 명확화를 통해 한층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관련 현황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의 쟁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영유아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향성 제시와 내용의 반영에 대한 것이다. 미래의 영유아교육과정은 공존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민주시민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의 핵심이며, 교육을 통해 아주 어린 시기부터 중요하게 길러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히 측정 가능한 성과를 넘어, 학생들이 인간다운 품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가치와 역량을 함께 기르는 장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향후 영유아교육과정은 이러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과 연계되며, 영유아기에 적절한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영아-유아-초등교육 간 연계 강화에 대한 것이다. OECD의 Starting Strong V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교육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은 모든 어린이에게 중요한 단계이며, 이 시기에 연속성 있고, 발달에 적합하며 질 높은 경험이 제공된다면, 이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질 높은 영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원활한 전이는 아동의 장기적인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일관된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때, 영유아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초등학교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OECD, 2017).

또한, 유-초 연계 강화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영아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발달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차원을 넘어 학습자가 실제로 적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경우 영유아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어떠한 배움에 도달하게 되는지, 어떠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영유아교육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과 지표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인재상에 기반하여 정의된 시기별 주요 역량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도화시키는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 고도화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놀이중심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교사 간 교육과정 실행력의 편차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과 유-초 연계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의 교육과정은 영아-유아-초등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교육까지 연계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차원에서의 인재상에 기반하여 영아, 유아, 초등, 중등의 시기별 주요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교원

가. 현황

1) 영유아교사의 유형 및 자격기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원은 크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인 보육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뉘며, 자격 종별로는 원장, 원감, 정교사, 준교사로 구분된다(유아교육법 제22조).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조)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1·2·3급으로 구분된다. 그중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혹은 보육교사 3급 즉, 고등학교 또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가지고 승급 교육을 받은 자이다.

〈표 Ⅳ-3-1〉 영유아교사 유형 및 자격 관련 법령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교직원의 구분	-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둠. -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음	-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
교사자격기준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야 하나 보육교사2급 자격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다.

2) 재직 및 양성 현황

표 Ⅳ-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3년 현재 유치원 교사의 수는 총 55,637명이고 그중 국·공립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수는 23,975명이다.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공립유치원 재직 교사가 16,579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 23,937명에 달하게 되었다. 반면 사립유치원 재직 교사는 2019년 36,027명이었다가 2023년 31.662명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현재 어린이집 교사 수는 총 302,880명이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수의 약 5.4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교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31,444명이었다가 2023

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수는 2019년 50,436명에서 2023년 80,81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Ⅳ-3-2〉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수 (최근 5년)

단위: 명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23	55,637	38	23,937	31,662	302,880	80,817	16,029	6,499	108,353	68,696	888	21,518
2022	52,427	21	20,122	32,284	311,996	73,511	16,975	7,027	116,442	76,144	953	20,944
2021	52,503	21	19,337	33,154	321,116	67,191	17,673	7,351	123,655	83,758	1,009	20,479
2020	52,809	25	18,245	34,539	325,669	59,974	18,313	7,695	129,306	89,552	1,030	19,799
2019	52,631	25	16,579	36,027	331,444	50,436	18,835	8,062	139,344	95,763	1,043	17,961

주: 1) 유치원교사는 원장, 원감,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사의 합(특수교사는 제외)
2)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의 합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 설립별 직위별 교원수.
보건복지부(2023).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유치원 교사 직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Ⅳ-3-3〉과 같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사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사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건교사의 경우 공립단설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표 Ⅳ-3-3〉 유치원 교사 직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강사	사무직원
소계	75,669	3,545	2,267	56	3,369	36,137	1,235	116	363	9,602	18,979
국립	54	3	3	0	8	7	4	2	0	14	13
공립단설	18,044	578	582	16	1,451	3,884	580	104	113	3,657	7,079
공립병설	17,616	436	444	1	1,266	6,428	650	6	4	4,228	4,153
사립	399,55	2,528	1,238	39	644	25,818	1	4	246	1,703	7,734

자료: 유치원 알리미(2024.05). 유치원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2024년 5월 기준) 데이터 재가공(2024.11.09. 인출)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이 장시간 이루어지는 만큼 야간연장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보육교사 직종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담임교사	대체교사	야간연장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비담임)보조	누리과정(비담임)보조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선임교사	방과후보육	24시간보육	야간연장교사(단시간	대체교직원

						교사(30시간이상)	교사(30시간미만)			교사	교사	형)	
소계	226,134	161,078	2,686	4,342	32,242	1,527	5,723	17,776	290	221	130	113	6
서울	37,063	26,622	693	717	5,006	243	985	2,631	70	59	18	19	0
부산	11,391	8,396	77	131	1,555	62	239	919	1	5	4	1	1
대구	9,198	6,803	53	123	1,134	39	145	795	77	24	2	3	0
인천	13,409	9,638	134	230	1,952	59	340	1,021	15	3	12	5	0
광주	6,891	4,941	34	66	1,015	30	106	617	34	33	9	5	1
대전	6,958	4,485	105	169	1,261	41	115	739	26	5	0	11	1
울산	5,002	3,626	54	45	733	37	121	375	5	4	2	0	0
세종	3,008	2,121	32	14	472	25	96	248	0	0	0	0	0
경기	68,095	47,677	908	1,582	9,770	549	1,918	5,590	10	6	36	47	2
강원	6,434	4,559	85	82	1,024	54	175	441	2	6	2	4	0
충북	7,165	5,277	39	203	853	47	229	491	15	0	9	2	0
충남	9,788	6,961	131	134	1,525	99	281	628	16	8	2	3	0
전북	7,124	5,079	34	218	973	34	158	598	1	25	0	4	0
전남	7,506	5,597	42	134	889	52	217	550	6	7	12	0	0
경북	9,970	7,161	84	157	1,548	64	176	760	5	9	3	2	1
경남	13,260	9,387	92	307	1,887	66	302	1,165	7	23	17	7	0
제주	3,872	2,748	89	30	645	26	120	208	0	4	2	0	0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3 보육통계.

〈표 Ⅳ-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대학 졸업자이며,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도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2020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소계	보육교사교육원	합계
인원(명)	4,707	10,695	337	591	6,990	23,320	1,093	24,413
비율(%)	19.28	43.81	1.38	2.42	28.63	95.52	4.48	100

자료: 신혜원(2024). 교사양성과정이 왜 대면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유보통합 정책 공동포럼: 영유아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3대 쟁점. 발표자료.

〈표 Ⅳ-3-6〉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명(%)

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공대학	합계
2018	2,638(24.79)	6,525(61.33)	1,140(10.71)	167(1.57)	170(1.60)	10,640(100)
2019	2,822(27.13)	6,196(59.58)	1,155(11.11)	79(0.76)	148(1.42)	10,400(100)
2020	2,615(28.19)	5,182(55.84)	1,267(13.65)	70(0.75)	146(1.57)	9,280(100)
2021	2,658(28.89)	5,105(55.48)	1,246(13.54)	42(0.46)	150(1.63)	9,201(100)
2022	2,514(28.17)	4,818(53.98)	1,403(15.72)	39(0.44)	151(1.69)	8,925(100)

자료: 교육부(2023). 내부자료.
출처: 양미선, 최은영, 조용남, 윤소정(2023).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55쪽 표 재인용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발급의 경우에도 역시 전문대학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4년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6). 유치원 교사 양성에서 방송통신대학이 단일 대학으로 1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이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별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에는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시·도 교육청이라도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표 Ⅳ-3-7).

〈표 Ⅳ-3-7〉 유치원 학급 편성기준 (2023년 현재)

구분	기본과정			혼합반			방과후과정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서울	(공립)14 (사립) 16-20	(공립)20 (사립) 22-24	(공립)22 (사립) 24-28	(공립)20 (사립) 22-24	-	-	-	-	-
부산	14-16	22-24	24-26	20-22		24-26		22-24	24-26
대구	(공립)18 (사립) 18-26	(공립)24 (사립) 24-28	(공립)28 (사립) 28-30	(공립)20 (사립)20	-	(공립)24 (사립)24	-	(공립)26 (사립)26	-
인천	15	20	22	18	18	-	18	-	-
광주	16	20	22	20	20	-	20	-	16
대전	(공립)15 (사립) 15-20	(공립)22 (사립) 23-25	(공립)26 (사립) 27-30	(공립)22 (사립) 23-25	(공립)22 (사립) 23-25	-	(공립)22 (사립) 23-25	-	15
울산	16	21	24	21	-	21	-	21	혼합반 18 이상
세종	15	20	23	-	-		-	-	-
경기	14-18	20-22	24-26	14-16	-	20-22	-	18-20	14-8
강원	14	20	22	14	-	18	-	16	-
충북	15	20	23	17	17		17		
충남	(공립)14 (사립)15	(공립)18 (사립)20	(공립)20 (사립)25	(공립)14 (사립) 22-20	-	(공립)16 (사립) 22-25	-	(공립)18 (사립) 22-25	-
전북	14	18	20	16	-	18	-	16	14
전남	(공립)15 (사립)15	(공립)19 (사립)19	(공립)20 (사립)21	16	-	20	-	17	-
경북	16-18	20-22	24-26	20-24	20-24		20-24	-	-
경남	(공립)15 (사립)19	(공립)21 (사립)25	(공립)23 (사립)27	(공립)18 (사립)24	-	(공립)18 (사립)24	-	(공립)18 (사립)24	(공립)15 (사립)19
제주	15	19	24	15	-	16	-	19	

주: 1) 세종시는 2020년 자료임
2) 일반학급 독립편성/오후재편성

자료: 강원도교육청(2022). 2023학년도 강원도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p.20.
경기도교육청(2022). 2023 경기유아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p.47.
경상남도교육청(2023). 내부자료.
경상북도교육청(2022). 2023 경북유아교육계획, p.68.
광주광역시교육청(2023). 2023학년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 p.32, 59.
대구광역시교육청(2022). 2023 대구유아교육, p.46.
대전광역시교육청(2022). 2023 대전유아교육 운영계획, p.68.
부산광역시교육청(2022). 2023 부산유아교육계획, p.29, 58.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2023~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배치계획, p.2.

울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울산 유아교육계획, 35p,
인천광역시교육청(2022). 2023학년도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기준, p.1.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유아교육 2023, p.82.
전라북도교육청(2023). 2023 전북유아교육계획, p.31, 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유아교육 운영계획, p.41, 51.
충청남도교육청(2022). 2023 충남 유치원 교육과정, p.17.
충청북도교육청(2022). 2023 유아모집 선발계획. p.4
출처: 양미선, 최은영, 조용남, 윤소정(2023).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40-41쪽 표 재인용

3세는 교사 1인당 유아 14명에서 20명(사립 최대 24명), 4세는 교사 1인당 유아 18명에서 25명(사립 최대 26명), 5세는 교사 1인당 유아 22명에서 26명(사립 최대 28명), 혼합 연령의 경우 유아 16명에서 26명으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유아의 수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당 영유아의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어린이집에는 원장 1명과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표 Ⅳ-3-8〉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3세는 교사 1인당 유아 15명, 4~5세는 교사 1인당 유아 20명으로, 어린이집 평가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연령별 반편성 여부를 관리·감독 받고 있다.

〈표 Ⅳ-3-8〉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

단위: 명

구분	기본 보육과정					장애아반	연장반	
	만1세 미만	만1세~만2세 미만	만2세~만3세 미만	만3세~만4세 미만	만4세~미취학유아		만3세 미만	만3세 이상
보육교사	3명당 1명	5명당 1명	7명당 1명	15명당 1명	20명당 1명	3명당 1명	5명당 1명	15명당 1명

주: 1)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2)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3) 연장반의 만 1세 미만 및 장애아의 경우 3인 당 1인
4) 20명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5)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은 둠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2024년 10월 22일 인출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각기 다른 교원배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학급규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4년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의 내용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주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과제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기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기준 3세 최대 1:24, 4세 최대 1:26, 5세 최대 1:28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0세 1:2, 0~2세에는 2학급당 1명의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비율 1:8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감축시키는 것을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간 상호작용과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무조건적인 감축이 아닌 적정 학급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이외의 다른 지원 인력의 배치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인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별표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여 어린이집에 원장과 보육교사 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및 그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Ⅳ-3-9).

〈표 Ⅳ-3-9〉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
원 장	전 어린이집별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연장반의 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 (조리사)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출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원인력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표 Ⅳ-3-1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총계	원장				보육 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특수교사
	소계	20인 이하 어린 이집	40인 미만 어린 이집	40인 이상 어린 이집	소계	담임 교사	대체 교사	방과 후 보육 교사	24 시간 보육 교사	야간 연장 교사 (월급 여형)	야간 연장 교사 (단시 간형)	보조 교사	누리 과정 보조 교사 (30 시간 이상)	누리 과정 보조 교사 (30 시간 미만)	대체 교직 원	연장 보육 반 전담 교사	비 담임 (임) 교사	소계	간 호 사	간호 조무 사				
302,800	28,818	11,448	4,804	12,566	226,134	161,078	2,686	221	130	4,342	113	32,242	1,527	5,723	6	17,776	290	776	335	441	941	27,523	17,221	1,387

출처: 보건복지부(2023). 보육통계.

반면, 유치원의 경우 법령에 교원배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대부분 '관할청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정책에 따라 배치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대표적 예로 사립유치원 영양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방과후교사/보조교사 배치 기준을 들 수 있다. 즉,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추가인력을 배치하기도 하고 배치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본과정 담임교사와 에듀케어반 담임교사 이외에 교과담당교사, 실무사 등의 배치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다 더욱 풍족한 인적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3-11〉 유아교육법령의 인력 배치기준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표 Ⅳ-3-12〉 유치원 유형별 기관당 교직원 현황 (2024년 10월)

단위: 명

		원장		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무직원	
	기관수	총	기관당	총	기관당	총	기관당	총	기관당	총	기관당	총	기관당	총	기관당
사립	3,006	2,979	0.99	1,306	0.43	37	0.01	654	0.22	4	0.00	248	0.08	7826	2.6
병설	4,564	0	0	448	0.10	1	0.00	1432	0.31	4	0.00	2	0.00	4129	0.90
단설	588	584	0.99	587	1.00	16	0.03	1632	2.77	105	0.18	113	0.23	7119	12.12
국립	3	3	1.00	3	1.00	0	0.00	8	2.67	2	0.67	0	0	13	4.33

자료: 유치원알리미(2024.10). 일반현황, 직위·자격별교직원 현황 데이터 일부 재가공.

이러한 격차는 직원의 배치에서도 나타난다. 〈표 Ⅳ-3-12〉에 따르면 기관유형 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사무직원의 배치로 단설유치원의 경우 기관당 12명이 넘는 사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병설유치원의 경우 1명도 배치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13〉 유치원 유형별 학급당 교사수 현황 (2024년 10월)

단위: 명

	기관수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급수	일반	기간제	교사소계	학급당	학급수	교사수	학급당
사립	3,006	18,316	25,658	1,813	27,471	1.50	1	2	2
병설	4,564	7,306	6,250	4,365	10,615	1.45	806	641	0.80

단설	588	4,145	3,713	3,815	7,528	1.82	772	572	0.74
국립	3	14	7	15	22	1.57	3	4	1.33

자료: 유치원알리미(2024.10). 일반현황, 직위·자격별교직원 현황 데이터 일부 재가공.

3)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경력 연수별 유치원 교원의 수를 살펴보면(표 Ⅳ-3-14), 2023년 기준, 5년 미만 경력자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14〉 경력 연수별 유치원 교원 수

단위: 명(%)

구분	합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2019	53,362 (100)	24,571 (46.05)	12,152 (22.77)	5,841 (10.95)	3,433 (6.43)	2,093 (3.92)	1,735 (3.25)	3,537 (6.63)
2020	53,651 (100)	24,163 (45.04)	12,510 (23.32)	5,876 (10.95)	3,619 (6.75)	2,196 (4.09)	1,629 (3.04)	3,658 (6.81)
2021	53,457 (100)	23,069 (43.15)	12,824 (23.99)	6,016 (11.25)	3,932 (7.36)	2,283 (4.27)	1,729 (3.23)	3,604 (6.75)
2022	53,696 (100)	22,831 (42.52)	13,126 (24.44)	6,044 (11.26)	3,948 (7.35)	2,486 (4.63)	1,604 (2.99)	3,657 (6.81)
2023	55,637 (100)	22,352 (40.18)	14,251 (25.61)	6,765 (12.16)	4,397 (7.90)	2,641 (4.75)	1,647 (2.96)	3584 (6.44)

주: 합계는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로 이루어짐.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유치원현황 경력연수별 교원수(2024.11.09. 인출).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표 Ⅳ-3-15),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5년~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년 미만 경력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5년 미만 경력 교사도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각 집단 간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58%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5-10년 미만 교사가 28%로 나타났고, 그 이상 경력자의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 경력 추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15〉 기관유형별 경력연수별 유치원 교원 수 (2023년)

단위: 명(%)

구분	합계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이상
국공립	21,122 (100)	5,745 (27.20)	6,110 (28.93)	3,609 (17.08)	2,585 (12.24)	1,101 (5.21)	462 (2.19)	1,510 (7.15)
사립	27,408 (100)	15,891 (57.98)	7,721 (28.17)	2,505 (9.14)	870 (3.17)	280 (1.02)	106 (0.39)	35 (0.13)

주: 합계는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로 이루어짐.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유치원현황 경력연수별 교원수(2024.11.09. 인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양미선 외(2023)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이직횟수를 조사한 바 있다. 〈표 Ⅳ-3-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직 횟수는 평균 2.5회로 나타났으며 4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교사도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6〉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평균
응답수(비율)	243(35.32)	157(22.82)	137(19.91)	151(21.95)	688(100)	2.5회

주: 양미선 외(2023)의 연구를 위해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임
출처: 양미선, 최은영, 조용남, 윤소정(2023).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33쪽 표 재인용.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을 알아보면 〈표 Ⅳ-3-17〉과 같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퇴근 시각과 일일 총 근무시간을 조사한 최은영 외(2019)의 연구에 의하면 담당 연령에 따른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직기관 유형과 담당학급 연령과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Ⅳ-3-17〉 유치원 교사의 출퇴근 시각과 일일 총 근무시간

단위: 시간

		출근시각				퇴근시각							근무시간
		7:01-7:30	7:31-8:00	8:01-8:30	8:31 이후	17:00 이전	17:01-18:00	18:01-18:30	18:31-19:00	19:01-20:00	20:01 이후	사례수	평균
전체		3.7	40.6	53.3	2.5	1.2	45.1	23.8	20.1	9.4	0.4	244	10.2
재직기관 유형	사립법인	8.6	54.1	37.1	2.9	-	51.4	20.0	20.0	8.6	-	70	10.3
	사립사인	1.7	36.2	59.8	2.3	1.7	42.5	25.3	20.1	9.8	0.6	174	10.2
담당학급	만3세반	-	48.3	50.0	1.7	-	35.0	30.0	20.0	15.0	-	60	10.4
	만4세반	2.4	44.6	50.6	2.4	1.2	45.8	21.7	22.9	8.4	-	83	10.2
	만5세반	3.4	33.0	63.6	0.0	1.1	51.1	20.5	18.2	8.0	1.1	88	10.1
	혼합연령반	30.8	30.8	15.4	23.1	7.7	46.2	30.8	15.4	-	-	13	10.1

자료: 최은영, 박진아, 김동훈, 김태우, 장혜진(2019).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127쪽 표 재인용.

〈표 Ⅳ-3-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경우 일일 평균 보육에 사용하는 시간은 7시간 50분이었으며 보육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했을 때 9시간 4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시간 이상 근로하는 유치원 교사보다는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으나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육에 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8〉 보육교사의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시간/분(명)

구분		보육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점심 시간	휴게 시간	1일 총 근로시간(A)	주당 당직 근로시간(B)	주당 총 근로시간(A×5+B)	(수)
전체		7시 50분	1시 2분	10분	42분	9시 43분	1시 58분	50시 31분	3,300
어	국공립	7시 40분	1시 15분	8분	44분	9시 48분	2시 36분	51시	657

린이집유형								34분	
	사회복지법인	7시 59분	1시 6분	8분	42분	9시 55분	2시 5분	51시 41분	359
	법인단체	7시 58분	1시 0분	5분	40분	9시 44분	2시 18분	50시 56분	217
	민간	7시 59분	54분	9분	38분	9시 40분	1시 38분	49시 57분	791
	가정	7시 50분	50분	13분	40분	9시 33분	1시 8분	48시 51분	954
	직장	7시 29분	1시 22분	10분	52분	9시 53분	3시 36분	53시 4분	322
담당반	영아반	7시 48분	1시 0분	11분	41분	9시 40분	1시 45분	50시 7분	2317
	유아반	7시 56분	1시 4분	7분	41분	9시 49분	2시 33분	51시 37분	922
	장애아반	7시 2분	1시 22분	12분	49분	9시 26분	1시 53분	49시 1분	61

자료: 양미선, 이윤진, 김동훈, 김근진, 조숙인, 구자연, 오미애, 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교사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58쪽 표 재인용.

영유아교사의 출퇴근 시간 및 총 근무시간을 기관유형과 교사 경력에 따라 비교한 김은설, 김길숙, 이민성(2015)의 연구에 의하면(표 Ⅳ-3-19)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근무시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력이 2년 미만인 교사가 경력 2년에서 5년 미만인 교사보다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9〉 평일 출·퇴근 시간 및 총 근무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총 근무시간		
	평균(시)	표준편차	평균(시)	표준편차	평균(시)	표준편차	*t/F*
전체	8.21	0.64	18.14	1.05	9.53	1.22	
기관유형							
유치원	8.15	0.52	18.06	1.13	9.51	1.33	-1.42
어린이집	8.27	0.73	18.23	0.93	9.56	1.09	
교사 경력							
2년 미만	8.23	0.69	18.29	1.05	10.06_a	1.25	
2년-5년 미만	8.20	0.66	18.23	1.03	10.03_a	1.25	17.45^{***}
5년-10년 미만	8.23	0.74	18.23	1.06	10.01_a	1.27	
10년 이상	8.19	0.50	17.54	0.95	9.35_b	1.07	

주: 1) 평균 시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분으로 환산한 후 반올림한 수치임.
2) Scheffe 검증 결과로 a와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001$.
출처: 김은설, 김길숙, 이민성(2015).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한편, 김은설, 김길숙, 이민성(2015)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인식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치원교사가 인식한 직무스트레스가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직무스트레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Ⅳ-3-20). 교사 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교사보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직무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Ⅳ-3-20〉 영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보통 정도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7	6.2	50.5	30.4	12.3	1600(100)	3.47	0.81	
기관유형									
유치원	0.5	6.1	47.8	30.1	15.5	800(100)	3.54	0.84	3.30**
어린이집	0.9	6.3	53.3	30.6	9.0	800(100)	3.41	0.77	
교사 경력									
2년 미만	1.0	5.1	57.4	26.4	10.2	197(100)	3.40	0.78	
2년-5년 미만	0.8	7.1	46.7	33.9	11.5	381(100)	3.48	0.82	0.71
5년-10년 미만	0.4	6.7	49.5	30.0	13.4	493(100)	3.49	0.82	
10년 이상	0.8	5.5	51.6	29.7	12.5	529(100)	3.48	0.81	
학력									
고졸 이하	3.4	12.1	67.2	15.5	1.7	58(100)	3.00_a	0.70	
2년제 대학 졸업	1.0	5.2	56.0	28.3	9.4	382(100)	3.40_b	0.77	
3년제 대학 졸업	0.7	6.2	44.9	34.8	13.4	276(100)	3.54_b	0.83	6.92***
4년제 대학 졸업	0.4	6.2	47.9	32.2	13.2	674(100)	3.51_b	0.82	
대학원 졸업 이상	0.0	6.2	51.4	26.7	15.7	210(100)	3.52_b	0.83	

주: Scheffe 검증 결과로 a와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01$. *** $p<.001$.

출처: 김은설, 김길숙, 이민성(2015).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4) 영유아교사의 교권

최근 학교급을 막론하고 교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교권'이다. 교사의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권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표 Ⅳ-3-21〉 법 종류에 다른 교권 관련 조항 및 내용

법의 종류	법 조항의 내용
헌법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서는 교원으로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교육공무원법	[1조]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과 관련된 특례 규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자료: 박은혜(2024.04.20.). 영유아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현황과 과제. 영유아교육 주체의 권리와 상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자료집(pp.33-45). 34-35쪽 표 재인용.

한편,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교사의 교육권은 전문성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한국교총이 보고한 최근 3년간의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전체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2022년 기준 전체 교권침해 상담사례 520건 중에서 유·초·특수학교급 교사에 해당하는 건이 350건을 차지했으며 학부모 이외에 동료 교직원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피해 사례도 높게 나타났다(김범주, 이평구, 김소현, 2023). 유치원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인식 연구(전휘연, 2024)에 따르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83.7%로 나타났다. 이것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주로 해당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59.2%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형태, 그리고 48.5%가 경험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형태의 교권침해는 관리자 및 동료교사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3년 9월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 4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교권보호 4법에 해당하는 법과 교권 관련 해당 법에 변경된 조항과 내용은 〈표 Ⅳ-3-22〉와 같다.

〈표 Ⅳ-3-22〉 교권보호 4법 내용

법의 종류	변경조항	변경내용
교육기본법	제13조 3항 신설	부모 등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제18조의5 신설	부모 등 보호자의 교직원 학생 인권 침해 금지 및 교육활동 협력 의무 명시
	제21조의 1/제20조 추가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제21조의 5/제20조의3 신설	학교와 학교장의 교원 개인정보 보호 책무 강화
	제21조의 3/제20조의2 신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의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3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방지
	제17조 신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
	제19조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악성민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 추가
	제22조, 제27조 3, 제28조 신설	교육감 등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 회복 지원 확대

자료: 박은혜(2024.04.20.). 영유아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현황과 과제. 영유아교육 주체의 권리와 상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자료집(pp.33-45). 42쪽 내용 표로 재구성.

교권보호 4법은 학부모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와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의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이덕난, 2023).

나. 쟁점

영유아교사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영유아교사의 교육권 보호이다. 먼저,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최은영 외, 2019),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평균 1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하면서 그중 7시간 50분을 영유아 보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선 외, 2021).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일하고 있는 현실은 교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교사들이 영유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우려할 만한 근무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주당 23시수(시수당 40분) 정도의 수업을 한다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시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영유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근무시간 및 수업시간이 영유아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권보호 4법의 제정은 의의도 있지만 실효성을 생각했을 때의 과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이덕난, 2023). 즉, 교권보호 4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인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특히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완전히 실현된다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학교 및 학교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쟁점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교사와 지원 인력의 확보이다. 앞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교사가 장시간 동안 혼자 담당했던 교육시간을 나누어 여러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연장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등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4.06.26.). 공립유치원의 경우 정규학급 담임과 에듀케어반 담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사립유치원의 경우 역할은 나누어져 있지만 담당시간의 구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기관마다 인력 운용의 방식이 다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시간이 긴 만큼 연장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에서는 유치원의 영양·보건 교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정책에 따라 배치여부가 좌우되기도 한다. 대표적 예로 사립유치원 영양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방과후교사/보조교사 배치 기준과 인건비 지원 받는 인원수 제한 여부를 들 수 있다. 즉,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지원 여부에 따라 추가인력을 배치하기도 하고 배치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담임교사 이외에 추가적인 교과 담당교사, 실무사 등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체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별도 배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특수목적을 가지고 임용된 교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허주, 2024).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다양한 역할을 가진 교사와 직원의 배치를 통해 각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쟁점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것이다. 양질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연구(OECD, 2018)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웰빙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에 대하여 밝혔는데, 교원의 연수 및 전문성 발달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특히 문해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즉,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위한 노력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그만큼 교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교육부, 2024. 06.26)에서는 전체 영유아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 지원의 네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연수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학습공동체나 기관 내 자율연수 등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법정 교육이수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교원이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다른 학교급의 교사와 다르게 쉬는 시간 없이 영유아와 함께 지내는 교사들은 고도의 긴장과 집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본다. 이에 교사들은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현황에서 보면 영유아교사의 근속 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교사가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영유아교사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사의 건강은 영유아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특수한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영유아교사의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재정 및 지원체계

가. 현황

1) 유아교육 재정

가) 누리과정 도입과 유아교육 재정

유아교육은 2006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8년 시행되기 이전

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2006년 말 교부금법 개정으로 유아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해 방과후학교사업, 특수교육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을 교부금으로 통합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종래 19.4%에서 20%로 인상한 바 있다. 즉, 유아교육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변화했다. 2006년 말 개정된 교부금법이 시행된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위해 산정한 기준재정수요 중 유아교육비는 5,415억이었다. 교부금에서 산정한 유아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시범사업비,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제고비, 유치원 환경개선비를 포함했다. 이후 누리과정 도입을 계기로 유아교육비는 급격히 증가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우명숙, 2022).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이 발표되고 2012년 만 5세, 2013년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된 이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으로 유아 일 인당 2012년 20만 원, 2013~19년 22만 원, 2020년 24만 원, 2021년 26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 이후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4-1〉 누리과정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2012 (5세)	2013~2019	2020	2021	2022~2024
유치원	공립	유아학비	6	6	6	8	10
		방과후	5	5	5	5	5
		소계	11	11	11	13	15
	사립	유아학비	20	22	24	26	28
		방과후	7	7	7	7	7
		소계	27	29	31	33	35
어린이집	보육료		20	22	24	26	28
	방과후과정비		7	7	7	7	7
	소계		27	29	31	33	35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202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커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두 지원하게 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표 Ⅳ-4-2〉와 같다. 누리과정 도입 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유아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은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에서 이원화되어 지원되었다. 2012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되, 만3-4세 보육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던 것을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표 Ⅳ-4-2〉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지원 소요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만5세*	교	지방교육재정	2,482	2,586	5,392	5,482	5,611	6,509

	육	교부금						
	보육	국고	1,316	1,012	-	-	-	-
		지방비	1,375	1,036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5,996	6,087	6,218	7,204
		소계	2,691	2,048	5,996	6,087	6,218	7,2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계		2,482	2,586	11,388	11,569	11,829	13,713
	계		5,173	4,634	11,388	11,569	11,829	13,713
만3-4세**	국기+지방비				7,747	7,747	4,51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4,964	16,781	22,930	30,836
	계					12,711	24,528	27,440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2011.5.2.).「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12.1.18.).「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재정백서.

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현황

3~4세 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2015년부터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교부금은 예상과 달리 증가하지 않았으며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누리과정 도입 후 3년 동안 교육청의 지방채가 5배 증가해 15조원에 달했다고 국회 권칠승의원은 비판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8호. 2016.11.16. 49-50면).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교육청은 재정 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커졌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말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갖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했다. 2019년 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다시 3년간 더 연장해 2025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년 3조 9,409억 원, 2018년 3조 8,927억 원, 2019년 3조 8,153억 원에 달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0년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규모는 많이 감소되어 2024년 3조 2,322억 원이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표 Ⅳ-4-3〉과 같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은 교육세 중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교육세분 특별회계 규모는 2020년 1조 8,041억 원, 2021년 1조 6,907억 원, 2022년 1조 6,664억 원, 2023년 1조 6,624억 원, 2024년 1조 6,797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부담은 2020년 2조 978억 원, 2021년 2조 169억 원, 2022년 1조 9,870억 원, 2023년 1조 6,959억 원, 2024년 1조 5,310억 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정부의 부담은 2023년까지는 교육세분 규모보다 컸지만 2024년에는 교육세분보다 적게 나타났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출을 살펴보면,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2020년 1조 8,230억 원에서 2024년 1조 6,797억 원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2020년 2조 814억 원에서 2024년 1조 4,761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 컸지만 2024년에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았다.

〈표 Ⅳ-4-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세출 계		39,900	39,168	38,290	34,700	32,322
세입	일반회계 전입	39,900	39,168	38,290	34,700	32,322
	- 교육세분	18,041	16,907	16,664	16,624	16,797
	- 국고	20,978	20,169	19,870	16,959	15,310
	-전년도 세계잉여금	881	2,092	1,756	1,117	215
세출	누리과정	39,900	39,168	38,290	34,700	32,106
	- 유치원	18,230	17,909	17,593	16,920	16,797
	- 어린이집	20,814	20,453	19,956	17,143	14,761
	- 어린이집 별도지원분	856	806	741	637	549
	공자기금	0	0	0	0	215
	- 공자기금 예탁	0	0	0	0	215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202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다) 국가(교육부) 수준에서의 유아교육재정 지원 현황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 예산을 확보해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에 지원했다.

누리과정을 제외한 국가수준에서 유아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된다. 보통교부금에서 유아교육을 위한 교직원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은 초·중등교육과 함께 통합해 산정된다.

보통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로 별도로 최근 5년간 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서 산정하는 유아교육비는 2020년 5,492억 원, 2021년 5,593억 원, 2022년 6,140억 원, 2023년 7,284억 원, 2024년 9,54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유아교육비」중 유아교육비·보육료는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서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2024년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한 명당 월 5만원을 산정해 1,735억 원을 산정했다.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을 2020년 교원당 월 13만 원 지원했으나 2024년 교권 회복 후속조치에 따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 산정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2020년 월 55만 원에서 2022년 월 58만 원, 2023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해 산정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장기근속수당은 2021년부터 월 3만 원을 산정했으나 2023년 월 4만 원, 2024년 월 5만 원으로 인상해 산정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은 2022년 이후 교원당 연간 13,200천 원을 산정했다. 유치원교육역량 지원비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 선진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한다. 2024년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는 유치원당 42,857천 원, 원아수당 210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서 산정한 유아교육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표 Ⅳ-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산정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미산정(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				1,735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	398	375	316	306	505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2,364	2,265	2,294	2,317	2,268
	사립유치원 교원 장기근속수당	-	124	119	154	189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	-	-	171	201	200
	소계	2,762	2,764	2,899	2,978	3,163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		2,730	2,828	3,241	4,306	4,648
계		5,492	5,593	6,140	7,284	9,546

출처: 교육부(2020; 2021; 2022; 2023; 2024) 각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이외에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서 유아교육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시책사업비 중 유아교육 역량강화 정책사업비에 지원한 규모와 비중은 2020년 약 80억 원(0.86%), 2021년 약 64억 원(0.59%), 2022년 약 73억 원(0.50%), 2023년 약 136억 원(0.98%)에 달했다. 2023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서 유아교육역량강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전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린 것을 볼 수 있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표 Ⅳ-4-5〉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유아교육역량강화 사업비

단위: 백만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2020	2021	2022	20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925,185 (100)	1,086,802 (100)	1,458,899 (100)	1,384,551 (100)
유아교육역량강화 정책사업	7,959 (0.86)	6,367 (0.59)	7,346 (0.50)	13,608 (0.98)
-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	-	1,876 (0.13)	1,475 (0.11)
- 유아 놀이중심 교육문화 조성	-	-	-	8,440 (0.61)
- 국공립 유치원 유형 다양화 지원 사업	-	-	1,050 (0.07)	770 (0.05)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	-	2,923 (0.21)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	4,420 (0.30)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20~2023년도 특별교부금.

라) 교육청 수준에서의 유아교육재정 지원 현황

시·도교육청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 교육청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한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유아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규모를 정밀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해보면,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시설여건개선,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 재무활동, 예비비 및 기타, 인건비로 구분되어 있다. 유아교육 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출예산이 유아교육에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예산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 함께 편성·집행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 중 유아교육 단위사업비는 세부사업으로 사립유치원지원비, 유치원 교육여건개선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유아교육운영비를 포함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된 2022~23년 예산(최종) 기준 유아교육 단위사업비와 세부사업비는 〈표 Ⅳ-4-6〉과 같다. 2022년 유아교육비 예산 최종액은 6,648억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9,026억 원으로 35.8% 증가했다.

〈표 Ⅳ-4-6〉 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사업비 예산 (최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유아교육(단위사업)	664,840	902,632
- 사립유치원지원	442,423	604,603
- 유치원교육여건개선	28,521	19,139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13,034	148,612
- 유아교육운영	80,862	130,278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예산공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교육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관련 예산(누리과정 예산 제외)을 파악한 자료는 〈표 Ⅳ-4-7〉과 같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관련(누리과정 예산 제외) 예산은 2019년 2조 5,014억 원에서 2023년 3조 5,820억 원으로 증가했다.

〈표 Ⅳ-4-7〉 유아교육 관련 예산 (누리과정 예산 제외)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아교육 관련예산 (누리과정 예산 제외)	25,014	28,730	28,378	32,465	35,820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202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2)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 재정

어린이집 관련 보육재정은 첫째, 국가(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비를 더해 수행하는 국고보조금사업과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국고보조금 보육재정 지원

국가의 보육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은 2024년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상응해 대응투자를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비(부모급여 지원 제외)는 2020년 5조 8,728억 원에서 2024년 4조 7,694억 원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표 Ⅳ-4-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예산 (2019~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58,728	59,198	58,931	66,780	76,581
합계(부모급여 지원 제외)	58,728	59,198	55,200	50,565	47,694
영유아보육료지원	34,328	34,168	32,239	30,456	26,981
-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	33,952	32,028	30,251	26,731
- 시간제 보육지원	166	216	209	204	250
- 표준보육비용 조사	-	-	2	-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946	677	648	526	493
- 어린이집 기능보강	198	69	39	35	76
- 어린이집 확충	748	609	609	492	417
어린이집 관리	425	396	345	315	277
- 보육사업관리	40	41	57	47	37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65	117	49	10	10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5	25	22	19	13
- 보육실태조사	-	7	-	-	-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3	12	11	9	-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2	1	1	-	-
-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70	182	193	218	217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등	11	11	12	12	-
어린이집 지원	14,871	16,662	16,887	17,510	18,863
- 공공형어린이집	630	606	7	7	-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242	16,055	16,880	17,504	18,86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157	7,608	5,082	1,759	1,081
부모급여 지원	-	-	3,731	16,215	28,887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2020~2024.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에 상응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 지원 등 영유아보육 사업에 대해 대응투자를 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에 상응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한 예산은 총 3조 1,035억 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부모급여 지원 제외)은 5조 565억 원,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는 3조 1,035억 원으로 총 8조 1,600억 원이 어린이집 지원 보육재정으로 지원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금에 상응해 대응투자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시도별로 살펴보면(표 Ⅳ-4-9), 서울이 7,4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7,271억 원, 부산 1,666억 원, 경남 1,71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정책처, 2024).

〈표 Ⅳ-4-9〉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국고대응투자 예산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23	31,035	7,412	1,666	1,185	1,387	881	794	591	457
2024	29,408	8,052	1,315	1,132	1,307	820	734	560	33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	7,271	863	980	1,366	1,032	1,250	1,459	1,719	724
2024	6,698	823	943	1,051	979	1,201	1,195	1,592	674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202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나) 특수보육시책사업

시·도 및 시·군·구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특수보육시책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1조 5,923억 원(최윤경 외, 2021, 최효미·김태우, 2023에서 재인용), 2023년 기준으로 2조 508억 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국회 예산정책처, 2024).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시·도별로 자체지원한 특수보육시책사업비를 살펴보면, 경기가 6,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4,807억 원, 충남 1,350억 원, 인천 1,16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10〉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자체지원 예산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자체지원	20,508	4,807	523	412	1,167	332	704	375	17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체지원	6,336	485	542	1,350	568	487	1,009	918	324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202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특수보육시책사업비는 입학준비금 등 7개 항목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최효미·김태우, 2023)

3) 학부모 부담 교육비/보육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이상 유아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표 Ⅳ-4-11〉과 같다.

〈표 Ⅳ-4-11〉 유아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러나 법적으로는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교육비와 보육료가 존재하며, 이는 유아 연령,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차 공시 자료 기준으로, 만3세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1인당 월평균 86원을 부담하는 데 반해,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평균 118,728원을 내고 있었다. 만 4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유아는 1인당 월 평균 131원, 사립유치원 유아는 1인당 월평균 117,690원을 부담하고, 만 5세 국공립유치원 유아는 1인당 월평균 166원, 사립유치원 유아는 1인당 월평균 107,573원을 부담하고 있

었다.

〈표 Ⅳ-4-12〉 연도별 교육과정 교육비 평균 (2020-2023)

단위: 개소, 원

구분	유치원 수		만 3세		만 4세		만 5세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020년 2차	4,863	3,577	622	157,609	609	156,194	659	152,796
2021년 1차	4,898	3,424	442	147,917	573	146,267	551	143,709
2021년 2차	4,916	3,421	393	147,712	420	146,546	381	143,638
2022년 1차	4,900	3,268	152	124,003	154	122,516	167	117,153
2022년 2차	4,904	3,262	292	123,369	363	122,255	343	116,340
2023년 1차	4,831	3,126	86	118,728	131	117,690	166	107,573

주: 1) 연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기본경비'의 총 합계(월단위) 평균값을 계산함.
2) 평균값 = 교육과정 '기본경비'의 총 합계 / 유치원 수
3) 국공립은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성의 합임.
4) 사립은 사립(법인), 사립(사인)의 합임.
자료: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http://e-childschoolinfo.moe.go.kr//) 2020-2023 교육과정 교육비(2023. 6. 5. 인출)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매월 부담하는 보육료 및 추가 비용은 자녀 연령이나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액 보육료는 전체 평균 7.3천 원이며, 추가 비용으로 평균 48.7천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21: 273). 항목별 추가 비용은 특별활동비가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35.7천 원, 현장학습비 6.8천 원, 시도특성화비 2.2천 원, 기타 4.1천 원이다(김은설 외, 2021: 276).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경우 부모가 추가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며 그 상한액은 지역별, 유아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표 Ⅳ-4-13〉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 2023년 기준

단위: 원

구분	민간		가정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서울	483,400	462,000	483,000	462,600
부산	360,500	345,500	360,500	345,500
대구	368,000	352,000	374,000	362,000
인천	408,000	393,000	408,000	393,000
광주	365,000	353,000	381,000	369,000
대전	376,000	357,000	376,000	357,000
울산	359,000	343,000	375,000	356,000
세종	368,000	355,000	369,000	351,000
경기	405,000	382,000	408,000	408,000
강원	360,000	341,000	371,000	360,000
충북	383,000	363,000	390,000	383,000
충남	483,000	444,100	483,700	444,100
전북	368,000	354,000	370,000	356,000
전남	371,000	352,000	385,000	373,000
경북	372,000	354,000	377,000	359,000
경남	357,000	340,000	373,000	365,000
제주	356,000	344,000	356,000	344,000

자료: 각 시도·청(2023).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내부자료.
출처: 양미선, 김동훈, 정유나(2023).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 지원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4) 다양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체계

가) 장애영유아 현황 및 지원

0~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이다. 2022년 현재 특수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1,104명, 일반유치원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7,249명으로, 이 둘을 합쳐도 전체 기관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의 38.55%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전문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13,315명으로 어린이집에서 전체 장애 영유아의 61.45%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4〉 시도별 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2022)

단위: 명, %

구분	특수 교육기관	일반유치원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계
		특수학습	일반학급				
전국	1,104 (5.10)	5,291 (24.41)	1,958 (9.04)	6,170 (28.48)	6,143 (28.35)	1,002 (4.62)	21,668 (100)
서울	244 (7.97)	538 (17.56)	89 (2.91)	181 (5.91)	1,887 (61.60)	124 (4.05)	3,063 (100)
부산	157 (10.84)	208 (14.35)	268 (18.5)	518 (35.75)	242 (16.70)	56 (3.86)	1,449 (100)
대구	20 (1.46)	178 (12.95)	252 (18.34)	774 (56.33)	87 (6.33)	63 (4.59)	1,374 (100)
인천	50 (3.54)	360 (25.48)	251 (17.76)	118 (8.35)	565 (39.99)	69 (4.88)	1,413 (100)
광주	41 (5.59)	103 (14.03)	74 (6.16)	471 (16.37)	21 (15.50)	24 (3.27)	734 (100)
대전	42 (7.40)	240 (42.25)	35 (6.16)	93 (16.37)	88 (15.50)	70 (12.32)	568 (100)
울산	7 (0.96)	161 (22.09)	62 (8.50)	376 (51.58)	107 (14.68)	16 (2.19)	729 (100)
세종	9 (3.70)	156 (64.21)	8 (3.29)	19 (7.82)	42 (17.28)	9 (3.70)	243 (100)
경기	271 (5.29)	1,611 (31.46)	186 (3.63)	652 (12.73)	2,202 (43.00)	199 (3.89)	5,121 (100)
강원	21 (4.51)	145 (31.12)	40 (8.58)	123 (26.39)	115 (24.68)	22 (4.72)	466 (100)
충북	60 (8.58)	299 (42.78)	67 (9.59)	220 (31.47)	39 (5.58)	14 (2.00)	699 (100)
충남	44 (4.55)	386 (39.88)	62 (6.40)	308 (31.82)	110 (11.36)	58 (5.99)	968 (100)
전북	55 (7.11)	206 (26.61)	122 (15.76)	308 (39.79)	28 (3.62)	55 (7.11)	774 (100)
전남	17 (1.94)	191 (21.78)	45 (5.13)	519 (59.18)	72 (9.96)	33 (6.26)	877 (100)
경북	24 (1.85)	127 (9.81)	211 (16.29)	723 (55.83)	129 (9.96)	81 (6.26)	1,295 (100)
경남	28 (1.99)	325 (23.12)	145 (10.31)	620 (44.1)	207 (14.72)	81 (14.72)	1,406 (100)
제주	14 (2.86)	57 (11.66)	41 (8.38)	147 (30.06)	202 (41.31)	28 (5.73)	489 (100)

주: 1) 특수교육기관의 장애영유아 수는 장애 영아 수와 유치원 장애 유아 수를 합산한 값임.
2) 해당 기관(학습)에 있는 장애 영유아 수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1) 교육부(2022). 2022년 특수교육통계(2022년 4월 1일 기준).
2) 보건복지부(2022). 보육통계(2022년 12월 말 기준).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p. 36 표 재인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 3명당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하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수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표 Ⅳ-4-15〉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20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3 보육사업안내(p. 397 내용 재인용).

영유아를 담당하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의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42학점과 유아교육 관련 교과목 38학점 이상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8학점의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기에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간 특수교육에서의 전문성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표 Ⅳ-4-16〉에서는 연도별 장애 영유아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주민등록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령대는 5세와 6세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씩 증가하였다. 최근 기관에서 장애위험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강은진, 박혜원, 최일선, 2022)는 향후 증가하는 영유아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Ⅳ-4-16〉 연도별 장애영유아 현황 (2011-2023)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138	10,950	11,093	11,018	11,701	12,808	13,620	14,040	14,337	14,515	15,283	15,290	15,017
0세	37	33	29	31	26	46	46	41	43	36	28	20	25
1세	401	508	437	446	459	521	517	482	483	381	409	354	330
2세	1,023	1,097	1,088	1,067	1,066	1,047	1,157	1,066	1,014	916	801	729	730
3세	1,569	1,473	1,549	1,583	1,566	1,583	1,640	1,804	1,721	1,614	1,599	1,320	1,180
4세	2,322	1,967	1,908	2,032	2,196	2,293	2,313	2,482	2,898	2,825	2,734	2,701	2,324
5세	2,581	2,808	2,431	2,498	2,809	3,108	3,310	3,300	3,520	3,967	4,121	4,110	4,227
6세	3,205	3,064	3,651	3,361	3,579	4,210	4,637	4,865	4,658	4,786	5,591	6,056	6,201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복지, 장애인현황, 전국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conn_path=12 (인출일: 2024. 6. 3.)

나) 다문화 영유아 현황 및 지원

영유아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다문화 영유아의 증가이다. 전국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율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7〉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현황 (최근 10년)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전체 출생아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000
전국 다문화 출생아	21,290	21,174	19,729	19,431	18,440	18,079	17,939	16,421	14,322	12,526
다문화 출생아 비율	4.88	4.86	4.50	4.78	5.15	5.53	5.93	6.03	5.50	5.0
서울	3,789	4,052	3,745	3,633	3,288	3,097	3,053	2,609	2,322	2,106
부산	1,138	1,112	1,020	1,031	937	921	850	741	646	566
대구	722	697	645	677	695	643	691	589	470	428
인천	1,137	1,180	1,080	1,120	1,046	1,122	1,139	1,046	900	864
광주	535	546	447	433	451	444	449	387	377	314
대전	551	494	482	497	452	400	423	370	313	264
울산	440	437	406	400	419	355	358	366	287	193
세종	60	61	62	98	81	113	108	116	96	87
경기	5,262	5,256	5,022	4,998	4,834	4,851	4,804	4,685	4,246	3,925
강원	632	555	525	473	431	435	441	433	388	327
충북	692	666	658	669	624	629	614	574	504	399
충남	1,106	1,087	976	940	931	918	929	841	730	643
전북	957	976	880	877	751	769	726	626	502	386
전남	1,193	1,083	1,001	903	921	774	849	767	641	538
경북	1,274	1,191	1,070	1,059	1,016	961	970	897	758	558
경남	1,459	1,441	1,357	1,291	1,243	1,294	1,185	1,036	881	703
제주	343	340	353	332	320	353	350	338	261	225

자료: 1) KOSIS(국가통계포털). 지역별 다문화 출생(자료갱신일 2023년 11월 29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제10조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아동의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노력과 가족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와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크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영유아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이 있다(박은정 외, 2021).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전달체계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시도교육청과 연계협력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네 개의 추진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그중 유아와 관련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되는 지원체계 마련'이다. 먼저 교부금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2021년부터 다문화 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교육복지 지원비 산정기준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서 제외되며, 정책학교 운영 시 특교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유아 조기 적응 및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자료 및 도움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유아교육·아동학과 등 관련 전공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하고, 국·공립유치원에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으로,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및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며, 유치원의 경우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유아 지원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어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사회정서 발달과 기초학습능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 대상이 유치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영아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로 분리된 지원 체계는 효율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내,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포괄성과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 소규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원 규모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Ⅳ-4-18〉과 같다.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를 60명 미만, 극소규모를 30명 미만 규모로 보았을 때(교육부, 2016. 7. 5)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의 공립유치원이 소규모 유치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극소규모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체 공립유치원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8〉 시도별 극소규모, 소규모 유치원 (2023년)

단위: 개소(%)

지역	구분	유치원 수	~9명	10~19	20~29	극소규모	30~39	40~49	50~59	소규모	합계 (%)
서울	공립	296 (100.00)	7 (2.36)	27 (9.12)	37 (12.50)	71 (23.98)	63 (21.28)	48 (16.22)	38 (12.84)	149 (50.34)	220 (74.32)
	사립	473 (100.00)	19 (4.02)	14 (2.96)	14 (2.96)	47 (9.94)	12 (2.54)	38 (8.03)	29 (6.13)	79 (16.70)	126 (26.64)
부산	공립	136 (100.00)	16 (11.76)	26 (19.12)	20 (14.71)	62 (45.59)	12 (8.82)	16 (11.76)	12 (8.82)	40 (29.41)	102 (75.00)
	사립	248 (100.00)	17 (6.85)	5 (2.02)	10 (4.03)	32 (12.90)	11 (4.44)	16 (6.45)	6 (2.42)	33 (13.31)	65 (26.21)
대구	공립	116 (100.00)	40 (34.48)	24 (20.69)	18 (15.52)	82 (70.69)	6 (5.17)	3 (2.59)	0 (0.00)	9 (7.76)	91 (78.45)
	사립	206 (100.00)	11 (5.34)	3 (1.46)	4 (1.94)	18 (8.74)	9 (4.37)	11 (5.34)	5 (2.42)	25 (12.13)	43 (20.87)
인천	공립	194 (100.00)	43 (22.16)	45 (23.20)	30 (15.46)	118 (60.82)	11 (5.67)	8 (4.12)	21 (10.83)	40 (20.62)	158 (81.44)
	사립	199 (100.00)	6 (3.02)	5 (2.51)	4 (2.01)	15 (7.54)	7 (3.52)	4 (2.01)	8 (4.02)	19 (9.55)	34 (17.09)
광주	공립	137 (100.00)	47 (34.30)	34 (24.82)	17 (12.41)	98 (71.53)	10 (7.30)	9 (6.57)	3 (2.19)	22 (16.06)	120 (87.59)
	사립	149 (100.00)	13 (8.72)	0 (0.00)	4 (2.68)	17 (11.40)	7 (4.70)	9 (6.04)	8 (5.37)	24 (16.11)	41 (27.51)
대전	공립	105 (100.00)	32 (30.48)	22 (20.95)	12 (11.43)	66 (62.86)	9 (8.57)	11 (10.48)	5 (4.76)	25 (23.81)	91 (86.67)
	사립	146	9	1	4	14	7	9	7	23	37

		(100.00)	(6.16)	(0.68)	(2.74)	(9.58)	(4.79)	(6.16)	(4.79)	(15.75)	(25.32)
울산	공립	92 (100.00)	20 (21.74)	11 (11.95)	17 (18.48)	48 (52.17)	9 (9.78)	8 (8.70)	6 (6.52)	23 (25.00)	71 (77.17)
	사립	96 (100.00)	14 (14.58)	1 (1.04)	1 (1.04)	16 (16.66)	3 (3.13)	8 (8.33)	5 (5.21)	16 (16.67)	32 (33.33)
세종	공립	63 (100.00)	11 (17.46)	6 (9.52)	0 (0.00)	17 (26.98)	0 (0.00)	2 (3.17)	2 (3.17)	4 (6.35)	21 (33.33)
	사립	2 (10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00)
경기	공립	1292 (100.00)	462 (35.76)	250 (19.35)	149 (11.53)	861 (66.64)	146 (11.30)	72 (5.57)	43 (3.33)	261 (20.20)	1122 (86.84)
	사립	856 (100.00)	48 (5.61)	10 (1.17)	22 (2.57)	80 (9.34)	29 (3.39)	42 (4.91)	40 (4.67)	111 (12.97)	191 (22.31)
강원	공립	274 (100.00)	144 (52.56)	63 (22.99)	16 (5.84)	223 (81.39)	10 (3.65)	4 (1.46)	12 (4.38)	26 (9.49)	249 (90.88)
	사립	78 (100.00)	2 (2.56)	1 (1.28)	6 (7.69)	9 (11.53)	6 (7.69)	7 (8.97)	1 (1.28)	14 (17.94)	23 (29.47)
충북	공립	246 (100.00)	130 (52.85)	32 (13.01)	16 (6.50)	178 (72.36)	7 (2.84)	11 (4.47)	6 (2.44)	24 (9.75)	202 (82.11)
	사립	71 (100.00)	6 (8.45)	4 (5.63)	2 (2.82)	12 (16.90)	4 (5.63)	2 (2.82)	5 (7.04)	11 (15.49)	23 (32.39)
충남	공립	377 (100.00)	237 (62.86)	47 (12.47)	18 (4.77)	302 (80.10)	19 (5.04)	9 (2.39)	15 (3.98)	43 (11.41)	345 (91.51)
	사립	116 (100.00)	4 (3.44)	3 (2.59)	3 (2.59)	10 (8.62)	5 (4.31)	4 (3.44)	5 (4.31)	14 (12.06)	24 (20.68)
전북	공립	369 (100.00)	251 (68.02)	55 (14.91)	11 (2.98)	317 (85.91)	8 (2.17)	8 (2.17)	7 (1.89)	23 (6.23)	340 (92.14)
	사립	125 (100.00)	12 (9.60)	0 (0.00)	3 (2.40)	15 (12.00)	9 (7.20)	10 (8.00)	10 (8.00)	29 (23.20)	44 (35.20)
전남	공립	424 (100.00)	257 (60.61)	67 (15.80)	30 (7.08)	354 (84.49)	18 (4.25)	16 (3.77)	4 (0.94)	38 (8.96)	392 (92.45)
	사립	90 (100.00)	6 (6.67)	4 (4.44)	5 (5.56)	15 (16.67)	10 (11.11)	10 (11.11)	7 (7.78)	27 (30.00)	42 (46.67)
경북	공립	463 (100.00)	294 (63.50)	61 (13.18)	29 (6.26)	384 (82.94)	21 (4.53)	11 (2.38)	12 (2.59)	44 (9.50)	428 (92.44)
	사립	208 (100.00)	17 (8.17)	7 (3.37)	6 (2.88)	30 (14.42)	11 (5.29)	8 (3.84)	12 (5.77)	31 (14.90)	61 (29.32)
경남	공립	443 (100.00)	254 (57.34)	60 (13.54)	34 (7.68)	348 (78.56)	17 (3.84)	13 (2.93)	16 (3.61)	46 (10.38)	394 (88.94)
	사립	228 (100.00)	13 (5.70)	2 (0.88)	4 (1.75)	19 (8.33)	12 (5.26)	16 (7.02)	9 (3.95)	37 (16.23)	56 (24.56)
제주	공립	103 (100.00)	30 (29.12)	21 (20.39)	9 (8.74)	60 (58.25)	10 (9.71)	12 (11.65)	1 (0.97)	23 (22.33)	83 (80.58)
	사립	17 (100.00)	0 (0.00)	0 (0.00)	1 (5.88)	1 (5.88)	0 0.00)	3 (17.65)	2 (11.76)	5 (29.41)	6 (35.29)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 시도별 교육통계 연보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함(2023년 4월 1일 기준).

〈표 Ⅳ-4-19〉 어린이집 유형별/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20명 이하	21~ 39명	40~ 49명	50~ 80명	81~ 99명	100~ 160명	161~ 200명	201~ 240명	241~ 300명	300명 초과
소 계	18,262 (100)	799 (4.38)	4,834 (26.47)	3,040 (16.65)	4,790 (26.23)	2,537 (13.89)	1,628 (8.92)	357 (1.95)	137 (0.75)	136 (0.74)	4 (0.02)
국공립	6,187 (100)	610 (9.86)	1,203 (19.44)	1,093 (17.67)	2,110 (34.10)	810 (13.09)	318 (5.14)	34 (0.55)	6 (0.10)	3 (0.05)	0 (0.00)
사회복지법인	1,206 (100)	3 (0.25)	111 (9.20)	140 (11.61	344 (28.52)	344 (28.52)	200 (16.59)	46 (3.82)	10 (0.83)	7 (0.58)	1 (0.08)
법인단체 등	551 (100)	8 (1.45)	110 (19.69)	87 (15.79)	179 (32.49)	95 (17.24)	53 (9.62)	14 (2.54)	3 (0.55)	2 (0.36)	0 (0.00)
민간	8,886 (100)	6 (0.07)	3,191 (35.91)	1,398 (15.73)	1,817 (20.45)	1,144 (12.87)	923 (10.39)	224 (2.52)	95 (1.07)	85 (0.96)	3 (0.03)

협동	124 (100)	65 (52.42)	35 (28.22)	15 (12.10)	3 (2.42)	3 (2.42)	3 (2.42)	0 (0.00)	0 (0.00)	0 (0.00)	0 (0.00)
직장	1,308 (100)	107 (8.18)	184 (14.07)	307 (23.47)	337 (25.76)	141 (10.78)	131 (10.02)	39 (2.98)	23 (1.76)	39 (2.98)	0 (0.00)

전체 어린이집 중 소규모 어린이집(39명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30.85%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서 제외한 수치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어린이집 유형은 협동어린이집으로 전체 80.64%를 차지한다. 이는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고, 공동체 중심의 운영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소규모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낮은 어린이집 유형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약 9.45%만이 소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민간어린이집의 35.98%, 국·공립어린이집 29.30%, 직장어린이집 22.25%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유치원은 2013년 8,678개 원에 비해 2023년 8,441개 원으로 10년간 237개 원이 폐원하였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23),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43,770개 소에 비해 2023년 28,954개 소로 14,816개 소(보건복지부, 20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밖에 소규모 기관은 교사와 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유아들에게 세심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려워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다보니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사는 다양한 연령대의 유아를 동시에 지도해야 하므로 놀이지도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아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에서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단설유치원과 같은 교육여건 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별 학급편성,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운영 등 단설과 같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현황 및 지원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에는 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은 98.9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의 경우 3~5세 유아의 취원율은 86.33%에 그쳤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세 유아의 취원율은 92.26%로 나타났으나 만 4세 유아의 경우 83.93%, 만 5세 유아는 83.45%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영아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취원율은 83.71%로 조사되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취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92.86%이고 다음

으로는 광주가 91.6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0~2세 취원율은 78.67%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부산이 79.20%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Ⅳ-4-20〉 지역별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현황 (2023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0세 (22년생)	1세 (21년생)	2세 (20년생)	0-2세 소계	3세 (19년생)	4세 (18년생)	5세 (17년생)	3-5세 소계
전국	1,667,863	225,948	253,558	266,564	746,070	279,061	309,184	333,548	921,793
유	528,963	0	0	49	49	135,292	183,075	210,547	528,914
어	1,007,275	123,453	237,848	263,162	624,463	147,933	118,192	116,687	382,812
합계	1,536,238	123,453	237,848	263,211	624,512	283,225	301,267	327,234	911,726
비율	**92.11%**	**54.64%**	**93.80%**	**98.74%**	**83.71%**	**101.49%**	**97.44%**	**98.11%**	**98.91%**
서울	263,218	37,769	41,078	43,007	121,854	43,623	47,488	50,253	141,364
유	63,763	0	0	15	15	17,516	22,033	24,199	63,748
어	154,172	19,456	37,044	39,384	95,884	22,731	17,822	17,735	58,288
합계	217,895	19,456	37,004	39,399	95,859	40,247	39,855	41,934	122,036
비율	**82.78%**	**51.51%**	**90.08%**	**91.61%**	**78.67%**	**92.26%**	**83.93%**	**83.45%**	**86.33%**
부산	94,902	12,620	14,368	15,044	42,032	15,700	17,615	19,555	52,870
유	34,719	0	0	1	1	8,544	12,231	13,943	34,718
어	50,599	5,702	13,114	14,472	33,288	7,122	4,929	5,260	17,311
합계	85,318	5,702	13,114	14,473	33,289	15,666	17,160	19,203	52,029
비율	**89.90%**	**45.18%**	**91.27%**	**96.20%**	**79.20%**	**99.78%**	**97.42%**	**98.20%**	**98.41%**
대구	72,790	9,288	10,674	11,475	31,437	12,054	14,091	15,208	41,353
유	30,939	0	0	3	3	7,524	10,929	12,483	30,936
어	38,779	4,867	10,524	11,751	27,142	5,512	3,098	3,027	11,637
합계	69,718	4,867	10,524	11,754	27,145	13,036	14,027	15,510	42,573
비율	**95.78%**	**52.40%**	**98.59%**	**102.43%**	**86.35%**	**108.15%**	**99.55%**	**101.99%**	**102.95%**
인천	103,128	13,891	15,920	16,419	46,230	17,284	19,228	20,386	56,898
유	35,621	0	0	0	0	9,108	12,512	14,001	35,621
어	59,937	7,474	14,592	16,342	38,408	8,765	6,447	6,317	21,529
합계	95,558	7,474	14,592	16,342	38,408	17,873	18,959	20,318	57,150
비율	**92.66%**	**53.80%**	**91.66%**	**99.53%**	**83.08%**	**103.41%**	**98.60%**	**99.67%**	**100.44%**
광주	48,924	6,065	7,458	8,035	21,558	8,119	9,232	10,015	27,366
유	20,219	0	0	1	1	5,424	7,015	7,779	20,218
어	28,483	3,954	7,591	8,206	19,751	3,426	2,625	2,681	8,732
합계	48,702	3,954	7,591	8,207	19,752	8,850	9,640	10,460	28,950
비율	99.55%	65.19%	101.78%	102.14%	91.62%	109.00%	104.42%	104.44%	105.79%
대	49,073	7,161	7,919	7,982	23,062	7,912	8,748	9,351	26,011

전									
유	19,179	0	0	1	1	5,086	6,561	7,531	19,178
어	25,921	3,753	7,122	7,607	18,482	3,088	2,138	2,213	7,439
합계	45,100	3,753	7,122	7,608	18,483	8,174	8,699	9,744	26,617
비율	**91.90%**	**52.41%**	**89.94%**	**95.31%**	**80.14%**	**103.31%**	**99.44%**	**104.20%**	**102.33%**
울산	38,023	4,957	5,389	6,087	16,433	6,449	7,247	7,894	21,590
유	13,669	0	0	0	0	3,422	4,668	5,579	13,669
어	22,277	2,425	5,569	6,154	14,148	3,210	2,443	2,476	8,129
합계	35,946	2,425	5,569	6,154	14,148	6,632	7,111	8,055	21,798
비율	**94.54%**	**48.92%**	**103.34%**	**101.10**	**86.10%**	**102.84%**	**98.12%**	**102.04%**	**100.96%**
세종	21,724	2,639	3,183	3,611	9,433	3,664	4,123	4,504	12,291
유	6,303	0	0	1	1	1,632	2,096	2,574	6,302
어	14,124	1,603	3,267	3,505	8,375	2,122	1,895	1,732	5,749
합계	20,427	1,603	3,267	3,506	8,376	3,754	3,991	4,306	12,051
비율	**94.03%**	**60.74%**	**102.64%**	**97.09%**	**88.79%**	**102.46%**	**96.80%**	**95.60%**	**98.05%**
경기	501,248	68,028	77,722	80,194	225,944	83,745	92,275	99,284	275,304
유	146,829	0	0	5	5	38,138	50,738	57,948	146,824
어	311,359	38,280	71,136	78,901	188,317	46,218	38,693	38,131	123,042
합계	458,188	38,280	71,136	78,906	188,322	84,356	89,431	96,079	269,866
비율	**91.41%**	**56.27%**	**91.53%**	**98.39%**	**83.35%**	**100.73%**	**96.92%**	**96.77%**	**98.02%**
강원	47,434	6,637	7,441	7,591	21,669	8,132	8,737	8,896	25,765
유	12,924	0	0	1	1	3,240	4,438	5,245	12,923
어	30,108	3,473	6,635	7,486	17,594	4,869	3,934	3,711	12,514
합계	43,032	3,473	6,635	7,487	17,595	8,109	8,372	8,956	25,437
비율	**90.72%**	**52.33%**	**89.17%**	**98.63%**	**81.20%**	**99.72%**	**95.82%**	**100.67%**	**98.73%**
충북	52,257	7,487	7,634	8,379	23,500	8,735	9,330	10,692	28,757
유	14,445	0	0	3	3	3,620	5,119	5,703	14,442
어	35,777	3,900	7,802	8,520	20,222	5,329	5,099	5,127	15,555
합계	50,222	3,900	7,802	8,523	20,225	8,949	10,218	10,830	29,997
비율	**96.11%**	**52.10%**	**102.20%**	**101.72%**	**86.06%**	**102.45%**	**109.52%**	**101.29%**	**104.31%**
충남	71,625	9,312	10,540	11,391	31,243	12,334	13,528	14,520	40,382
유	22,202	0	0	4	4	5,524	7,670	9,004	22,198
어	48,701	5,384	10,572	12,027	27,983	7,657	6,485	6,576	20,718
합계	70,903	5,384	10,572	12,031	27,987	13,181	14,155	15,580	42,916
비율	**98.99%**	**57.82%**	**100.30%**	**105.62%**	**89.58%**	**106.87%**	**104.63%**	**107.30%**	**106.28%**
전북	49,216	6,478	7,164	7,675	21,317	8,389	9,235	10,275	27,899

유	17,508	0	0	2	2	4,698	5,975	6,833	17,506
어	31,189	4,250	6,986	8,022	19,258	4,034	3,766	4,131	11,931
합계	48,697	4,250	6,986	8,024	19,260	8,732	9,741	10,964	29,437
비율	**98.95%**	**65.61%**	**97.52%**	**104.55%**	**90.35%**	**104.09%**	**105.48%**	**106.71%**	**105.51%**
전남	54,379	7,662	7,994	8,541	24,197	9,232	10,251	10,699	30,182
유	15,664	0	0	3	3	4,042	5,364	6,255	15,661
어	35,130	4,045	7,583	8,495	20,123	5,511	4,677	4,819	15,007
합계	50,794	4,045	7,583	8,498	20,126	9,553	10,041	11,074	30,668
비율	**93.41%**	**52.79%**	**94.56%**	**99.50%**	**83.18%**	**103.48%**	**97.95%**	**103.51%**	**101.61%**
경북	74,921	9,966	11,247	11,750	32,963	12,598	13,946	15,414	41,958
유	29,259	0	0	6	6	7,232	10,328	11,693	29,253
어	42,661	5,414	10,498	11,937	27,849	6,093	4,434	4,285	14,812
합계	71,920	5,414	10,498	11,943	27,855	13,325	14,762	15,978	44,065
비율	**95.99%**	**54.32%**	**93.34%**	**101.64%**	**84.50%**	**105.77%**	**105.85%**	**103.66%**	**105.02%**
경남	99,982	12,804	14,183	15,473	42,460	16,888	19,267	21,367	57,522
유	40,057	0	0	3	3	10,097	13,842	16,115	40,054
어	58,981	7,304	14,071	16,293	37,668	8,152	6,419	6,742	21,313
합계	99,038	7,304	14,071	16,296	37,671	18,249	20,261	22,857	61,367
비율	**99.06%**	**57.04%**	**99.21%**	**105.32%**	**88.72%**	**108.06%**	**105.16%**	**106.97%**	**106.68%**
제주	25,019	3,184	3,644	3,910	10,738	4,203	4,843	5,235	14,281
유	5,663	0	0	0	0	445	1,556	3,662	5,663
어	19,077	2,169	3,742	4,060	9,971	4,094	3,288	1,724	9,106
합계	24,740	2,169	3,742	4,060	9,971	4,539	4,844	5,386	14,769
비율	**98.88%**	**68.12%**	**102.69%**	**103.84%**	**92.86%**	**107.99%**	**100.02%**	**102.88%**	**103.42%**

주: '유' - 지역별 연령별 유치원 재원아 수
'어' - 지역별 연령별 어린이집 재원아 수
'합계' - 지역별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아 수의 합
'비율' - 지역별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비율(시·도별 유치원·어린이집 현원/시·도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100)
자료: 1) 행정안전부(2023).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3년 12월 31일 기준)(재외국인, 거주불명자 제외)
2)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연보(2023년 10월 1일 기준)
3) 보건복지부(2024). 2023 보육통계(2023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의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을 행정구별로 살펴보면 〈표 Ⅳ-4-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행정구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종로구, 중구, 금천구의 경우 주민등록 유아수보다 해당 구에 등록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가 많은 반면, 서초구 주민등록 만 5세 유아의 51.13%, 강남의 49.08%, 성동구의 41.24%, 용산의 31.51%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기준 서초 41.4%, 강남 41.4%, 성동 26.8%, 용산 23.5%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고, 이들 구를 제외한 다른 구들에서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영유아기

부터 교육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4-21〉 서울 행정구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유아수

단위: 명(%)

지역	주민 등록 유아수 (A)	비이용 유아수 (A-(B+C))	기관 이용 유아수		
			소계	유치원(B)	어린이집(C)
종로	599(100.00)	-55(-9.18)	654(109.18)	380(63.44)	274(45.74)
중구	556(100.00)	-104(-18.70)	660(118.70)	315(56.65)	345(62.05)
용산	1,155(100.00)	364(31.52)	791(68.48)	445(38.53)	346(29.95)
성동	1,826(100.00)	753(41.24)	1,073(58.76)	654(35.81)	419(22.95)
광진	1,507(100.00)	227(15.06)	1,280(84.94)	748(49.64)	532(35.30)
동대문	1,856(100.00)	302(16.27)	1,554(83.73)	911(49.08)	643(34.65)
중랑	2,052(100.00)	178(8.67)	1,874(91.33)	997(48.59)	877(42.74)
성북	2,458(100.00)	417(16.97)	2,041(83.03)	1,485(60.41)	556(22.62)
강북	1,344(100.00)	106(7.89)	1,238(92.11)	483(35.94)	755(56.17)
도봉	1,562(100.00)	115(7.36)	1,447(92.64)	774(49.55)	673(43.09)
노원	2,654(100.00)	128(4.82)	2,526(95.17)	1,830(68.95)	696(26.22)
은평	2,421(100.00)	269(11.11)	2,152(88.89)	1,155(47.71)	997(41.18)
서대문	1,910(100.00)	504(26.39)	1,406(73.61)	846(44.29)	560(29.32)
마포	2,077(100.00)	590(28.41)	1,487(71.59)	945(45.49)	542(26.10)
양천	2,563(100.00)	419(16.35)	2,144(83.65)	1,201(46.86)	943(36.79)
강서	3,225(100.00)	468(14.51)	2,757(85.49)	1,613(50.02)	1,144(35.47)
구로	2,305(100.00)	284(12.32)	2,021(87.67)	912(39.56)	1,109(48.11)
금천	1,044(100.00)	-94(-9.00)	1,138(109.00)	485(46.45)	653(62.55)
영등포	2,439(100.00)	354(14.51)	2,085(85.49)	1,126(46.17)	959(39.32)
동작	2,106(100.00)	565(26.83)	1,541(73.17)	914(43.40)	627(29.77)
관악	1,697(100.00)	105(6.19)	1,592(93.81)	910(53.62)	682(40.19)
서초	2,830(100.00)	1447(51.13)	1,383(48.87)	732(25.87)	651(23.00)
강남	3,138(100.00)	1540(49.08)	1,598(50.92)	1,070(34.10)	528(16.82)
송파	4,517(100.00)	1307(28.94)	3,210(71.06)	1,763(39.03)	1,447(32.03)
강동	3,147(100.00)	522(16.59)	2,625(83.41)	1,459(43.36)	1,166(37.05)

주: 1) 인구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수는 2023년 4월 기준임
2) 유치원의 최신 자료가 2023년 4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및 어린이집 자료 또한 최대한 유사한 시기에 조사한 것으로 맞추어 조사함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거주자) https://jumin.mois.go.kr/#
2) 2023 서울교육통계연보 - 연령별 원아수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Sn=1161
3)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연령별 아동현황(2023년 4월 기준).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InfoSl.jsp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중 어린 연령의 경우 가정보육을 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을 이용하는 유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만 5세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대신 영어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월평균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7만 원, 유치원이 12만 원인 반면,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월평균 총 학원비는 131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5시간 29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뿐 아니라 중학교 수업보다 더 긴 수준으로 조사되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

나. 쟁점

영유아교육 재정과 지원체계에서의 핵심 논점은 '공공성'에 대한 것이다. 공공성은 접근성, 비용감당정도, 책무성, 지속가능성,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박은혜 외, 2019). 첫 번째 쟁점은 책무성과 비용감당정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기본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한 완전 무상화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과정비와 영아보육료 지원으로 교육비와 보육료의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취원율이 3-5세의 경우 98%에 달하기 때문에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 시간도 무상이 아니고 방과후교육 및 돌봄도 무상이 아니다. 특히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간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격차가 존재한다. 유아교육법상으로 3~5세 대상 교육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가 영유아교육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학부모 및 기관의 무상교육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정부가 비용지원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시간과 돌봄시간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해서 완전무상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 시간에 대한 기관운영 및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분명히 부여할 수 있다. 현재는 학부모 바우처를 통한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교육과정 시간과 방과후과정 시간에 모두 혼재되어 기관의 재정이 운영된다. 따라서 공적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등은 이미 공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질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과 교사의 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강사 및 상업적 교재를 활용한 특별활동 중심의 교육적이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이 전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기관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도 강화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쟁점은 접근성과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통합맞춤형 지원에 관한 것이다. 접근성이란 모든 영유아가 합리적 수준의 노력으로 인근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정의 측면의 공공성은 모든 영유아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신념, 장애, 지리적 위치, 사회적 계층,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동등한 접근성과 공정한 영유아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박은혜 외, 20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주민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장애영유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장애 의심 영유아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다문화 출생아도 2020년 출생아의 약 6%를 차지하는 만큼 증가하였다가 2022년 현재 5%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영유아까지 포함하면 우리사회의 다양성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영유아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 계획을 세우고,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주배경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외국인 유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계획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영유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여있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립병설 유치원을 기준으로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보육기본계획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나 지원방안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를 교육·보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게 되어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하는 소규모 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세 번째 쟁점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합의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아온 영역이다(이영희 외, 2018). 그렇기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방향이 쉽게 수정될 수 있다. 특히 특별회계법으로 재정이 마련될 때 그 안정성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될 때에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공교육'이라고 밝힌 바 있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모의 양육권을 지원하는 바우처로 제공하여 부모들은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가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고, 0~2세 영아의 경우 83.65%, 3-5세 유아의 경우 98.07%의 취원율을 달성하고 있어 이미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취원하고 있지 않는 3~5세 영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반면, 2018년 기준 서울 서초구 거주 만 5세 유아의 약 41.37%, 강남구 거주 만 5세 유아의 41.35%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은혜 외, 2019), 이들이 주로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유아들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제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의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정규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참여한 유아의 성비'이다. 이에 덧붙여 법이 보장하는 '무상', '의무 취학전 교육 연한(준비상황)'은 주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박은혜, 2017). 이에 많은 OECD 국가들이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이상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제도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Ⅴ.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 분석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가. 연구방법

1)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영유아교육의 제반 이슈에 대해 가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은 영유아교육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정책실무자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15명을 선정하여 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는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누락된 전문가를 제외하고 델파이조사에는 조사에는 최종적으로 총 4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의 일반적 배경은 〈표 Ⅴ-1-1〉과 같다.

〈표 Ⅴ-1-1〉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일반적 배경 *(N=43)*

단위: 명(%)

구분		빈도(%)
소속기관	대학	16(37.21)
	유치원	7(16.28)
	어린이집	2(4.65)
	행정기관	11(25.58)
	기타	7(16.28)
	전체	43(100)
전문분야 구분	현장전문가	14(32.56)
	학계전문가	15(34.88)
	정책실무자	14(32.56)
	전체	43(100)
전문분야 분류	유아	22(51.16)
	보육	21(48.84)
	전체	43(100)
연령	30대	1(2.33)
	40대	11(25.58)
	50대	25(58.14)
	60대 이상	6(13.95)
	전체	43(100)
성별	남자	1(2.33)
	여자	42(97.67)
	전체	43(100)
학력	학사	3(6.98)
	석사	12(27.91)
	박사	26(60.47)
	기타(박사수료)	2(4.65)
	전체	43(100)

해당 분야 근무 경력	5년 이하	0(0.00)
	6~10년 이하	2(4.65)
	10~15년 이하	6(13.95)
	16년 이상	35(81.40)
	전체	43(100)

2) 연구내용

델파이조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지는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V-1-2〉와 같다.

〈표 V-1-2〉 1차 델파이조사지 내용 구성

영역	구분	내용	문항 수
Ⅰ	영유아교육과 돌봄 체제	-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의 영유아 중심 정도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 기관에서의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 - 가정에서의 영유아중심 교육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	5
Ⅱ	미래 영유아교육 제도	- 영유아-초등 연계를 위한 교육제도 측면에서의 정책 - 의무교육의 의미 - 의무교육 시행시 연령 범위 -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에서 부과/제외할 의무 - 미래 영유아교육 방향 설정시 고려할 사회적 변화 -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미래 영유아교육 방향 부합성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	7
Ⅲ	미래 영유아교육과정	- 현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미래역량 증진을 위한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이유 -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 - 미래 영유아교육의 주요 내용 (영아/유아) - 영유아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교원양성기관/유아교육기관/정부)	5
Ⅳ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	- 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교육과 돌봄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여부에 대한 인식 및 그 이유 - 향후 다양한 배경과 요구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	2
Ⅴ	일반적 배경	기관, 연령대, 성별, 학력, 경력	5

1차 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2차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2차 조사지는 1차에서 도출된 내용을 범주로 하여 그에 대한 중요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차 조사지의 구체적 내용은 〈표 V-1-3〉과 같다.

〈표 V-1-3〉 2차 델파이조사지 내용 구성

영역	구분	문항	범주	내용	문항 수
Ⅰ	영유아교육과 돌봄 체제	-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의 영유아 중심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 영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 - 영유아의 주체성과 주도성 기반 교육 -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돌봄 - 교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 영유아중심 기관 생활 시간 - 영유아중심 교육 및 돌봄 물리적 환경 - 영유아중심 교육 및 돌봄 인적 환경 - 기타의견 기술		9

		-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 정책별 중요도	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	- 유보통합(교사자격, 지원, 교육/보육 연계성 고려) - 지역 및 기관 유형별 격차해소 지원 -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차이 감소를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영유아 중심의 교육과 보육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16
			교육·돌봄 환경 개선	- 교사 대 영유아비율 최적화 - 교육과정시간에 1학급 2교사 배치 - 여러 유형의 교사 인력 확충	
			교원역량 및 복지 강화	- 교사 자격기준 강화 - 교원 연수와 컨설팅 강화 -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지원	- 장애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장애아동 선별과 체계적 서비스 제공 -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사교육과 자료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 가정에서의 영유아 중심 교육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도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부모교육 제공 - 양육정보시스템 제공 - 부모교육 의무화 - 가정양육지원 멘토링제도 구축 및 운영	11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 다양한 직군의 부모를 위한 정부차원 지원체계 구축 -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가정 돌봄과 공적 돌봄 서비스의 연계시스템 마련 -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 경쟁 완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 영유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II	미래 영유아 교육 제도	- 영유아-초등 연계를 위한 교육제도 측면에서의 정책 중요도	통합·연계 교육과정 구성	-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 인간상, 교육체계 및 내용의 위계적 연계 -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보육과정 간 통합 -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대상 의무교육 실시로 공교육 체제 확립을 통한 연계 강화 - 인근에 있는 영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교육 클러스터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계	10
			영유아 발달 측면의 연계시스템 강화	- 영유아교육-초등교육 단계에서 아동의 발달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교사양성/연수과정 정비를 통한 타 학교급에 대한 이해 강화	- 초등교사 양성과정에 영유아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 -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에 초등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 - 초등교사들의 영유아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기회 강화 - 영유아교사들의 초등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기회 강화 - 초등교사양성 교수진과 영유아교사양성 교수진 간의 협업 강화	
		- 의무교육 관련 타당성	의무교육 시작연령	- 만 5세부터 - 만 4세부터 - 만 3세부터 - 만 2세부터 - 만 1세부터 - 만 0세부터	53

			영유아대상 의무교육 포함사항	- 취학에 대한 의무 - 질병, 발육상태 등에 따른 면제나 유예 - 의무로 부여할 교육시간 - 의무로 부여할 돌봄시간	
			영유아대상 의무교육을 위한 개선점	- 국가의 교육비 지원 - 영유아에게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마련 - 영유아에게 적함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실행 - 의무교육 실행기관의 교육의 질 제고 - 의무교육 담당교사의 자격 및 질 제고 - 초등학교 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유아 의무교육기관 배정 - 초등학교 배정과 달리 부모의 영유아 의무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 영유아 의무교육기관의 운영 및 회계관리 국가표준 준수 - 부모의 참여와 협조 - 영유아 학업성취 평가	
		- 미래 영유아교육 방향 설정시 고려할 사회적 변화 중요도	인구구조/가족구조 변화	- 저출생과 고령화 - 가족 형태 다양화 - 다문화사회 확대 - 맞벌이가구 증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 자연친화적 역량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 인공지능의 긍정적 활용 -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관계 변화	- 공동체 기능 약화	
Ⅲ	미래 영유아 교육과정	-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	놀이중심 교육과정 강화	- 놀이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공 - 놀이의 가치와 영유아중심이라는 기본적 전제 유지	50
			인성교육 강화	-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 -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공동체의식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 창의 융합 문제해결력 교육	
			초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 교육목표의 연속성 보장 - 교육내용의 연속성 보장	
			전인적 발달 강화	-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행복 추구	
			사회적 변화 반영	- 생태, 생명존중 - 세계시민교육	
			역량중심 교육	- 해당 연령/시기에 꼭 배우고 경험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에 대한 지침 제시 - 영유아의 개별 적성 및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 미래 영유아교육의 중요 내용 (영아/유아)	영아	- 사회정서 능력: 안정적 애착형성, 정서인식 표현, 조절, 긍정적 자아감 및 정체성 - 신체발달: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능력 - 기본생활습관: 독립적 자기관리 자조능력 - 의사소통 능력: 모국어 발달	
			유아	- 문제해결능력 - 기본색활습관: 자조능력 - 신체발달: 신체적 유능감 - 디지털 리터러시 - 인성교육	

				- 공동체역량: 의사소통, 타협, 협력, 타인이해 - 다양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 기초문해력 및 수리력: 기초학습능력 - 지속가능성,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의로서의 자질	
		- 영유아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교원양성기관 / 유아교육기관 / 정부)	교원양성기관	- 교육실습기간 확대 - 유아교육기관 현장연계 교육 강화 - 교수진의 현장역량 강화 - 예비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역량 강화 - 예비교사의 자기성찰 강화	
			유아교육기관	- 과도학 특성화활동 지양 등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 이행 -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 교사의 교육연구시간 확보 지원 - 체계적인 연수기회 제공 - 연수기간 대체교사 인력지원 - 자체연수 활성화: 멘토링, 동료장학 - 교사간 협력체계 구축: 학습공동체, 민주적 조직문화	
			정부	1. 교원양성체계의 고도화 - 교원양성체계 일원화 - 대면학과 중심 교사양성 - 4년제대학 학과 중심 교사양성 2. 교원양성기관 간 편차 최소화 - 교수진 - 교육과정 내용 표준화 - 실습내용과 방법 표준화 3. 처우개선 및 교권보장 - 초중등 교사에 준하는 처우 - 교사업무 경감(보조교사, 행정교사 인력배치) - 학급당 유아 수 감축 - 안정적인 교원임용 및 수급	
Ⅳ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	- 다양한 배경과 요구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	전문인력과 적절한 교육환경 지원	- 유아 특수교사 배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장애아 수용을 위한 물리적 시설환경 개선 및 보조기기, 교육자료 확보 -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 - 다문화 유아 지원 전문 인력 배치	12
			영유아 및 교원의 다문화·장애 감수성 교육 지원	- 다양성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개선을 돕는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지원 - 포용성과 타인존중, 경쟁보다는 상생을 배울 수 있는 사회교육 - 교사의 인식 개선 교육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부모와 아동 모두를 위한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다양한 영유아에 대한 실제적 교수학습방법 교육 -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 다양한 관련 연수 운영	

3) 분석방법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방형 문항에 대한 답변을 질적분석 하여 범주를 도출한 후 2차 델파이조사 문항을 추출하였다. 2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성 비율(Content Validity Ration: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ence: CV)을 산출했다. 먼저, 평균이 높으면 델파이조사 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변이계수인 CV는 표준편차(σ)를 산술평균(μ)로 나눈 것으로 CV 값이 작을수록 응답 간의 일관성이 높고,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CV 값이 클수록 응답의 변동성이 크고, 전문가들 간 의견이 다양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델파이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CV 값이 낮을수록 전문가 간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며 CV 값이 0.5 이하일 경우 전문가 집단 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English & Karen, 1976).

〈표 V-1-4〉 CV값의 해석방법

CV(Coefficient of Variance)	판단
0 ≤ CV ≤0.5	합의가 잘 되었다고 보며, 추가로 델파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
0.5 〈 CV ≤0.8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함. 추가 델파이 조사의 가능성이 있음
0.8 〈 CV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정도로 추가로 델파이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English, G. M.. & Karen G. L. (1976). The prediction of air travel and aircraft technology to the year 2000 using the Delphi method. Transp.Res. 1976, 10, 1-8.

한편, CVR은 델파이조사 문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량이다. CVR은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 본 델파이조사에서는 Lawshe(1975)의 기준에서 패널 수 40명일 때의 CVR 최소값 기준인 .29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CVR 값이 .29보다 높은 경우 항목의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전문가들이 그 항목을 델파이조사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29보다 작은 경우 문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 해석에서는 범주별로 최소 CVR(.29)값을 초과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항목 중 평균값 상위 순으로 2위까지 음영 표기를 하였다.

나. 연구 결과

1) 영유아교육과 돌봄 체제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의 영유아 중심성 강화를 위한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이 영유아 중심적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중요도에 대해 물은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5〉와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값의 경우 .29기준으로 7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CVR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 상위 두 문항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 '영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영유아 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주도의 놀이중심 교육을 하되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5〉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의 영유아 중심성 강화를 위한 지원 중요도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1	영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	4.33	0.61	0.75	0.50	0.86	0.14
2	영유아의 주체성과 주도성 기반 교육	4.30	0.71	0.75	0.50	0.72	0.16
3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4.33	0.71	0.75	0.50	0.81	0.17

4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돌봄	4.28	0.77	0.75	0.50	0.72	0.18
5	교사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	4.14	0.80	0.75	0.50	0.58	0.19
6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3.86	0.89	0.75	0.50	0.40	0.23
7	영유아 중심 기관 생활 시간	3.84	1.11	0.50	1.00	0.30	0.29
8	영유아 중심 교육 및 돌봄 물리적 환경	4.23	0.81	0.75	0.50	0.72	0.19
9	영유아 중심 교육 및 돌봄 인적 환경	4.23	0.95	0.80	0.50	0.58	0.22

나)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 정책별 중요도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는 〈표 Ⅴ-1-6〉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값의 경우 .29기준으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CVR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 상위 두 문항은 '장애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영유아 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과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1-6〉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 정책별 중요도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	1	유보통합(교사자격 통합, 재원확보, 교육·보육 연계성 고려)	4.40	0.95	0.80	0.50	0.81	0.22
	2	지역 및 기관 유형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4.32	0.75	0.75	0.50	0.77	0.17
	3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4.32	0.75	0.75	0.50	0.77	0.17
	4	영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4.32	0.81	0.75	0.50	0.81	0.19
교육·돌봄 환경 개선	5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최적화	4.49	0.67	0.80	0.50	0.81	0.15
	6	교육과정 시간에 1학급 2교사 배치	4.23	0.92	0.75	0.50	0.72	0.22
	7	여러 유형의 교사 인력 확충(방과후교사, 보조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4.19	0.73	0.75	0.50	0.63	0.17
교원 역량 및 복지 강화	8	교원 자격기준 강화	4.56	0.67	0.80	0.50	0.81	0.15
	9	교원 연수와 컨설팅 강화	4.40	0.69	0.80	0.50	0.77	0.16
	10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4.50	0.70	0.80	0.50	0.77	0.16
	11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	4.65	0.53	0.80	0.50	0.95	0.11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지원	12	장애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4.65	0.53	0.80	0.50	0.95	0.11
	13	장애아동 선별과 체계적 서비스 제공	4.49	0.59	0.80	0.50	0.91	0.13
	14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사교육과 자료 제공	4.33	0.68	0.75	0.50	0.77	0.16
	15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4.21	0.64	0.75	0.50	0.77	0.15
	16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4.23	0.72	0.75	0.50	0.77	0.17

다) 가정에서의 영유아중심 교육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도

가정에서의 교육과 양육이 영유아 중심으로 실천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는 〈표 V-1-7〉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 값의 경우 .29기준으로 8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CVR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 상위 문항은 '부모의 자녀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과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가정에서의 영유아 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우리사회의 경쟁적 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7〉 가정에서의 영유아중심 교육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도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	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부모교육 제공	4.21	0.80	0.75	0.50	0.77	0.19
	2	양육 정보 시스템(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 양육지원 콜센터 운영 등)제공	4.14	0.86	0.75	0.50	0.72	0.21
	3	부모교육 의무화(부모교육이력시스템구축)	4.23	1.02	0.75	0.50	0.72	0.24
	4	가정양육 지원 멘토링제도 구축 및 운영	4.14	0.99	0.75	0.50	0.63	0.2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5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4.67	0.47	0.80	0.50	1.00	0.10
	6	다양한 직군의 부모를 위한 정부 차원 지원체계 구축	4.44	0.70	0.80	0.50	0.86	0.16
	7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가정 돌봄과 공적 돌봄 서비스의 연계시스템 마련	4.33	0.71	0.45	0.50	0.86	0.17
	8	가정 양육수당을 기관 양육 지원금에 준하여 지급	3.79	0.83	0.75	0.50	0.26	0.22
	9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4.47	0.67	0.80	0.50	0.81	0.15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10	경쟁 완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4.47	0.70	0.80	0.50	0.77	0.16
	11	영유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4.37	0.82	0.80	0.50	0.67	0.19

2) 미래 영유아 교육제도

가) 영유아-초등 연계를 위한 교육제도 측면에서의 정책 중요도

영유아와 초등 연계를 위한 교육제도 측면에서의 정책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8〉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 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 값의 경우에도 .29기준으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교육과정 상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 인간상, 교육체계 및 내용의 위계적 연계'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교사 양성과정에 영유아 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간의 방향성 측면에서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초등교사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8〉 영유아-초등 연계를 위한 교육제도 측면에서의 정책 중요도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통합·연계 교육과정 구성	1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 인간상, 교육체계 및 내용의 위계적 연계	4.56	0.59	0.80	0.50	0.91	0.13
	2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보육과정 간 통합	4.30	0.83	0.75	0.50	0.72	0.19
	3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대상 의무교육 실시로 공교육 체제 확립을 통한 연계 강화	4.30	0.96	0.80	0.50	0.63	0.22
	4	인근에 있는 영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교육 클러스터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계	4.07	0.86	0.50	1.00	0.44	0.21
영유아 발달 측면의 연계시스템 강화	5	영유아교육-초등교육 단계에서 아동의 발달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4.19	0.82	0.75	0.50	0.72	0.20
교사양성/연수과정 정비를 통한 타 학교급에 대한 이해 강화	6	초등교사 양성과정에 영유아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	4.40	0.66	0.75	0.50	0.91	0.15
	7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에 초등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	4.37	0.69	0.75	0.50	0.86	0.16
	8	초등교사들의 영유아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기회 강화	4.30	0.74	0.75	0.50	0.77	0.17
	9	영유아교사들의 초등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기회 강화	4.35	0.65	0.75	0.50	0.91	0.15
	10	초등교사양성 교수진과 영유아교사양성 교수진 간의 협업 강화	4.09	0.81	0.75	0.50	0.63	0.20

나) 영유아 의무교육 관련 타당성

영유아 의무교육 관련하여 타당성을 질문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9〉와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 값이 0.5와 같거나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CVR 값의 경우 .29기준으로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한 문항이 나타났다. 즉, 2, 3, 4, 5번 문항과 10, 16, 20번 문항의 경우 CVR 값이 .29보다 낮아 기각되었다.

영유아기 의무교육의 시작 연령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유일한 문항은 '만 5세부터 시작'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대상 의무교육에 포함할 단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서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었으며, 그중 가장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질병, 발육상태 등에 따른 면제나 유예'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영유아기에 의무교육을 도입할 경우 만 5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면제나 유예의 여지를 두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의무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및 질 제고'였으며,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영유아기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의 자격과 질에 대한 정비가 중요하고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9〉 영유아기 의무교육 관련 타당성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영유아	1	만 5세부터 시작	4.47	0.93	0.80	0.50	0.72	0.21

대상 의무교육의 시작 연령	2	만 4세부터 시작	3.56	1.33	0.50	1.00	0.26	0.37
	3	만 3세부터 시작	3.14	1.36	0.33	1.00	-0.12	0.43
	4	만 2세부터 시작	1.93	0.94	0.00	1.00	-0.91	0.48
	5	만 1세부터 시작	1.65	0.81	0.00	0.50	-1.00	0.49
	6	만 0세부터 시작	1.58	0.79	0.00	0.50	-1.00	0.50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에 포함할 사항	7	취학에 대한 의무	4.23	1.13	0.80	0.50	0.58	0.27
	8	질병, 발육상태 등에 따른 면제나 유예	4.30	0.89	0.80	0.50	0.67	0.21
	9	의무로 부여할 교육시간	3.95	1.09	0.50	1.00	0.40	0.28
	10	의무로 부여할 돌봄시간	2.88	1.31	0.33	1.00	-0.30	0.46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	11	국가의 교육비 지원	4.63	0.54	0.80	0.50	0.95	0.12
	12	영유아에게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마련	4.49	0.67	0.80	0.50	0.81	0.15
	13	영유아에게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실행	4.53	0.63	0.80	0.50	0.86	0.14
	14	의무교육 실행기관의 교육의 질 제고	4.58	0.54	0.80	0.50	0.95	0.12
	15	의무교육 담당교사의 자격 및 질 제고	4.70	0.46	0.80	0.50	1.00	0.10
	16	초등학교 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유아 의무교육기관 배정	3.56	1.16	0.33	1.00	-0.07	0.33
	17	초등학교 배정과 달리 부모의 영유아 의무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3.74	1.18	0.50	1.00	0.40	0.31
	18	영유아 의무교육기관의 운영 및 회계관리 국가표준준수	4.56	0.59	0.80	0.50	0.91	0.13
	19	부모의 참여와 협조	4.40	0.69	0.80	0.50	0.77	0.16
	20	영유아 학업성취 평가	2.60	1.33	0.00	1.50	-0.49	0.51

다) 미래 영유아교육 방향 설정시 고려할 사회적 변화 중요도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변화를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10〉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 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 값의 경우에도 .29기준으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중 '가족 형태의 다양화'였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저출생 고령화 관련 내용을 교육 방향 설정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0〉 미래 영유아교육 방향 설정시 고려할 사회적 변화 중요도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인구구조/ 가족구조 변화	1	저출생과 고령화	4.65	0.72	0.80	0.50	0.95	0.15
	2	가족 형태 다양화	4.72	0.45	0.80	0.50	1.00	0.10
	3	다문화사회 확대	4.58	0.54	0.80	0.50	0.95	0.12
	4	맞벌이가구 증가	4.44	0.70	0.80	0.50	0.95	0.16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5	생태감수성	4.63	0.54	0.80	0.50	0.95	0.12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6	인공지능의 긍정적 활용	3.91	0.78	0.75	0.50	0.40	0.20
	7	디지털 리터러시	4.00	0.76	0.75	0.50	0.53	0.19
사회적 관계 변화	8	공동체 기능 약화	4.53	0.63	0.80	0.50	0.95	0.14

3) 미래 영유아교육과정

가)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11〉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 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CVR 값의 경우에도 .29기준으로 6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놀이의 가치와 영유아중심이라는 기본적 전제 유지'였으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문항은 '놀이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공'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위 두 문항 모두 '놀이중심 교육과정 강화'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는 전문가들이 놀이중심, 영유아중심이라는 교육의 방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1〉 미래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놀이중심 교육과정 강화	1	놀이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공	4.77	0.48	1.00	0.00	0.95	0.10
	2	놀이의 가치와 영유아 중심이라는 기본적 전제 유지	4.79	0.41	1.00	0.00	1.00	0.09
인성교육 강화	3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	4.72	0.55	1.00	0.00	0.91	0.12
	4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공동체의식 교육	4.63	0.46	0.80	0.50	0.91	0.16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3.93	0.83	0.50	1.00	0.35	0.21
	6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3.60	0.93	0.75	0.50	0.12	0.26
	7	창의 융합 문제해결력 교육	4.35	0.87	0.80	0.50	0.72	0.20
초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8	교육목표의 연속성 보장	4.28	0.88	0.75	0.50	0.77	0.21
	9	교육내용의 연속성 보장	4.16	0.84	0.75	0.50	0.67	0.20
전인적 발달 강화	10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4.70	0.56	0.80	0.50	0.91	0.12
	11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행복 추구	4.74	0.59	1.00	0.00	0.91	0.11
사회적 변화 반영	12	생태, 생명존중	4.70	0.46	0.80	0.50	1.00	0.10
	13	세계시민교육	4.30	0.64	0.75	0.50	0.81	0.15
역량중심 교육	14	해당 연령/시기에 꼭 배우고 경험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에 대한 지침 제시	4.53	0.80	0.80	0.50	0.86	0.18
	15	영유아의 개별 적성 및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4.23	0.81	0.75	0.50	0.72	0.20

나) 미래 영유아교육의 주요 내용

미래 영유아교육의 주요 내용을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12〉와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 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 값의 경우에도 .29기준으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사회정서 능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공동체 역량'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신

체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가 중요하게 배워야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발달'의 경우 영아와 유아 모두에서 교육 내용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2〉 미래 영유아교육의 주요 내용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영아	1	사회 정서능력: 안정적 애착형성, 정서인식, 표현, 조절, 긍정적 자아감 및 정체성	4.81	0.45	1.00	0.00	0.95	0.10
	2	신체발달: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능력	4.79	0.47	1.00	0.00	0.95	0.10
	3	기본생활습관: 독립적 자기관리 자조능력	4.67	0.57	0.80	0.50	0.91	0.12
	4	의사소통 능력: 모국어발달	4.67	0.52	0.80	0.50	0.95	0.11
유아	5	문제해결능력	4.63	0.49	0.80	0.50	1.00	0.11
	6	기본생활습관: 자조능력	4.74	0.85	1.00	0.00	0.95	0.12
	7	신체발달: 신체적 유능감	4.74	0.58	1.00	0.00	0.95	0.12
	8	디지털 리터러시	3.86	0.86	0.75	0.50	0.44	0.22
	9	인성교육	4.72	0.59	1.00	0.00	0.86	0.13
	10	공동체역량: 의사소통, 타협, 협력, 타인이해	4.77	0.48	1.00	0.00	0.95	0.10
	11	다양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4.51	0.74	0.80	0.50	0.95	0.16
	12	기초문해력 및 수리력: 기초학습능력	4.16	0.81	0.75	0.50	0.72	0.20
	13	지속가능성,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4.33	0.71	0.75	0.50	0.72	0.17

다) 영유아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의 중요도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어떤 지원이 중요한지를 교원양성기관, 유아교육기관, 정부로 나누어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13〉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 값의 경우에도 .29기준으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예비교사의 자기성찰 강화'와 '교수진의 현장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과도한 특성화활동 지양 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 이행'과 '교사의 교육연구시간 확보 지원'이, 정부차원에서는 '초중등교사에 준하는 처우'와 '교사 업무경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를 보았을 때,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 중 높게 나타난 두 가지가 모두 '처우개선 및 교권보장'에 속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표 V-1-13〉 영유아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교원양성기관	1	교육실습기간 확대	4.05	0.75	0.50	1.00	0.49	0.19
	2	유아교육기관 현장연계 교육 강화	4.49	0.59	0.80	0.50	0.91	0.13
	3	교수진의 현장역량 강화	4.53	0.59	0.80	0.50	0.91	0.13

	4	예비교사의 디지털기반 교육역량 강화	4.02	0.71	1.00	0.00	0.63	0.18
	5	예비교사의 자기성찰 강화	4.58	0.63	0.80	0.50	0.91	0.14
유아교육기관	6	과도한 특성화활동 지양 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 이행	4.58	0.59	0.80	0.50	0.91	0.13
	7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4.49	0.55	0.80	0.50	0.95	0.12
	8	교사의 교육연구시간 확보 지원	4.53	0.59	0.80	0.50	0.91	0.13
	9	체계적인 연수기회 제공	4.51	0.55	0.80	0.50	0.95	0.12
	10	연수기간 대체교사 인력지원	4.53	0.59	0.80	0.50	0.91	0.13
	11	자체연수 활성화:멘토링, 동료장학	4.40	0.62	0.75	0.50	0.86	0.14
	12	교사간 협력체계 구축: 학습공동체민주적 조직문화	4.47	0.59	0.80	0.50	0.91	0.13
정부 교원양성체계의 고도화	13	교원양성체계 일원화	4.35	1.00	0.80	0.50	0.72	0.23
	14	대면학과 중심 교사양성	4.60	0.69	0.80	0.50	0.86	0.15
	15	4년제대학 학과 중심 교사양성	4.51	0.83	0.80	0.50	0.81	0.18
교원양성기관 간 편차 최소화	16	교수진	4.53	0.63	0.80	0.50	0.86	0.14
	17	교육과정 내용 표준화	4.35	0.72	0.75	0.50	0.72	0.17
	18	실습내용과 방법 표준화	4.30	0.77	0.75	0.50	0.63	0.18
처우 개선 및 교권 보장	19	초중등 교사에 준하는 처우	4.65	0.57	0.80	0.50	0.91	0.12
	20	교사업무 경감(보조교사, 행정전담인력 배치)	4.65	0.57	0.80	0.50	0.91	0.12
	21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4.44	0.80	0.80	0.50	0.63	0.18
	22	안정적인 교원임용 및 수급	4.56	0.73	0.80	0.50	0.81	0.16

4) 영유아기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

가)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중요도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14〉와 같다. 모든 문항에서 CV 값이 0.5보다 낮아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VR 값의 경우에도 .29기준으로 모든 문항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CVR 값에서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 중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유아특수교사 배치 및 전담인력 배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이 높게 나타났다. 두 응답 모두 전문인력과 적절한 교육환경 지원에 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인력지원과 교육환경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4〉 다양한 배경과 요구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R	CV
전문인력과 적절한 교육환경 지원	1	유아특수교사 배치 및 전담 인력 배치(교육과정 운영 지원 보조인력 배치)	4.67	0.52	0.80	0.50	0.95	0.11
	2	장애아 수용을 위한 물리적 시설 환경 개선 및 보조 기기/교육자료 등 확보	4.44	0.63	0.80	0.50	0.86	0.14
	3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	4.63	0.58	0.80	0.50	0.91	0.12
	4	다문화 유아 지원 전문 인력 배치	4.12	0.91	0.75	0.50	0.63	0.22
영유아 및 교원의 다문화·장애 감수성 교육 지원	5	다양성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개선을 돕는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지원	4.23	0.84	0.75	0.50	0.67	0.20
	6	포용성과 타인 존중, 경쟁보다는 상생을 배울 수 있는 사회 교육	4.53	0.63	0.80	0.50	0.86	0.14
	7	교사의 인식 개선 교육	4.40	0.73	0.80	0.50	0.81	0.17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부모와 아동 모두를 위한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4.40	0.66	0.75	0.50	0.91	0.15
	9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4.44	0.77	0.80	0.50	0.86	0.17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0	다양한 영유아에 대한 실제적 교수학습방법 교육	4.56	0.55	0.80	0.50	0.95	0.12
	11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4.37	0.76	0.75	0.50	0.86	0.17
	12	다양한 관련 연수 운영(다문화 역량, 특수교육, 다양성 존중 등)	4.28	0.70	0.75	0.50	0.81	0.16

다. 시사점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요구분석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V-1-15〉와 같다.

〈표 V-1-15〉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 요구 분석 종합

구분	내용
영유아중심 정책실현	1) 기관교육/보육의 영유아중심성 강화 정책 -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 영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
	2) 영유아중심교육/보육을 위한 정부지원 - 장애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
	3) 가정에서의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정책 -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미래 영유아교육제도	1) 영유아-초등연계 -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 인간상, 교육체계 및 내용의 위계적 연계 - 초등교사 양성과정에 영유아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
	2) 영유아기 의무교육 타당성 - 만5세부터 실시 - 면제와 유예에 대한 사항을 융통성있게 적용 - 의무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및 질 제고 - 국가의 교육비지원
	3) 교사 전문성 증진 - 교원양성기관: 예비교사의 자기성찰 강화, 교수진의 현장역량 강화 - 유아교육기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 이행, 교사의 교육연구시간 확보 - 정부: 초중등 교사에 준하는 처우, 교사업무 경감
미래 영유아교육과정	1) 교육과정 방향성 - 놀이의 가치와 영유아중심이라는 기본적 전제 유지 - 놀이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공
	2) 미래교육 내용 - 영아: 사회정서능력, 신체발달 - 유아: 공동체역량, 기본생활습관, 신체발달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포괄적 교육	- 유아특수교사 배치 및 전담인력 배치 -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

위 표에 제시된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도출하였다.

1)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성

먼저, 전문가들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 ‘영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돌봄이 영유아의 주체성과 발달 특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일방향적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유아 중심의 자율적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전문가들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권 보호가 교육 질의 핵심적 요소라 인식하고 있었다. ‘교권 보호’, ‘교원 자격기준 강화’, ‘연수 및 컨설팅 강화’가 매우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이는 유아교육의 질은 교원의 역량과 안정된 근무환경에 달려 있으며,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다양성과 형평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다문화 가정 아동 지원’, ‘다양성 존중 교사교육’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양육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시간 확보’,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양육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육은 기관 중심이 아닌 가정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가정에서의 양육과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 네 가지 시사점은 영유아 중심성과 포용성, 교사 전문성, 가정 지원이라는 핵심 축을 기반으로,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2) 미래 영유아교육제도

전문가들은 미래 영유아교육제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교육제도로 의무교육을 조사에 포함시켜 질문하였다. 전문가는 만약 영유아기에 의무교육을 도입할 경우, 만 5세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며 면제나 유예의 여지를 두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의무교육에 대한 매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의무교육을 논하기 전 담당 영유아교사의 자격 및 질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응답하였다.

요구도 조사를 종합하고, 앞서 제시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영유아교사의 양성과 자격체계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 영유아기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 인간상, 교육체계 및 내용의 위계적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영유아교육과정 개정과 초등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영유아교사에 대한 지원

영유아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최근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겪는 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영유아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영유아교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중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처우 개선의 경우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교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사의 이직율을 낮추고 영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영유아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원

영유아 다양성에 대한 지원을 특수교육지원, 다양성에 기초한 가족지원, 다양성에 기초한 영유아지원으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전문가들은 특수교육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가족지원, 장애영유아 개별적 특성에 따른 지원 등 지원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장애영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또는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모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애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과 분담하여 교육하고 있다는 점,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 장애영유아 교육 또는 보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침이 상이하다는 점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개선 및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경계성 장애나 유사장애 특성을 보이는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 판별 및 교육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장애영유아 교육 및 돌봄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가 처한 다양한 가정 및 기관 환경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한 지원

영유아중심 교육과 돌봄을 위한 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유아에 한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까지 기관에 오랜 시간 머물게 하는 것이 영유아 중심이 아닌 성인 중심으로 접근한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기본교육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양육이 가능하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영유아 중심의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상담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을 위해 비전체계도(안)을 포함한 보고서 요약본을 미리 공유하였다. 공유한 비전체계도(안)은 [그림 V-2-1]과 같다.

[그림 V-2-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비전체계도 초안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토론회 주요 내용

1)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이라는 비전 설정은 세계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는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비전이다. 다만, 인간상을 '영유아'로 설정할 경우 영유아 시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핵심가치 중에서는 '미래지향'의 의미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위계상으로 미래지향이 영유아중심, 존중과 협력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여 '미래역량' 혹은 이에 상응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간 유기적 연계가 드러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가)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이라는 방향은 매우 타당하나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양질의 영유아기 경험'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가정에서의 영아기 양육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이 지원되고 배려되는 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아를 위한 돌봄과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영유아기만의 고유한 역량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미래역량의 개념을 정의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유아교사의 학력을 상향 조정하고 파격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이 의무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영유아 교사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영유아기에 적합한 의무교육 기반 구축

만 5세만이라도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용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발달적 관점에서 근거에 기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 모든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

4차산업 시대가 끝났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교육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 주요 내용

보고서 전반에 대한 요약본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내용과 이에 대한 반영사항은 〈표 V-1-16〉과 같다.

〈표 V-1-16〉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

구분	전문가 자문 의견
서론	• UN과 UNESCO를 통한 영아를 교육의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반영
	• 연구방법에서 서술된 내용과 아래에 제시된 그림과의 내용 일치 필요
	• 연구방법 중 토론회에서 현장전문가, 정책실무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토론회에서 집중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전망	• 부의 편중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양극화, 다양성 증가(문화적 측면 외에 능력, 학습 양식, 사고/행동방식, 삶의 방식 등)에 대한 부분 고려 필요
	• 미래교육의 방향과 시사점 부분에서 시사점 중심 내용 보완 필요
	• '미래교육의 방향과 시사점' 제목이 선행연구 정리의 느낌이 나도록 '미래교육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시사점'으로 수정 제안
	• 미래사회 교육환경 전망, 미래교육의 방향과 시사점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
국외 영유아교육 정책사례 분석	• 국외사례 3개국 선정 근거 제시 필요
	• 국외사례의 경우도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자격 및 양성, 재정 및 지원체계, 교육환경, 정책(법률 및 돌봄체계 부분) 측면을 분석하여 결과도출 필요함
	• 해외 유아교육 정책동향 관련 최근 UNESCO에서 타쉬켄트 보고서가 나왔으므로 해당 내용 검토 및 반영 제안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 교육제도 관련 부분의 구성을 취원율, 5세 연령에 대한 쟁점(조기입학, 의무교육, 초등이음 등), 유보통합, 의무교육여부, 기본시간 이용 등의 내용을 제목을 넣어 정리 제안
	•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과 미래사회의 주요변화와 연동한 방향성 도출 필요
	• 재정 및 지원체계와 교육환경 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해외사례도 적절하다고 사료 됨. 다만,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성을 토대로 적절한 모델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필요
	• 통계 데이터 확인 및 수정 필요 - 2023년 3-5세 취원율(국가통계 지표누리에서 제시하는 취원율은 94.3%)
	• 용어 구체성 확인 및 수정 필요 -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교사와 지원 인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임금과 이직,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과 같은 하드웨어가 더 문제라고 인식되므로 해당 내용 포함을 제안 - 교원 관련 내용 중 '영유아교사가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서 지원체계가 전문성 지원체계인지, 처우 및 복지 관련 지원체계인지 구체적인 기술 필요 - '기본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검토 필요 - 재정 및 지원체계 관련 중 '접근성과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통합맞춤형 지원'에서 의미하는 '통합', '맞춤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서 알 수 있도록 제시(예: 취약계층(다문화 포함)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춤 지원하는 교육, 보육 등) - 교육환경 중 기관 간의 물리적 교육환경 격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고서에 드러나는지 검토 필요 - 교육환경 중 인적환경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행과 실행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차이가 커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외에 민간 어린이집도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 교육환경 중 인적환경에서 '다른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신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 기술 필요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요구분석		• 하위제목과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검토 필요 • 의무교육 관련 타당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구성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필요 • 요구분석의 결과가 충분히 구체적인지 보고서 검토 필요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내용구성 방법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인간상)-핵심가치-발전방향-발전전략-발전과제, 또는 비전-(인간상)-핵심가치-발전방향-핵심과제가 제시 순이 어떨지 검토 필요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방향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도출됨 • 핵심가치에서 '미래지향'이란 용어 정선 필요함(위계적 의미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비전-인간상-핵심가치-정책방향-핵심과제-세부과제에 이르기까지 정합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 필요 • 추구하는 인간상에 앞서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신체 및 사회정서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 •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은 영아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에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교육 및 부모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 제시 제안함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 기존에 이미 정책화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연구에서 꾸준히 제안해왔던 내용이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만 제안할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기를 기대함 • 입법과 재원마련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 제시 기대 • 핵심과제가 계단식으로 제시되는 그림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초등연계 관련 과제는 '의무교육기반 구축' 정핵방향의 핵심과제로 좀 더 적절해 보임 • 정책 방향 기술 문구를 '방향'을 제시하는 표현으로 수정 필요

Ⅵ.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과정

국내 영유아교육 현황 및 쟁점, 해외 동향 및 주요 국가사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과정을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 재정 및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Ⅵ-1-1〉과 같다.

〈표 Ⅵ-1-1〉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교육제도

구분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과제		발전방향
	국내동향		국외동향					
	현황	쟁점						
취원율	• 0-2세 취원율 지속적 상승 및 2세 취원율 98.72% 도달 • 3-5세 취원율 2023년 소폭 감소 • 서울과 타지역 간의 취원율 격차 심화 • 사립·민간 기관 영유아 담당비율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음	• 기관중심 영유아교육·보육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권리 보장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SDG 4.2.목표 이행지표 –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의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어린이 비율 • OECD 평균 0-2세 취원율 약 36%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권리 지원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 설계
기관 이용 시간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 교육비·보육료 지원 • 유치원 평균 이용시간 7시간 15분 •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7시간 27분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제안	• 학부모 중심, 기관 중심 정책에서 영유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OECD 평균 주당 31.5시간 이용	•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 경쟁 완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기관문화 정비	⇒	
가정 지원 정책	• 영아반 보육료 지원이 가정양육수당 크게 상회(2023년 0-1세 부모급여 신설, 24년 지원금 확대) • 가정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 보완 필요	•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검토 및 보완 필요 •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정책 필요	•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 –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놀이터, 박물관, 도서관 및 주변 환경의 다른 장소에서도 학습 지원 필요 • 핀란드, 프랑스, 일본 모두 부모 소득 기반 차등 양육수당/보조금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반 공고		⇒	영유아 중심 가정양육 지원 강화		

〈표 Ⅵ-1-2〉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교육과정

구분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과제		발전방향
	국내동향		국외동향					
	현황	쟁점						
놀이 중심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된 교육과정 실행(격차완화, 질 향상, 학부모 부담 완화) • 2019 개정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 주체성과 놀이 중요성 강조	• 영유아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향성 제시와 내용 반영	•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 – 영유아중심, 놀이기반, 포괄적, 환경 및 성별에 민감한 학습법 개발 강조 • 핀란드 – 교과를 아우르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 영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 • 영유아 중심 기본 전제 유지	⇒	영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 교육과정 개편
미래 역량	• 2019 개정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내용 간소화, 현장 자율성 강화 •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 시도별, 기관유형별 편차	• 교육목표 기준 제시 필요	•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 – 기초적인 읽기, 쓰기, 수리 및 사회정서적 기술 포함한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	• 영아 – 사회정서능력, 신체발달 강조 • 유아 – 기본생활습관, 신체발달, 공동체역량 강조 •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목표, 인간상, 교육체계 및 내용의 위계적 연계	⇒	미래역량과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선	⇒	
유초 연계	• 초등 연계 한계에 따른 보완 노력으로서 이음교육 시범 시행	• 영아-유아-초등교육 간 연계 강화	• OECD(2017) Starting Strong에서 유아교육·보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전이 강조 • 유럽국가 중심으로 전이학년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는 추세 • 핀란드 예비초등학교 – 만 5세 대상, 의무교육, 유아교육센터 연계 시행 • 핀란드 – 예비초등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별도 구축(유-초등 핵심역량 기반 연계) • 프랑스 – 3세부터 중등교육까지 교육과정 사이클화를 통한 교육연계 강화	• 초등교사양성과정에 영유아 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	⇒	영유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과정 연계		

〈표 Ⅵ-1-3〉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교원

구분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과제		발전방향
	국내동향		국외동향					
	현황	쟁점						
교권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 및 대부분의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는 실정	•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교사와 지원 인력 확보 • 교사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간 기준 마련 • 교과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의 특수목적교사 배치 등 • 영유아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근무조건 보장	• 핀란드, 프랑스 – 근무시간 중 교사의 교육시간, 교육외 시간을 할당하여 정하고 있음	• 교사의 교육연구 시간 확보 • 교사업무 경감(보조교사, 행정전담 인력 배치 등) • 연수기간 대체교사 인력 지원	⇒	영유아 교사의 교육권 보장	⇒	영유아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권 침해	• 영유아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시스템 마련		•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				
근무 여건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근거 법령, 자격기준 상이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교육수준 등) 상이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기준 상이	• 영유아교사의 높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 – 초등학교 교사와 동등한 자격, 임금, 근로조건 필요 강조 • 핀란드 – 유아교육센터 교직원 2/3은 학사학위 소지, 이중 50% 이상은 영유아 교사자격자로 자격강화, 현재 절반 정도가 석사학위 소지 • 프랑스– 유아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하게 석사학위 소지, 경쟁시험 통과, 1년 유급훈련 기간 필요 • 일본 – 교사의 학위 종류에 따라 유치원 교사 면허장 차등 수여	• 초중등 교사에 준하는 처우	⇒	영유아 교사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전문성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짧은 근무 연수 및 잦은 이직	•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발 동기부여 및 지원 필요	• OECD(2018) Starting Strong에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사 상호작용 중심의 과정적 질 강조 •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 – ECCE 직업의 매력을 높이고 경력 발전 기회 제공		⇒	영유아 교사의 미래지향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표 Ⅵ-1-4〉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재정 및 지원체계

구분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과제		발전방향
	국내동향		국외동향					
	현황	쟁점						
국가 책무성	•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재정 관할 법령 및 부서 상이 • 누리과정 도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유아교육 재정 루트와 특별회계를 통한 불안정한 재정 마련 • 3-5세 유아교육은 법적 무상교육이나 학부모 부담금 발생(기관별 상이)	• 영유아교육·보육료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을 통한 정책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정부가 보장하는 영유아교육의 '공공성'과 ' 무상교육' 기준 구분 및 재정 지원 구분을 통한 학부모 무상교육 체감도, 기관 및 교사 책무성 강조	•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 – 교육 예산의 최소 10%를 취학전 교육에 할당 권고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 이행	⇒	기본 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한 책무성 강화		모든 영유아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통합 맞춤형 지원	•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 담당 기관 및 담당교사 자격 상이 • 다문화 영유아 증가	• 모든 영유아의 양질의 영유아교육 접근성 강화 필요 • 장애영유아, 이주배경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지원 필요		• 장애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 인력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보조인력 배치 • 저출생과 고령화 고려 필요 • 가족 형태 다양화 고려 필요	⇒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		
모든 영유아 교육권 보장	• 기관 미이용 영유아 지역 격차 심각 • 폐원 및 휴원 기관, 극소규모 기관 증가	• 모든 영유아의 발달권,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SDG 4.2 이행지표-초등학교 전 1년에 대해 성별에 따라 조직화된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 • 이에 따라 취학전 1년 이상 의무교육 국가 증가 추세 • UNESCO 타슈켄트 선언문 – 초등학교 취학전 1년에 대한 양질의 의무 무상교육 실행 강조 • 프랑스 – 만 3세부터 3년간 유아교육 의무교육 시행, 만 2세 이하의 영아교육·보육에 대해서는 기관중심 제도 미비(ISCED 01 단계 해당 X)	• 만 5세부터 의무교육 시작 타당 • 질병, 발육상태 등에 따른 면제나 유예 필요 • 국가의 교육비 지원 개선 필요 • 의무교육 담당교사의 자격 및 질 제고 필요	⇒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	

2. 미래 영유아교육의 비전, 인간상, 핵심가치

[그림 Ⅵ-2-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비전체계도

가. 미래 영유아교육의 비전: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

미래 영유아교육의 비전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영유아'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성과 다양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즉, 각기 다른 개성과 잠재력을 가지며 그들이 가진 다양성, 즉, 장애, 문화적 다양성,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및 지역 등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서의 영유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이란 영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영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배움의 방식인 놀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흥미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

나. 미래 영유아교육의 인간상

미래 영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주적이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사람

'창의적'은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탐구적'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상호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상호협력'이란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의 영유아교육은 이 세 가지 인간상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도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 미래 영유아교육의 핵심가치

미래 영유아교육의 핵심가치는 급변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그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 가지 핵심가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중심

'영유아중심'의 의미는 그동안 교육과정, 교수학습 측면에서 영유아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영유아를 배움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흥미와 요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확장된 범위에 '영유아중심' 개념을 적용하여,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 제도, 환경 전반에서 영유아의 권리와 주체성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간 이루어진 정책의 결정과 방향이 진정 영유아를 고려한 것이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저출생의 관점으로 접근해 왔는데 그것이 부모나 성인의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해 온 것은 아닌지, 영유아의 권리와 경험에 대하여 고려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영유아들에게 미래학습을 위한 준비교육을 해야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하는 시점에서도 서로의 다름에 대한 문제점에 초점을 둠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를 정책, 제도, 환경 전반에 있어 중심에 놓고자 하는 이와 같은 확장은 영유아를 단순히 교육활동의 중심에 놓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존중과 협력

미래 영유아교육의 핵심가치로서의 '존중과 협력'은 영유아교육의 주체인 영유아, 교사, 학부모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전반적 정책설계에서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 학부모는 수혜자'라는 틀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를 바라본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사와 보호자가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공동협력자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형태의 정책설계가 중요하다.

먼저, 영유아 측면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영유아 간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발달 속도를 존중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 측면에서의 존중과 협력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함에 있어서 부모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학부모 측면에서는 교사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사의 교육적 실행을 존중하고 교육과정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개별성을 인정받고,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방성과 유연성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 환경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개방성과 유연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급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며,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방성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유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양한 가정 배경과 문화적 차이를 지닌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육현장에서 개방적인 태도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데 기여한다. 한편, 유연성은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발달 속도와 흥미,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 내용을 조정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운영 전반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영유아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별화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유연성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개방성과 유연성은 영유아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영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작용한다.

3.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발전방향과 주요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3-1〉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주요과제

발전방향	주요과제
1.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 설계	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권리 지원
	② 영유아 중심 기관 이용시간 정비
	③ 영유아 중심 가정양육 지원 강화
2.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 교육과정 개편	① 영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② 미래역량과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선
	③ 영유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과정 연계
3. 영유아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	① 영유아교사의 교육권 보장
	②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③ 영유아교사의 미래지향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4. 모든 영유아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① 교육시간에 대한 무상화 실현
	②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통합맞춤형 지원
	③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가.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정책 설계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기관이 부모의 양육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과 가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단계별 주요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권리 지원

국가는 영유아가 꼭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영유아가 가능한 최선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유아기에 도달해야할 발달수준에 대한 전문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발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하다.

2) 영유아 중심 기관 이용시간 정비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기관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적정 교육시간과 돌봄 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가 보장해 온 기관 운영시간이 영유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에 맞춘 기관의 운영시간 정책이 영유아의 귀가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기관의 하루일과 운영과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기관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3) 영유아 중심 가정양육지원 강화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안녕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형성이 된다. 따라서 영아기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기업 전반에서의 인식전환과 지원 확대를 모든 정부부처가 합심하여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높임으로서 가정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영유아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확대 제공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 교육과정 개편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단계별 과제로 영유아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미래 역량과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선, 영유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과정 연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영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은 2019 개정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고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의 철학을 강화하여 영유아가 놀이를 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교사 간 교육과정 문해력과 실행력의 편차가 영유아기 경험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을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맞도록 체계화하여 놀이가 의미있는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령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도화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은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 자원, 상호작용이 확보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사회적 요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2) 미래역량과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선

미래의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변화대응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역량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시키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생태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미래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3) 영유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영유아에게 발달적 연속성과 안정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간의 방향성과 인간상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 인간상 실현에 기여하는 교육목표를 연령과 발달적 특징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놀이중심 교육이 초등 저학년의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교육내

용과 방법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초기 간의 학습적, 정서적, 사회적 단절을 줄이고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배우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 영유아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교사의 교육권 보장

영유아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영유아교사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가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혁신적인 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시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영유아를 교육하는 시간을 현실화하고 교육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담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돌봄, 환경 관리 등을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인적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과 책임,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갈등상황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권보호 매뉴얼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 영유아교사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우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증가된 교사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개선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반영한 표준교육비 산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른 직장과는 달리 영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성인들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갖추지 않은 기관들이 상당수 있다. 성인에 맞는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영유아교육·보육환경평가를 시행할 때 성인에 적합한 근무환경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교사가 정서적 피로를 줄이고 업무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교사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

다.

장기적으로는 영유아교사의 다양한 교육수준을 통일하고, 초등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처우, 근무여건, 사회적 지위 및 인식도 초등교원과 둥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영유아교사의 미래지향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교사 스스로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교사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각 역량에 대한 교사의 자가진단을 통해 필요한 연수 등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력, 승진, 임금이 연계된 경력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력에 따른 급여를 보장하고 경력과 연계된 승진 체계, 승진과 급여의 연계 책정이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경력 교사들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해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달리 승진체계가 세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인센티브 등과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관에서 보고하는 것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 이상의 체계적인 교사 경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교사 포상과 연계하여 경력에 따라 국내외 교육연구 및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사의 근속 동기를 높이고 전문성 개발의 동기를 확대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라. 모든 영유아의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배경의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교육시간에 대한 무상화 실현

기본운영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한 국가, 기관,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성격과 의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양질의 영유아교육이 무엇인지 개념화하여 국가 차원의 질 높은 교육 제공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에 대하여 지역, 기관유형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질 높은 교육조건(교육시간, 교사자격, 교사배치, 교육설비 및 교재교구 배치 등)을 보편화 하고 이를 무상으로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양질

의 교육환경 속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기관과 교사가 책임을 다하여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책임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교육에의 영유아 참여율과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통합맞춤형 지원

특수교육, 다문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상담, 복지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부처 및 기관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적 차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은 유일하게 현재 의무교육 대상이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해 배치하도록 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센터 내 영유아담당 특수교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유아담당 특수교사 및 장학사를 추가 배치하고,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들의 특수교육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발달적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일반학급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교사 배치 및 교육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주배경 및 다양한 가족 형태 등 다양한 영유아과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 학습 및 정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인력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영유아의 교육권은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영유아가 그 시기에 경험해야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필요한 기본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유아가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적합한 기관에서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영유아를 사교육,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생활하고 배우는 경험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특정 시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하는 시간동안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모든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구감소로 기관이 폐원 또는 휴교되어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극소규모로 기관이 운영되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나 인근에 필요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영유아기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의무교육의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책결정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1. 요약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연구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 통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영유아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교육환경 변화를 전망하며, 디지털 전환, 저출생 및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 등 주요 사회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미래에는 정보를 선별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외 사례 분석에서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영유아교육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핀란드는 만 6세 예비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일본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해 인정어린이원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분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영유아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높은 취원율과 기관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이 특징적이지만, 교육과 돌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현장에 안착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실행력의 차이로 인해 영유아의 교육 경험에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도출되었으며,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및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해 영유아 중심의 놀이중심 교육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헌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 영유아교육의 비전은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영유아 중심’, ‘존중과 협력’, ‘개방성과 유연성’이 제시되었다. 주요 발전 방향으로는 영유아 중심 정책을 설계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가정에서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무상화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유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2. 후속연구 등 제언

가. 기존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

현재까지 시행된 영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로 이루어져,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영유아교육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교육 및 돌봄 정책이 유아, 학부모,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격차 완화 및 출생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 및 장기적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나. 교원 정책 관련 데이터 기반 연구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이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급여 수준과 근무조건이 그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처우 개선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급여 수준, 복지 혜택, 근무 시간, 연수 기회 등이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최적의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영아기와 유아기의 경우 월령에 따른 발달 차이가 매우 크다. 영아의 경우 신체적·정서적 안정감 형성이 중요하며, 돌봄 중심의 환경이 필요하다. 반면, 유아의 경우 인지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요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령별 발달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돌봄과 교육의 적정 비율을 설정하는 연구도 필수적이다. 연령별로 돌봄과 교육의 이상적인 비율을 정립함으로써, 교육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를 토대로 발달 단계별 적정한 돌봄-교육 비율을 산출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과정이 장기적으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라. 법과 재정에 대한 연구

영유아교육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아영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와 예산 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법적 측면에서는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요건, 교육과정 기준, 평가 체계 등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지역 간, 기관유형 간 격차 없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투입이 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영유아 중심의 정책(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 등 법령 정비와 함께 중앙-지방의 영유아 관련 예산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법과 재정 연구를 통해 영유아교육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부 (2016. 07. 05).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02&opType=N&boardSeq=63675에서 2025년 3월 30일 인출.

교육부(2023).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교육복지정책과.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권정윤, 한유미, 김희영(2022). 스웨덴과 핀란드의 취학연령 하향화 대응사례 분석. 유아교육연구, 42(6), 517-540.

김교령, 한산섬, 박은혜(2023).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방향 탐색: 학제, 교육과정, 교원, 의무교육여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7(2), 217-238.

김명중(2018).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7, 141-151.

김미경, 김경희, 김현미, 이수정, 육민정(2022). 미래교육 전망: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보고 RRO 2022-1).

김미애, 김성천, 박신영, 박건령(2023). 세종형 유보통합 운영방안 정책연구 보고서. 세종교육 2024-00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아미(2019). OECD 학습 나침반 2030: 변혁적 역량과 민주시민교육의 접점.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15.

김안나, 임선아, 김혜정(2023). 미래사회에 필요한 유아의 핵심역량과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0(3-4), 27-47.

http://dx.doi.org/10.22155/JFECE.30.3-4.27.47

김은영,임부연,강은진,고영미,김진숙,문무경,이경화,이미화,이완정,이정욱,정선아(2018). 누리과정 개정 정책 연구.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2019).「2019 개정 누리과정(안)」개발 배경 및 특성.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김혜진, 최혜영(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Ⅱ):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재춘(2024) 미래 사회 변화와 유아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김희정(2023). 일본 어린이가정청 설치와 어린이기본법에 관한 탐색. 광신논단, 267-287.

박건령(2024). '미래교육' 담론 관련 국내·외 유아교육분야 학술연구 주제 동향 비교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9(1), 125-154. http://dx.doi.org/10.20437/KOAECE29-1-06

박건령, 김언경(2024).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의 역사적 발전과 공통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pp. 141-143).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박은정, 문무경, 윤지연, 임동선, Weng-Feng Lai(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박은혜(2017).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과제. 유아교육연구, 37(3), 119-136.

박은혜, 전홍주, 차기주, 박신영(201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해외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배윤진, 임은미, 김교령, 김혜진(2023). 유아를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방안 마련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23). 보육통계.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4). 2023년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연속보도① (2024.9.24.)

서현선, 전홍주(2019). 한국과 일본의 유치원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 및 과목편성 지침 비교. 교육문화연구, 25(3), 547-567.

손승남(2023). 시대적 핵심과제와 미래 교육 방향 설정 : OECD 2030과 유네스코 2050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2(4), 1-22.

손승민(2016). 프랑스와 한국의 보육 체계 비교: 보육 정책과 보육료 지원을 기준으로. EU학 연구, 11(1). 3-27.

신상규, 이상욱, 이영의, 김애령, 구본권, 김재희, 하대청, 송은주(2020).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아카넷.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윤옥한(2022).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과 미래 교육의 방향 탐색.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인간연구, 48, 7-32.

윤은주(2015). 2016 핀란드 국가핵심교육과정 개편: 학습의 기쁨(Joy of Learning)을 향한 끝없는 여정(CP 2015-02-7). 한국교육개발원.

이강주, 권순형, 양채원, 고동완, 김기범, 최명수(2021). 디지털전환 시대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 탐색. 교원교육, 37(2), 1-25.

이영희, 이수광, 백병부, 김영순, 윤지현, 임재일, 홍섭근(2018).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국가교육회의.

이영희, 윤지현, 홍섭근, 임재일, 백병부(2018).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5), 127~153. https://doi.org/10.24159/joec.2018.24.5.127

이영희, 윤지현(2020). 교육주체 및 국내·외 교육전문가의 FGI를 통한 미래교육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143~162. https://doi.org/10.24159/joec.2020.26.3.143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6

이윤진, 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육아정책연구소.

이형근(20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상훈, 이은택, 오희정(2023), ChatGPT와의 협업을 통한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의 미래교육 시나리오 도출. **교육공학학회지, 39**(4), 1049-1080.

http://dx.doi.org/10.17232/KSET.39.4.1049

장경희, 유해미(2019).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24.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장민영, 박은혜, 이진화(2017).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핀란드,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11(3), 21-45.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2009). **세계의 육아정책동향 시리즈 8. 프랑스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윤경(2023). 전환시대, 미래교육의 방향 탐색: OECD2030과 유네스코2050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1(4), 1-22. https://doi.org/10.31352/JER.21.4.1

주오이시디 대표부(2024.11.15.).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제도.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8516/view.do?seq=1344317

주프랑스한국교육원(2022.01.05.). 유치원 교육과정.

https://educoree.fr/france-edu/cursus/maternelle/

최상덕(2018). OECD 교육 2030에 대하여. 행복한 교육. 교육부.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이완정, 임여정, 권혜진, 김유미, 김지연, 신윤승, 정정희, 임수진, 김언경, 김윤희, 박건령, 이효림(2023).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Ⅰ):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하정임(2022). 프랑스 방과후돌봄서비스 현황 및 운영체계 연구. **EU학 연구. 27**(3). 51-76.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연보.

홍성국(2018). **수축사회: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메디치미디어.

황성원(2022). 프랑스 방과 후 아동 레져센터 운영의 분석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11(2), 157-179.

Eurydice(2024.03.05.). Fra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rance/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Eurydice(2024.09.30.). Finl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inland/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2).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education systems 2022/2023: schematic diagrams. Eurydice Facts and Figur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arari, Y.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원제: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전병근 역). 김영사.

Kevin, K. (2017).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 12가지 법칙으로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원제: The inevitable: Understanding the 12 technological forces that will shape our future] (이한음 역) 청림출판.

KoreaTimes(2023. 5. 3). *Korea is most expensive country to raise child: study.*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1/113_350152.html

Li, Park, Chen(ed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in Asia Pacific: Advances in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2017.

OECD(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Starting Stro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6253-en.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OECD(2018). Starting Strong.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 Paris: OECD Publishing.

OECD(2020).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Publishing.

OECD(2023). *Empowering young children in the digital age, Starting St rong.*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0967622-en.

OECD(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3 Country note Finland.* OECD.

OECD(2024). Fertility rates.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에서 2024년 5월 19일 인출.

OECD(2024.11.03).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Study.* https://www.oecd.org/en/about/projects/international-early-learning-and-child-well-being-study.html (2024년 11월 3일 인출)

OECD(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00cad36-en.

Sylvia Hakari(2020). 21세기 핀란드의 유아교육. 2020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자료집.(pp. 21-28).

UNESCO(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ISCED 2011).*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UNESCO.

UNESCO(2022.11.16.). *Tashkent Declaration and Commitments to Action for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UNESCO. https://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11/tashkent-declaration-ecce-2022.pdf

[부록 1] 전문가 델파이조사지(1차)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설정과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지 (1차)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팀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주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1차 조사로 2회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고 작성하신 조사지는 9월 22일까지 이메일(byeonjh0803@gmail.com)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은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연구책임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전홍주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jun@sungshin.ac.kr

Ⅰ. 다음은 영유아교육과 돌봄 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이 얼마나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대체로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에 답해주신 경우 어떤 부분에서 영유아 중심 교육과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전혀 그렇지 않다’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답해주신 경우 어떤 부분에서 영유아 중심 교육과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중심의 교육과 돌봄 실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가정에서 교육과 양육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Ⅱ. 다음은 미래의 영유아교육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영아-유아-초등 간의 연계를 위해 교육제도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들어 국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무교육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중략)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2-1. 영유아교육에 있어서 의무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영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면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4.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을 한다면 어떤 의무는 부과하고 어떤 의무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 미래 영유아교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시한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내용이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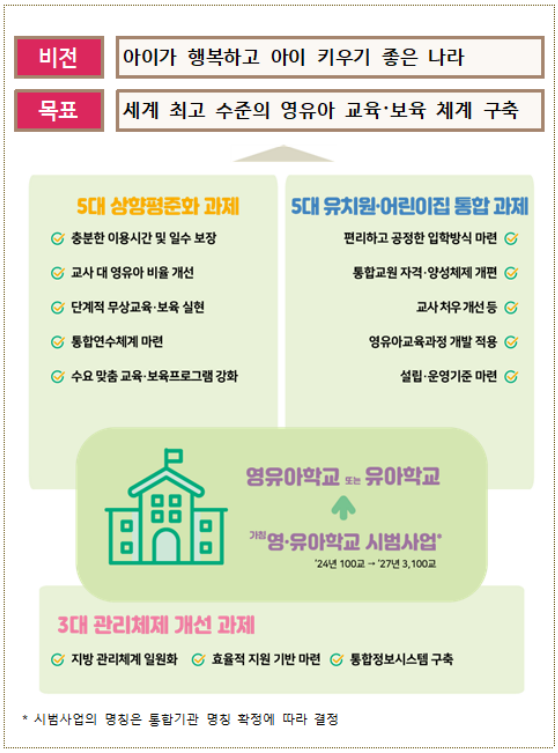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Ⅲ. 다음은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영유아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1.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향후 영유아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교육과정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미래사회를 살아갈 영유아가 학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 영아

3-2 유아

4. 향후 영유아교사가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양성기관, 유아교육기관, 정부로 구분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1. 교원양성기관

4-2. 유아교육기관

4-3. 정부

Ⅳ. 다음은 영유아기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과 돌봄이 영유아기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2. 향후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영유아(장애, 이주배경 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교육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소속기관:

① 대학 ② 유치원 ③ 어린이집 ④ 행정기관 ⑤ 기타( )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 귀하의 학력은?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5.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은? (대학, 연구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근무 기간 포함)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0~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록 2] 전문가 델파이조사지(2차)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 설정과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지 (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지난번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각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본 조사를 11월 1일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연구책임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전홍주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jun@sungshin.ac.kr

Ⅰ. 다음은 영유아교육과 돌봄 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돌봄이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영유아 중심 교육 및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중요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중요도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영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					
2. 영유아의 주체성과 주도성 기반 교육					
3.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4.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돌봄					
5. 교사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					
6.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7. 영유아 중심 기관 생활 시간					
8. 영유아 중심 교육 및 돌봄 물리적 환경					
9. 영유아 중심 교육 및 돌봄 인적 환경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영유아 중심 교육과 돌봄 실천을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관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영유아 중심 교육 및 돌봄 실천을 위한 제도 및 정책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					
1. 유보통합(교사자격 통합, 재원확보, 교육·보					

육 연계성 고려)					
2. 지역 및 기관 유형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3.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4. 영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교육·돌봄 환경 개선					
5.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최적화					
6. 교육과정 시간에 1학급 2교사 배치					
7. 여러 유형의 교사 인력 확충(방과후교사, 보조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교원 역량 및 복지 강화					
8 교원 자격기준 강화					
9. 교원 연수와 컨설팅 강화					
10.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11.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지원					
12. 장애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13. 장애아동 선별과 체계적 서비스 제공					
14.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사교육과 자료 제공					
15.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16.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양육이 긍정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관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의 중요성을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 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부모교육 제공					
2. 양육 정보 시스템(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 양육지원 콜센터 운영 등)제공					
3. 부모교육 의무화(부모교육이력시스템구축)					
4. 가정양육 지원 멘토링제도 구축 및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5.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6. 다양한 직군의 부모를 위한 정부차원 지원 체계 구축					
7.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가정 돌봄과 공적 돌봄 서비스의 연계시스템 마련					
8. 가정 양육수당을 기관 양육 지원금에 준하여 지급					
9.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10. 경쟁 완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11. 영유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미래의 영유아교육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다음은 영유아교육-초등교육 간의 연계를 위해 교육제도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영유아교육-초등교육 간의 연계를 위해 중요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통합·연계 교육과정 구성					
1.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 인간상, 교육체계 및 내용의 위계적 연계					
2.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보육과정 간 통합					
3.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대상 의무교육 실시로 공교육 체제 확립을 통한 연계 강화					
4. 인근에 있는 영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교육 클러스터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계					
영유아 발달 측면의 연계시스템 강화					
5. 영유아교육-초등교육 단계에서 아동의 발달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교사양성/연수과정 정비를 통한 타 학교급에 대한 이해 강화					
6. 초등교사 양성과정에 영유아교육 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					
7.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에 초등교육 이해를 위					

한 교과목 추가					
8. 초등교사들의 영유아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기회 강화					
9. 영유아교사들의 초등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기회 강화					
10. 초등교사양성 교수진과 영유아교사양성 교수진 간의 협업 강화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들어 국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아래의 동향을 참고하시어 의무교육에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동향]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4.2)는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후 영유아기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음. EU국가의 45%가 초등학교 이전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최학전 1년 이상에 대해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대표국: 벨기에,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 OECD의 Staring Strong 보고서 – 영유아기에 적합한 독립된 학제 수립 및 취학 전 1년을 초등교육으로의 전환 학년으로 강조하면서 유아에 적합한 내용, 방법으로 초등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황]

- 초중등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는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양육권을 지원하는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음
- 사교육으로 인하여 시도별, 지역별 만 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이 크게 상이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 중 하나로 만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고, 만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 기초역량 향상 지원을 제시하고 있음

내용	타당성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의 시작 연령					
1. 만 5세부터 시작					
2. 만 4세부터 시작					
3. 만 3세부터 시작					
4. 만 2세부터 시작					
5. 만 1세부터 시작					

6. 만 0세부터 시작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에 포함할 의무사항					
22. 취학에 대한 의무					
23. 질병, 발육상태 등에 따른 면제나 유예					
24. 의무로 부여할 교육시간					
25. 의무로 부여할 돌봄시간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					
26. 국가의 교육비 지원					
27. 영유아에게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마련					
28. 영유아에게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실행					
29. 의무교육 실행기관의 교육의 질 제고					
30. 의무교육 담당교사의 자격 및 질 제고					
31. 초등학교 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유아 의무교육기관 배정					
32. 초등학교 배정과 달리 부모의 영유아 의무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33. 영유아 의무교육기관의 운영 및 회계관리 국가표준준수					
34. 부모의 참여와 협조					
35. 영유아 학업성취 평가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미래 영유아교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미래 교육 방향 설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인구구조/가족구조 변화					
1. 저출생과 고령화					
2. 가족 형태 다양화					
3. 다문화사회 확대					
4. 맞벌이가구 증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5. 자연친화적 역량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6. 인공지능의 긍정적 활용					

7.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관계 변화					
8. 공동체 기능 약화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다음은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영유아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영유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방향으로 중요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놀이중심 교육과정 강화					
1. 놀이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공					
2. 놀이의 가치와 영유아 중심이라는 기본적 전제 유지					
인성교육 강화					
3.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					
4.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공동체의식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6.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7. 창의 융합 문제해결력 교육					
초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8. 교육목표의 연속성 보장					
9. 교육내용의 연속성 보장					
전인적 발달 강화					
10.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11.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행복 추구					
사회적 변화 반영					
12. 생태, 생명존중,					
13. 세계시민교육					
역량중심 교육					
14. 해당 연령/시기에 꼭 배우고 경험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에 대한 지침 제시					
15. 영유아의 개별 적성 및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미래사회를 살아갈 영유아가 학습해야 하는 내용으로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영유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요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영아	1. 사회 정서능력: 안정적 애착형성, 정서인식, 표현, 조절, 긍정적 자아감 및 정체성					
	2. 신체발달: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능력					
	3. 기본생활습관: 독립적 자기관리 자조능력					
	4. 의사소통 능력: 모국어발달					
유아	1. 문제해결능력					
	2. 기본생활습관: 자조능력					
	3. 신체발달: 신체적 유능감					
	4. 디지털 리터러시					
	5. 인성교육					
	6. 공동체역량: 의사소통, 타협, 협력, 타인이해,					
	7. 다양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8. 기초문해력 및 수리력: 기초학습능력					
	9. 지속가능성,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향후 영유아교사가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중요한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교원양성기관	1. 교육실습기간 확대					
	2. 유아교육기관 현장연계 교육 강화					
	3. 교수진의 현장역량 강화					
	4. 예비교사의 디지털기반 교육역량 강화					
	5. 예비교사의 자기성찰 강화					
유아교육기관	1. 과도한 특성화활동 지양 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 이행					
	2.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3. 교사의 교육연구시간 확보 지원					
	4. 체계적인 연수기회 제공					
	5. 연수기간 대체교사 인력지원					
	6. 자체연수 활성화:멘토링, 동료장학					
	7. 교사간 협력체계 구축: 학습공동체 민주적 조직문화					
정부	교원양성체계의 고도화					
	1. 교원양성체계 일원화					
	2. 대면학과 중심 교사양성					
	3. 4년제대학 학과 중심 교사양성					
	교원양성기관 간 편차 최소화					
	4. 교수진					
	5. 교육과정 내용 표준화					
	6. 실습내용과 방법 표준화					
	처우개선 및 교권보장					
	7. 초중등 교사에 준하는 처우					
	8. 교사업무 경감(보조교사, 행정전담 인력 배치)					
	9.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10. 안정적인 교원임용 및 수급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영유아기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영유아(장애, 이주배경 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교육적 지원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 의견이 다양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으로 중요한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시어, 해당 점수(5점 척도 기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중요도				
	1	2	3	4	5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전문인력과 적절한 교육환경 지원					
1. 유아특수교사 배치 및 전담 인력 배치(교육과정 운영 지원 보조인력 배치)					
2. 장애아 수용을 위한 물리적 시설 환경 개선 및 보조 기기/교육자료 등 확보					
3.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					
4. 다문화 유아 지원 전문 인력 배치					
영유아 및 교원의 다문화·장애 감수성 교육 지원					
5. 다양성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개선을 돕는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지원					
6. 포용성과 타인 존중, 경쟁보다는 상생을 배울 수 있는 사회 교육					
7. 교사의 인식 개선 교육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부모와 아동 모두를 위한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9.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0. 다양한 영유아에 대한 실제적 교수학습방법 교육					
11.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12. 다양한 관련 연수 운영(다문화 역량, 특수교육, 다양성 존중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